

연구보고서 2017-09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이현주 · 서주연 · 윤자영 · 지민웅 · 전지현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서주연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연구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9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이현주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53-4 93330

발간사 <<

‘시간이 부족하다’, ‘바쁘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대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만큼 시간은 삶의 부담을 대변하는 중요한 측면임이 분명하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자 하고 긴 시간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낮으면 대개 고용불안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 시간이 길지 않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꾸리기 위하여 더 많은 집안일을 본인의 노동으로 막음하여야 할 수도 있다. 시장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본인의 노동으로 욕구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숙제를 봐 주고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도록 돕는 가전제품을 살 수 없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없어 긴 시간 무임금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저소득층은 자가용 이용이 좀 더 어려워 이동시간이 길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고립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은 소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차원이다. 특히 소득보장만 한다고 하여 충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도 시간 사용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활시간 분석은 소득에 대한 분석보다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최근 들어 시간은 분석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사회보장이 향후

무엇을 유념하여야 하는지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소득보장만으로 사회보장이 완벽해질 수 없으며 기초육구 영역에서는 서비스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생활시간 분석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초육구 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미충족육구, 정책과제를 발견하고 향후 서비스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서비스가 설계, 확충되어 나가는 이즈음에서 본 연구 결과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현주 연구위원의 주관하에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의 서주연 박사,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 산업연구원 지민웅 박사 그리고 원내의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진에게 전문적 고견을 공유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2
제3절 연구 방법	1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저소득층 생활시간 개관	27
제1절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	29
제2절 저소득층 면담 내용과 함의	36
제3절 저소득층 시간 소비 개관	41
제3장 해외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비교	53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5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57
제3절 분석 방법	61
제4절 분석 결과	64
제5절 정책적 함의	81
제4장 유급노동과 자녀 돌봄노동시간의 부담	85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87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88
제3절 분석 방법	91
제4절 분석 결과	98
제5절 정책적 함의	132

제5장 간병·간호시간과 그 영향	137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13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40
제3절 분석 방법	142
제4절 분석 결과	143
제5절 정책적 함의	166
제6장 통근시간과 결정 요인	169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171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74
제3절 분석 방법	183
제4절 분석 결과	197
제5절 정책적 함의	210
제7장 혼자 보내는 시간과 사회적 고립 위험	213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21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217
제3절 분석 방법	221
제4절 분석 결과	196
제5절 정책적 함의	229
제8장 결 론	231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해석	233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과제	238
참고문헌	243

표 목차

〈표 1-1〉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면담 내용	19
〈표 1-2〉 소득계층별 가구 비율	21
〈표 1-3〉 저소득계층의 중위값	21
〈표 1-4〉 소득계층별 가구 비율 및 규모	22
〈표 1-5〉 사례 가구의 규모(가중치 미적용)	25
〈표 1-6〉 기타 가구 유형의 규모(가중치 미적용)	26
〈표 1-7〉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가구 규모별 분포	26
〈표 2-1〉 시간 소비 자료의 행동분류	42
〈표 2-2〉 소득계층별 집단 구성 비교(2004, 2014)	44
〈표 2-3〉 계층별 취업자 시간 소비의 변화	46
〈표 2-4〉 취업자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46
〈표 2-5〉 계층별 미취업자 시간 소비의 변화	48
〈표 2-6〉 미취업자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48
〈표 2-7〉 계층별 노인의 시간 소비의 변화	50
〈표 2-8〉 노인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50
〈표 3-1〉 분석 대상 국가와 분석 시기	62
〈표 3-2〉 분석에 활용된 생활시간 변수의 구성	63
〈표 3-3〉 계층과 성별로 나눈 노동시장과 통근시간에 사용한 시간	65
〈표 3-4〉 시장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상대적 비율	65
〈표 3-5〉 계층별 남녀의 고용 형태 분포	67
〈표 3-6〉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유급노동시간	68
〈표 3-7〉 계층과 성별, 주중과 주말로 나눈 가사노동시간	72
〈표 3-8〉 고용 형태별 가사노동시간	73
〈표 3-9〉 시장노동 대비 가사노동시간 비율	75
〈표 3-10〉 계층과 성별, 주중과 주말로 나눈 여가시간	77
〈표 3-11〉 고용 형태별 여가시간	79

〈표 3-12〉 혼자 있는 시간	81
〈표 4-1〉 201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범주와 노동 측정	94
〈표 4-2〉 계층별 표본 특성	98
〈표 4-3〉 계층별 남녀의 취업 상태 분포와 취업 상태별 월평균 개인소득	99
〈표 4-4〉 유급노동시간	100
〈표 4-5〉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유급노동시간	102
〈표 4-6〉 소득계층별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05
〈표 4-7〉 고용 형태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0
〈표 4-8〉 자녀 수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1
〈표 4-9〉 주중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2
〈표 4-10〉 주말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3
〈표 4-11〉 자녀 1명 맞벌이 가구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4
〈표 4-12〉 자녀 1명 남성 홀벌이 가구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115
〈표 4-13〉 자녀와 함께한 시간	121
〈표 4-14〉 시간 사용 범주별 시간 대비 자녀와 함께한 시간 비중	125
〈표 4-15〉 가사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126
〈표 4-16〉 가사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127
〈표 4-17〉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128
〈표 4-18〉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129
〈표 4-19〉 총(직접+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130
〈표 4-20〉 총(직접+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131
〈표 5-1〉 행동분류 중 간호, 간병	142
〈표 5-2〉 돌봄 필요 가구 및 가구 소속 개인의 분포	143
〈표 5-3〉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	144
〈표 5-4〉 돌봄 필요 가구원으로서만 구성된 가구의 개인 특성	145
〈표 5-5〉 돌봄 필요 가구원의 돌봄 필요 사유	146
〈표 5-6〉 돌봄 필요 가구의 돌봄 필요자의 개인 특성	147
〈표 5-7〉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별 돌봄자의 간호시간과 돌봄시간	148

〈표 5-8〉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	149
〈표 5-9〉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0시간 제외)	150
〈표 5-10〉 돌봄자의 행동분류(대분류)별 평균 시간량: 돌봄 필요 가구	152
〈표 5-11〉 돌봄 필요 사유별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	153
〈표 5-12〉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전체 돌봄 필요 가구)	155
〈표 5-13〉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돌봄 필요 가구 유형1)	156
〈표 5-14〉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돌봄 필요 가구 유형2)	157
〈표 5-15〉 돌봄 필요 가구 유형1의 고령자 가구 여부	158
〈표 5-16〉 돌봄 필요 가구 중 1시간 이상 방문자가 있던 가구 비율(가구 기준)	159
〈표 5-17〉 돌봄 가구 내 1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가구주 기준)	160
〈표 5-18〉 돌봄 필요 가구원의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체류시간	161
〈표 5-19〉 돌봄 필요 가구원의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체류시간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	162
〈표 5-20〉 돌봄자가 평소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 평균점수	163
〈표 5-21〉 돌봄자의 시간 부족 주된 이유: 돌봄 필요 가구	164
〈표 5-22〉 돌봄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165
〈표 5-23〉 돌봄 필요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일과 후 피곤함 정도	166
〈표 6-1〉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통근 여부별 관측치 수 및 비중	183
〈표 6-2〉 통근 기록이 있는 샘플의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관련 기술통계량	185
〈표 6-3〉 최종 샘플의 소득계층별 통근수단	187
〈표 6-4〉 1일 통근시간, 통근 횟수, 편도 통근시간의 주요 기술통계량	190
〈표 6-5〉 주요 통제변수의 편도 통근시간	191
〈표 6-6〉 통근수단별 1일 편도 통근시간	193
〈표 6-7〉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의 가구소득별 분포	194
〈표 6-8〉 가구 소득계층 간 1일 통근시간 격차: OLS 분석 결과(전체)	198
〈표 6-9〉 편도 통근시간 결정 요인의 가구 소득계층별 비교: OLS 분석 결과	203
〈표 6-10〉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 교통수단 사용 격차: 다항로짓분석 결과	208
〈표 7-1〉 개인 특성별 혼자 보내는 시간	223

〈표 7-2〉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223
〈표 7-3〉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학교 외 학습시간	224
〈표 7-4〉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학교 외 학습시간 제외)	224
〈표 7-5〉	1인 가구 유형별 혼자 보내는 시간	225
〈표 7-6〉	방문자가 있었던 비율	226
〈표 7-7〉	방문한 사람의 구성	226
〈표 7-8〉	성인의 종교활동시간 비교	227
〈표 7-9〉	행위 장소별 체류시간	228

그림 목차

[그림 2-1] 본 연구의 기본 가정	13
[그림 2-2] 연구 주제의 구성	16
[그림 2-3] 저소득층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47
[그림 2-4] 기타 소득층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47
[그림 2-5]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49
[그림 2-6] 기타 소득층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49
[그림 2-7]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시간 변화	51
[그림 2-8] 기타 소득층 노인의 생활시간 변화	51
[그림 4-1] 소득계층별 총노동시간과 유급/가사/돌봄노동 구성	107
[그림 4-2] 소득계층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상대적 비중	109
[그림 4-3]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한 직접 돌봄노동시간	117
[그림 4-4] 자녀 1인 가구의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한 직접 돌봄노동시간	118
[그림 4-5] 자녀 1인 가구의 직접 및 간접 돌봄노동시간	123



Abstract <<

Time Use in Low-Income Household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 Lee, HyonJoo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time use among people in low income households, who find it hard to spend money on services that would help them relieve their time constraints. Low-income people spent more hours on paid work during weekends, leaving less time to spend on child care. Low-income in women were associated with longer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 care. Low-income households had more ill members, were smaller in size on average, and spent less hours on care-giving, which suggests a higher risk of unmet care needs. Low-income people spent less time on commuting. Low-level wages and care-giving burden suggested a higher opportunity cost of time spent on commuting. Older persons in low-income households, with the social services, spent less time alone than did their higher-income counterparts. As for children, however, those living in low-income households spent more time alone than those in higher-income groups controlling the time for private education institute. This study proposed the service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low income suffer from time restriction.

Co-Researchers: Suh, jooyeoun · Yoon, Jayoung · Ji, MinWoong · Jun, Jihyun



요약 <<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면서 복지욕구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 소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자원의 소비는 가구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적 소비가 아닌 시간 소비로 욕구 충족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 중심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 및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시간 압박의 위험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 간병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통근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이동과 고립 위험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분석에 앞서서는 해외 주요국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을 위의 주제를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별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대체로 시간 압박이나 사회적 고립이 더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유급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남성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노동시간이 길고, 저소득층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은 짧지만 돌봄시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4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다. 한편 간접 돌봄시간은 저소득층에서 짧아서 저소득층 아동은 문화적 경험 등 집 밖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간호·간병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간호 및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더 많은 반면 가구 규모는 작아서 가구원의 간호·간병 부담이 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서비스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돌봄자의 수면 및 개인유지시간은 짧고 일과 가정관리시간은 길어서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돌봄자의 개인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돌봄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준고령자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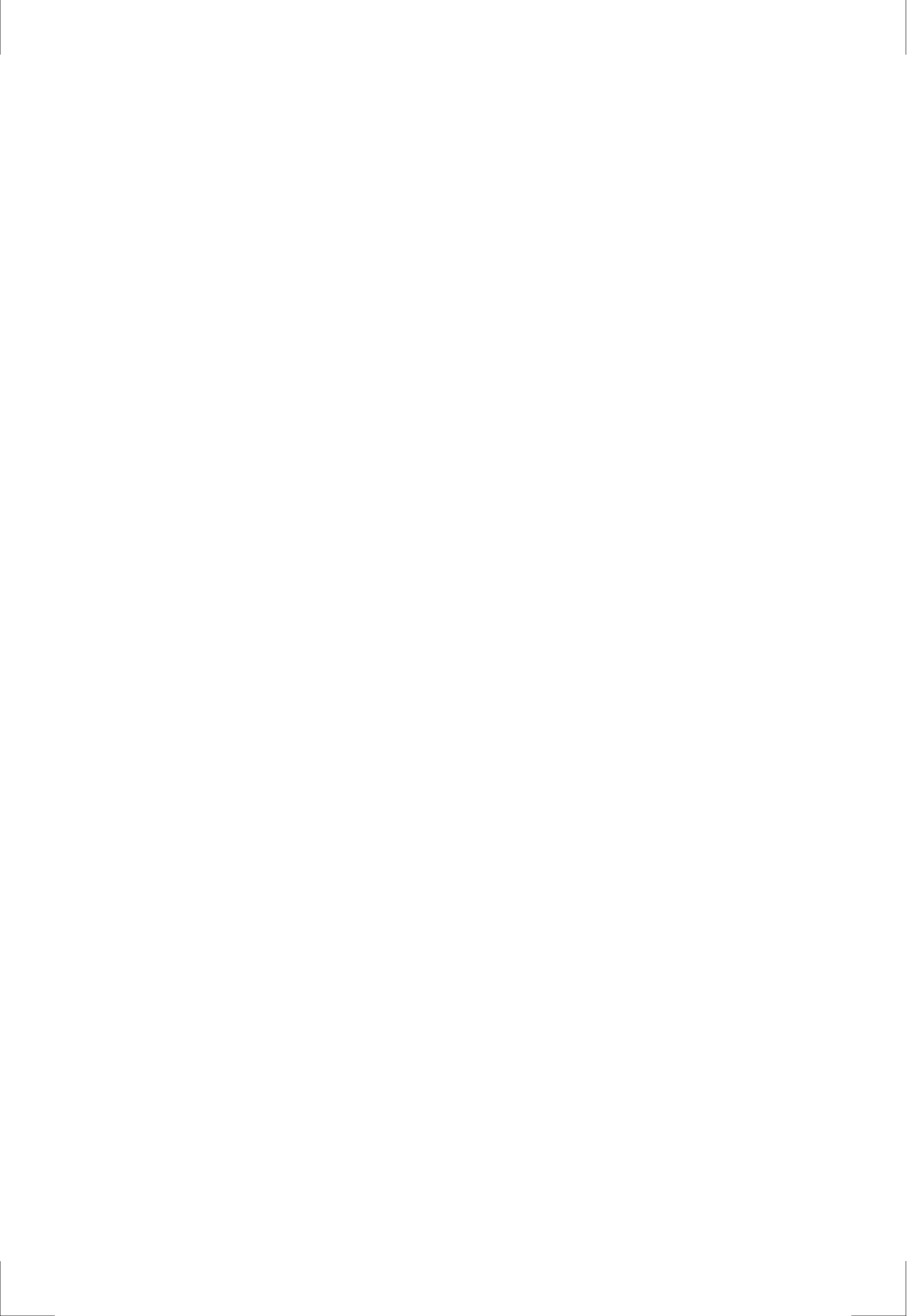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은 짧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상 특성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원거리 통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거나 원거리 이동을 선택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확률이 높아서 먼 거리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 위험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대체로 혼자 보내는 시간도 길고 집 밖에서의 활동시간도 짧았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의 위축, 고립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이유로 방문자가 많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러나 집 밖의 활동시간은 짧아 저소득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하고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상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주말에 유급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주말의 아동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확충에는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보상수준 제고, 주말 및 야간 근로를 최소화하는 노동 여건 조성,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정착,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문화적 기회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 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질환발생률은 일반 소득계층보다 높은 데 반해 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간호·간병 부담은 해당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높아서 중간소득계층까지도 간호·간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요 통근 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확충 등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통근 부담의 감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주거비 경감정책,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 돌봄 관련 복지정책이 함께 요구된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 대상 활동 서비스 지원이 보강되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일부 필요하더라도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한정하기보다 위 소득계층까지 포괄하여 아동의 방임 및 노인의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시간, 사회서비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면서 복지욕구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몇 년간은 이러한 기초가 맞춤형 복지와 같은 개념 속에서 복지정책의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각종 현금과 현물급여의 발전을 각기 특성이 상이한 욕구에 대응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된다. 각 가구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도구는 금전적 소비와 시간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어느 영역에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가구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는 금전적 소비가 아니라 시간 소비로 욕구 충족을 대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거나 질환이 있는 가구원을 돌보는 일 등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가구원이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욕구 충족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금전적 자원으로서 소득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모두 자원으로 이해되고 주어진 자원으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금전적 소비와 시간 소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욕구와 욕구 충족의 여건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과 금전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 개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은 소득빈곤과 소득보장이었다. 생계의 부족, 생존이 목전의 과제인 상황에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양곡과 같은 생계형 현물보장이 긴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고 그 소비가 욕구의 내용과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최근에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신설, 확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육, 요양 등 각종 서비스 지원이 개발, 시행 중에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문화, 교통 등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원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소득빈곤 집단의 규모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욕구, 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시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기존의 소득 중심으로 하는 욕구에 대한 간접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낮은 시장소득과 사회정책 급여 및 서비스로 욕구 충족을 시도하고도 남겨진 기초욕구는 시간 사용으로 대응하고 감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삶을 이해하는 데 생활시간 분석이 기존 분석에서 놓친 욕구 미충족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초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불일치, 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 중 대표적인 자원은 소득이었으며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 가구, 개인의 힘의 대리변수가 되어 왔다. 하지만 주요 자원 중 하나가 시간이다. 예를 들

어 아동과 부모로 구성된 가구와 아동과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자원의 수준이 상이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자원으로 이해되는 것은 시간이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포함하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초점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시간은 주로 성인의 시간을 중심으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욕구는 그 자체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득의 소비, 시간 소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로 금전적 소비를 중심으로 욕구를 이해하여 왔으나 시간 소비도 금전적 소비로 파악하지 못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주요 정보가 되고 있다.

기존 연구 중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기존 연구의 경향을 보면 여가시간과 노동시간, 아동 양육 및 가사노동시간의 분담, 노인 일상과 관련된 시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분석의 초점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소득빈곤은 시간 사용에서 더 큰 제약을 줄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등으로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과제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금전적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일상을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욕구와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지원제도의 확충 방안을 고민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하여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 단계의 특정 시점에서는 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거나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기도 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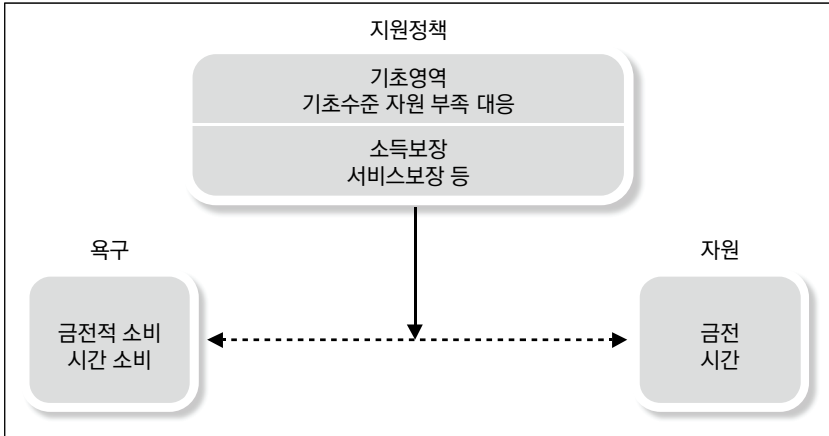
도록 정부가 질 관리에 나서야 하기도 한다. 경성의 서비스와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의 서비스는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거나 전문적이기 쉽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인 국민이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그 부정적 영향이 가져올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가 부족한지,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것인가가 모두 정부 정책 기획 단계에서 고민할 거리들이다. 그 제공자가 민간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몫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더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 필요를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앞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서비스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하고 저소득층의 시간 압박을 분석할 뿐 아니라 시간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근거에는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며 욕구에 대한 파악은 금전적 지출뿐 아니라 시간 소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림 2-1] 본 연구의 기본 가정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제별 구체적 연구문제와 분석 내용은 각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본 연구 본론의 첫 장인 제2장에서는 시간 소비 분석이 저소득층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기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는 빈곤층의 시간 분석에 주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왜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생활시간 분석에서 주제별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는 개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하 각 장에서 별도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생활시간의 항목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 개요 및 그 변화를 개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 저소득층이 시간 소비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의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본론의

주제별 분석은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여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갖는 특이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격적인 국내 저소득층의 특성 분석에 앞서 해외 저소득층 시간 소비에서 해당 주제들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상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외 국가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분석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있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를 앞에 둔다면 동일 내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해외의 생활시간 특징과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접근,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짚어 보았다.

이후 개별 장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시간 압박의 위험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시간 소비 중 어떠한 시간 사용에 대하여 주목할 것인가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저소득층 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무급노동 중 특히 돌봄노동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확인하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 분석은 일-가정 양립에서 중요한 이슈였으나 이를 저소득층과 일반 소득계층에서 상이점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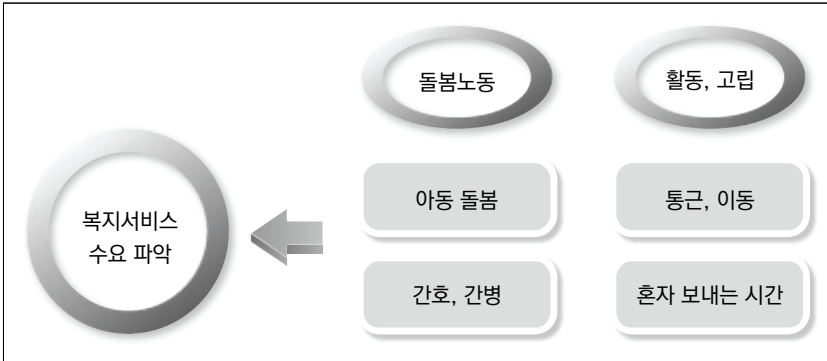
돌봄노동은 아동의 양육과 간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유는 해당 내용이 별도의 상이한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가구 내 질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질환발생률이 일반 소득계층보다 더 높고 간병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은 낮은 상황에서 간병시간과 그 영향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었다. ‘가구원 간호하기’의 경우 일상적인 가족의 돌봄에서 더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

이 강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분석은 생활시간 자료 중 세 분류를 고려한 분석으로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이 분석에서 어려운 점은 자주 활용되는 변수가 아니어서 해당 자료의 내용이 안정적이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시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가구의 경우 대체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가구와 주된 돌봄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수용, 돌봄자의 차이도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의 이동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주제를 초점으로 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대체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 장거리 통근으로 시간 압박이 심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시간의 계층별 비교를 하면서, 이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동수단에 대한 비교와 이동시간의 영향 분석, 그리고 주거지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저소득층의 이동시간 과다 또는 이동시간으로 인한 시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1인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혼자 보내는 시간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이동이 적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될 위험이 크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가구 유형의 변화 등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저소득층의 위험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2-2] 연구 주제의 구성



각 장은 이슈를 다루면서 저소득층과 기타 소득계층과의 상이성에 주목하고 한편 제한된 자원으로서의 시간 개념이 갖는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의 시간 소비가 타 영역의 시간, 또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본 연구의 제4장부터 제7장까지 개별 장에서 다루었다. 제4장에선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그리고 자녀양육시간의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슈가 저소득층에서 어떻게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선 저소득층의 간병시간과 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에선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저소득층이 혼자 보내는 시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8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에서 고려하고 정책 개발이나 확충으로 이어갈 내용을 정리하였다.

개별 주제를 다루는 각 장은 각 장에서 주목하는 연구 문제와 분석의 목적을 적시하고 별도로 선행 연구에 대하여 검토, 정리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함의도 해당 주제별로 논의하고 있다.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의 소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 내용 분석, 양적조사 원자료 분석, 주요 유형의 가구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관련 문헌 수집과 이론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을 통해 시간 소비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를 파악하고, 시간 소비 분석이 저소득층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주제별로 소득계층별 생활시간 사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돌봄과 노동시간, 통근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등을 중심으로 시간 구분이 이루어졌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대분류와 소분류 중 중요한 의미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의 분류는 연구 주제별로 구체적 기준을 달리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활시간의 분류는 다양하다. 각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초점에 따라 항목의 구분이나 선택이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구분에 대해서는 박수미 등(2005)의 연구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Robinson(1976)은 의무적인 활동시간(노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개인 유지, 교통(이동)시간 등)과 자유시간(조직 활동과 교육, 대중매체 이용, 사회여가)으로 구분하였으며, Feldman과 Hornik(1981)는 노동과 비노동시간으로 구분, Hill(1985)은 시장노동, 가사노동, 자녀 돌보기, 쇼핑, 개인적 필요, 교육, 조직 참여 활동, 사회적 오락,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등으로 구분하였다(박수미 등, 2005, p. 13에서 재인용). Sullivan과 Gershuny(2001)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레저활동, 생리적 시간을 포함한 개인 유지로 구분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조희급(1993), 이기영 등(1994), 박수경, 홍향숙(1994), 박수미 등(2005)이 생리적 시간(개인 유지), 수입노동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시간(무급노동), 사회문화적 시간(자유시간)으로 분류하였다(박수미 등, 2005, p. 13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소비 자료의 기본 대분류를 기준으로 시간을 구분하되 주제별 분석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 항목의 경우 세분 기준을 준용하여 시간을 분류하고 선택하였다. 간병시간, 통근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등이 이러한 분류를 활용한 예이다.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보완적 이해를 위해 기타 보조 자료의 활용을 통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과 함께 이슈별 이해,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각종 일차 자료, 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저소득층의 일상에 대한 분석에서 분석의 방향을 모색하고 결과의 해석에서 풍부함과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은 1인 청년 가구, 1인 노인 가구, 아동이 1인 이상 있는 4인 맞벌이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였다. 면담 내용은 일상적 하루 시간 사용을 주증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말도 일부 참고하도록 시간 사용 개요를 파악하였다. 면담 내용은 크게 가사노동, 돌봄노동, 통근시간, 기타 시간 사용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면담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가사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시간의 구성, 가사노동시간과 관련된 특정한 노력 및 쟁점 - 특정 가사노동을 줄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와 장애 요인 - 가사노동 중 최근 가장 많이 줄이는 노동 - 가사노동의 시장화에 대한 최근 경험과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 가사노동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주로 식사 준비, 세탁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되 여타의 다른 서비스 이용도 있는지 확인
돌봄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시간의 할애와 그 영향, 이와 관련된 대응과 주요 쟁점 - 돌봄서비스 이용 및 구매 상황과 이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통근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노동의 상태, 통근 방식,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선택과 영향 등 - 통근시간, 통근의 주 수단(도보, 대중교통, 차량), 선택 이유 등 - 통근시간과 관련하여 직장, 주거지 선택에서 통근에 대한 고려 - 현 거주지 결정 이유(아이의 교육, 남편의 통근시간 혹은 거주지 접근성 고려, 부인의 통근시간 혹은 거주지 접근성 고려 등) - 어느 가구원의 회사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와 그 이유(주된 소득원 배려, 일·가정 양립 우선 고려 등)
기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보내는 시간의 정도와 이유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실태와 구성 - 혼자 보내는 시간의 과다와 부족 등 이와 관련된 상태와 그 영향 - 여가시간의 정도와 구성

면담 내용은 분석에서 고려할 점을 얻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녹취록의 내용은 일부 분석 결과의 해석에 병용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이슈 및 생활시간 분석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서는 시간 소비 분석에서 주의할 점과 기존 연구에서 극복하여야 하는 차별화 측면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시간 소비 자료에 대한 검토와 향후 자료의 활용에서 고려,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저소득층 지원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정책 확충에 대한 검토도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 저소득층의 구분

본 연구는 세부 주제별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시 저소득층 구분 등 기본적인 틀이 되는 분석 기준을 통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 분석을 시도하므로 저소득층 구분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 저소득층과 비교할 수 있는 타 소득집단을 구분하였다.

기존 시간 사용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초점으로 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배경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준거로 소득의 탈피를 지향하는 연구로 시간을 준거로 대체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자료의 한계로 대부분의 시간 소비 자료가 정확한 소득 파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구분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생활시간 분석에서 초점은 주로 시간빈곤, 시간의 부족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단, 초기 연구인 Vickery(1977) 연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의 소득 중심의 접근을 비판하면서도 시간을 현금화, 또는 현금의 시간화를 시도하였다. 또는 취약인구집단의 시간 소비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저소득층의 구분은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행 연구에서 소득 구분을 시도한 연구는 우선 두 가지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소득 자료가 부실함을 이유로 회귀식을 활용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각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하였다. 염주희 등(2012)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소득변수의 구간 중앙값을 설정하여 해당 가구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미달이면 소득빈곤으로 처리하였다. 가구원의 수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득구간변수를 활용하여 자료의 한계 내에서 하위 25%, 25%~75%, 그리고 상위 25%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하위 25%는 저소득층, 25~75%는 중간소득층, 상위 25%는 고소득층으로 명명하였다. 즉 소득구간변수의 중앙값¹⁾을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²⁾ 세부 분석에 따라 유효 표본 수의 부족 등으로 소득 하위 25%인 저소득층과 기타 소득층으로 구분을 단순화하기도 하였다.

〈표 1-2〉 소득계층별 가구 비율

(단위: %)

소득 구분	가구 비율
중위 50% 이하	21.1
중위 60% 이하	28.7
중위 70% 이하	29.5
중위 50~150% 이하	55.0
중위 150% 초과	23.9

주: 1) 개별 가구의 소득은 8개 소득 구간의 중간값 이용. 단, 700만 원 이상은 700만 원으로 처리.

2) 소득기준선-2개 요일 고려한 가구데이터로 전환하고, 가구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1-3〉 저소득계층의 중위값

소득 구간	저소득층	고소득층
각 지점에 해당하는 소득값	106만 원	260만 원
중위값 대비 각 지점에 해당하는 소득값의 비율	60.0%	147.0%

주: 1) 중위값은 177만 원.

2) 소득기준선-2개 요일 고려한 가구데이터로 전환하고, 가구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1) 단, 700만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700만 원으로 처리하였다.

2)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또 다른 특징은 조사 대상 가구원들이 2일 동안 시간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구원별로 2개 요일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며, 가구별·가구원별·요일별로 다른 개인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구별로도 동일 가구 내에서도 요일별로 다른 가구가중치가 존재한다. 이에 소득계층 구분 등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가구별로,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가구원별로 2개 요일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표 1-4〉 소득계층별 가구 비율 및 규모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비율	28.7	47.4	23.9	100.0
규모	7,148	11,428	5,396	23,972

주: 소득기준선-2개 요일 고려한 가구데이터로 전환하고, 가구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소득계층별 시간 사용과 더불어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통근 등을 고려할 때는 주중의 요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주간 시장노동, 가사노동시간 등의 분석에서는 주간 전체 시간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3. 분석 대상 사례 가구의 구성

저소득이라는 어려움을 공유한다고 하여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을 구분하여 시간빈곤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 생활시간 분석은 분석 결과 해석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개인유지시간과 여가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염주희 등, 2012³⁾ 등). 저소득 취업자의 경우 저임금으로 더 긴 노동을 하는 사례도 다수일 수 있으므로 평균 개념의 활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분석의 사례 가구 유형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석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ickery(1977)의 연구에서는 성인

3) 동 연구는 그 연구의 주목적이 저소득층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분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특징을 밝히는 목적의 연구에서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1인인 가구와 2인인 가구로 우선 구분 후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분석 대상 가구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가구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이라 하여도 아동이 있는 가구와 아동이 없는 가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여도 청년과 노인 가구의 상이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는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 중 저소득 가구와 기타 소득계층 가구의 비교, 노인 1인 가구의 저소득 가구와 기타 소득계층 가구의 생활시간 비교를 가정할 수 있다.

분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특정 가구 유형을 선정하고 연구의 각 부문에서 이를 공유하였다. 저소득층이라고 하여도 가구 또는 개인의 평균 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저소득층의 구성으로 인하여 현상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특정 가구 유형별 집단을 구성하고 초점이 되는 가구원의 시간 소비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당 가구 유형에서도 분석의 초점이 되는 가구원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근시간 분석에서는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가구원이 초점이 될 것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업주부 가구원이 초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사례 가구 유형 선정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간이 자원이라는 주요 전제를 고려하여 근로 가능 성인의 수가 상이한 동일 가구 규모의 가구 형태가 상이한 가구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의 이슈를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수를 달리하는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저연령의 아동과 장애인 및 질환자를 구분하여 구성에 반영하였다. 분석 대상 사례 가구의 유형은 크게 1인 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구성하고, 유형별로 다소 상이한 특징을 가

지는 집단을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1인 노인 가구와 1인 청년 가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노인과 청년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이성을 가질 뿐 아니라 최근 사회서비스 등에서 주요 표적 집단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은 취업과 미취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와 아동 1인이 있는 3인 가구와 한부모와 아동 1인이 있는 2인 가구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아동은 1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연령으로 해외 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과 돌봄이 필요 없는 성인 1인으로 구성된 2인 가구,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과 돌봄이 필요 없는 성인 2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의 부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구 구성을 고려한 것이다. 질환자·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 구성을 포함한 것이다.

해당 가구의 분석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의 규모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때 유효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부부와 아동 가구를 저소득, 비저소득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전체 비교를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부담을 추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표 1-5〉 사례 가구의 규모(가중치 미적용)

가구 유형	전체		저소득층	
	가구 수	요일 고려한 가구 수	가구 수	요일 고려한 가구 수
1인 노인 가구	1,165	2,330	976	1,952
1인 청년 가구(19~34세)	522	1,044	169	338
10세 이하 아동 1인 있는 부부 가구(3인 가구)	703	1,406	73	146
10세 이하 아동 2인 있는 부부 가구(4인 가구)	771	1,542	41	82
10세 이하 아동 3인 있는 부부 가구(5인 가구)	118	236	13	26
10세 이하 아동 1인 있는 한부모 가구(2인 가구)	18	36	12	24
돌봄 필요한 가구원 1인+ 돌봄 필요 없는 성인 1인(2인 가구)	146	292	118	236
돌봄 필요한 가구원 1인+ 돌봄 필요 없는 성인 2인(3인 가구)	73	146	29	58
참고: 한부모 가구	225	450	127	254
전체 가구	11,986	23,972	3,574	7,148

- 주: 1) 돌봄 필요 가구원- 치매, 중풍, 장애,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한부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가구주인 부모의 혼인 상태가 미혼, 이혼, 사별이면 한부모로 집계.
 3) 성인-만 19세 이상.
 4) 부부 가구- 가구주의 배우자가 가구원에 존재하는 경우(즉 같이 살고 있는 경우).
 5) 소득기준선-2개 요일 고려한 가구데이터로 전환하고, 가구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26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표 1-6〉 기타 가구 유형의 규모(가중치 미적용)

(단위: %)

가구 유형	전체		저소득층	
	가구 수	요일 고려한 가구 수	가구 수	요일 고려한 가구 수
노인 부부 가구	898	1,796	699	1,398
12세 이하 아동 있는 부부 가구(3인 가구)	760	1,520	79	158
12세 이하 아동 있는 부부 가구(4인 가구)	1,338	2,676	69	138
13~18세 아동 있는 부부 가구(3인 가구)	311	622	24	48
13~18세 아동 있는 부부 가구(4인 가구)	900	1,800	41	82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있는 가구	457	914	279	558
전체 가구	11,986	23,972	3,574	7,14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1-7〉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가구 규모별 분포

(단위: %)

가구 규모	가구 비율
1인	20.5
2인	35.8
3인	19.2
4인	16.5
5인	4.9
6인 이상	3.2
전체	100.0

주: 2개 요일 고려한 가구데이터로 전환하고, 가구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와 저소득층 생활시간 개관

제1절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

제2절 저소득층 면담 내용과 함의

제3절 저소득층 시간 소비 개관



2

선행 연구 검토와 << 저소득층 생활시간 개관

제1절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

시간 소비 분석은 빈곤을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갖는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시간 소비 분석은 소득빈곤과 시간 소비의 상호의존성, 상쇄관계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시간이 갖는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를 하도록 하였지만 시간을 소득, 금전적 자원으로 환산하여 단일 차원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안된 자원으로 전제하고 시간 소비를 전체 시간의 소비라는 맥락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영역의 시간 소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금전적 자원으로 시간을 환산하지 않고 별도의 자원으로 분석하고 특정 영역의 시간과 다른 영역의 시간 소비 관계 분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시간과 소득의 상쇄관계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무급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도 이러한 연구와 같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급노동 시간이 긴 저소득층의 무급노동이 갖는 부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대표적 연구는 Vickery의 연구이다.

Vickery(1977, p. 28)는 다차원빈곤 개념을 수용하고 시간빈곤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가사노동 여력이 가구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비시장노동시간의 결핍이 소득빈곤과 같이 가구의 자원 결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미국의 빈곤선이 필요한 식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책정에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집에서 전업으로 이러한 재료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가능한 가구를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Vickery, 1977, p. 29). Vickery는 시간빈곤을 고려하여 빈곤층의 규모에 대한 재계산을 시도하였다. 이때 소득이 소득 빈곤선 이상이지만 시간빈곤선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시장노동시간을 갖지 못한 가구를 시간빈곤 가구로 구분하였다(Vickery, 1977, p. 33).

상시근로자의 평균 시장노동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용된 연구에서는 유급노동시간이 전체 노동시간의 82%를 차지하며 18%는 이동시간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1주일 40시간이 유급노동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게 된다. 상시근로자는 일주일에 49시간을 유급노동과 관련된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Vickery, 1977, p. 34). Vickery는 무급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소득의 계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일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자면 그 비용이 해당 유급노동시간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보다 높다는 점이 시간빈곤의 계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Vickery, 1977, p. 29).

Vickery는 최저 소득과 최저 유급노동시간까지는 소득과 시간이 서로 상쇄관계가 아니지만 최소 구간 외 구간에서는 시간과 소득이 상쇄관계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Vickery, 1977, p. 29).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여성 가장의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더 높아진다. 가구 형태에 따라 돈 말고도 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이다. 실제 사회정책에서 이미 일부는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근로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가 어려운 가구원에 대한 수당도 이러한 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이 충분한가는 다소 의문이다. 즉 이러한 고려는 현금과 현물인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여도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는 더 높은 비용으로 서비스 구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사고의 상당수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부족이 금전적 자원 부족과 중첩될 때 발생하였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이후로 계속 이어져왔다. 여러 연구들은 임금노동시간의 증가와 가구유지시간의 감소를 시간빈곤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고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원리의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는 Kes와 Swaminathan의 아래와 같은 정의에서 대표될 수 있다. “시간빈곤은 다양한 과업들의 상충과 노동 강도의 증가를 야기하는 많은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개별 시간에 대한 요구가 가중”되는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다(Kes & Swaminathan, 2006, pp. 14-16; 노혜진, 김교성, 2010, p. 162에서 재인용). 즉 “시간빈곤은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과부담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 할당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노혜진, 김교성, 2010, p. 162에서 재인용)할 수 있다.

Bardasi와 Wodon(2006)은 시간 소비 조사를 통하여 개인들의 총 임금노동시간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별 노동시간의 분포도와 중위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시간빈곤의 측정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노동시간

소비가 중위값의 1.5배 혹은 2배인 경우를 시간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시간빈곤율과 시간빈곤갭을 추정하였다(Bardasi & Wodon, 2006; 노혜진, 김교성, 2010, p. 163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시간빈곤의 조작화에 대하여 노혜진, 김교성(2010)의 연구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총임금노동시간을 가지고 시간빈곤을 측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노동 투입수준이 높은 고소득집단이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빈곤 연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노혜진, 김교성, 2010, p. 162). 즉 시장노동시간의 길이만으로 시간빈곤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빈곤과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노동시간의 과다로 인한 여가시간이나 관리시간의 부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rvey와 Mukhopadhyay (2007)는 시간빈곤에서 야기된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 소득의 산출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노혜진, 김교성, 2010, p. 16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부족한 시간을 화폐로 전환할 경우 소득빈곤의 기준선(cutoff)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선에서 시간빈곤을 화폐로 전환한 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노혜진, 김교성, 2010, pp. 168-169에서 재인용).

Merz와 Rathjen(2009)은 빈곤이 다차원적인 것이고 소득과 같이 시간도 빈곤의 중요한 차원이며 소득과 시간빈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시간 압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 분석에서는 소득과 여가시간의 대체 관계의 측정을 초점으로 독일의 시간 소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시간빈곤, 즉 시간 부족을 소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집단을 발견하고 이들이 빈곤이나 복리(well-being)에 대한

연구나 정책에서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노혜진, 김교성(2010)은 빈곤과 복지는 소득과 시간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전제하고(노혜진, 김교성, 2010, p. 160) 생계부양자가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 빈곤 규모를 산출하였다. 가구 유지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소득빈곤이 더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 것인데 분석 결과, 소득빈곤율은 9.5%, 시간빈곤율은 15.7%, 그리고 시간 조성 소득빈곤율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빈곤을 고려하면 빈곤율이 소득빈곤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이중 빈곤 경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김교성, 2010, p. 15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Vickery의 지적과 유사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분석 결과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임금노동시간의 증가와 가구유지시간의 감소를 시간빈곤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척도로 시간의 부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 등에 관심을 두었다.

시간 소비에 대한 연구 중 다른 유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을 소득으로 환산하기보다 시간 소비 영역 간 관계에 주목한다. 시간 소비를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항목의 시간 소비가 늘면서 줄어드는 다른 항목의 시간소비를 파악하는 방식이 대표적 분석 방법이다. 저소득층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나 또는 젠더를 주제로 돌봄노동시간의 부담을 여가시간과 비교하면서 분석한 연구들이 이러한 연구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시간의 맥락을 중요시한다. Bardasi와 Wodon(2006)은 시간빈곤을 노동시간 외 휴식과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시간빈곤

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요 지적 중 하나는 현금 등 금전적 자원과 달리 시간은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의 영역에 대한 시간 소비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즉 시간은 금전과 달리 제한된 자원이다. 이러한 시간자원의 특징은 소득빈곤과 분석을 달리할 필요성을 만든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언급한 연구 방식과 같이 금전적 소비보다 맥락에 대한 이해, 구성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성별 상이성에 대한 분석이 있다. Kirzilmak와 Memis(2009)는 남아프리카에서 소득빈곤이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서 소득빈곤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빈곤 가구의 여성은 물을 길고 빨감을 구하는 등의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빈곤 가구의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Kes와 Swaminathan(2006), Hirway(2015)의 연구도 모두 무급노동과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Wolf, Aber와 Morris는 시간 사용 분석을 단일 항목의 평균 시간 사용으로 이해하기보다 여러 항목의 시간 사용을 고려한 전체 시간 사용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Wolf, Aber & Morris, 2015, p. 1211). Wolf 등(2015)은 청소년의 시간 사용 분석 중 초기 연구들이 하나의 행동 영역을 초점으로 한 반면 최근의 연구는 각 행동을 맥락으로 이해하는 보다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person-oriented approaches라고 명하고 최근 여러 학자들(Bartko & Eccles, 2003; Feldman & Matjasko, 2007; Linver et al., 2009; Nelson & Gastic, 2009; Shanahan & Flaherty, 2001;

Zarrett et al., 2009; Wolf et al., 2015, p. 1211에서 재인용)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분석은 총체적으로 시간 사용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Ferrar 등(2013)은 기존의 여러 연구를 활용하여 신체적 활동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군집 분석을 하여 29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Wolf et al., 2015, p. 1211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일, 학교, TV 시청과 같은 단순활동군, 두 개의 동시 활동으로 구분되는 군 등으로 대별되는데 취약인구집단이 TV 시청이나 특정 영상을 보는 시간(screen time)과 같은 단순 활동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있고 고소득 집단은 학교에 기반을 둔 조직적 학습활동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현금자원으로 치환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좀 더 주목한 연구들이다.

끝으로 시간 소비에 대한 연구의 또 다른 유형을 언급하자면 시간과 관련된 특정 이슈나 일부 인구집단의 시간 소비가 갖는 특이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 시간 분석(조영희, 2004), 노인의 일과 여가, 가족과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김진옥, 2006 등) 등이 이러한 예이다. 이 연구들은 소득빈곤보다는 인구학적 특징이 생활시간 소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에서는 노인과 비노인의 구분이 더 빈번하고, 저소득 노인과 기타 소득계층의 노인이 생활상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여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유사한데 여성 중 취업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시간 사용의 상이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의 학습시간 분석이나 아동이나 노인의 여가시간의 구성 상이성 등을 분석한 연구도 특정 주제에 강조를 둔 연구에 해당될 것이다. 노혜진(2013)은 빈곤계층의 시간 소비 특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역시 재량시

간을 중심으로 빈곤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여성이라는 인
구집단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고 있다.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는 데는 특정 영역의 시간 소비를 초점으로 한정
한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보다 누가 왜 시간 부족을 경험하
는가가 중요한 정보이다. 시간 소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
구는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 특징을
밝히고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 중 저소득층의 특성
을 보다 종합적으로 특히 사회정책적 대응을 고려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다. 생활시간 분석을 통하여 노동, 여가, 생활상의 부담(돌봄, 주거와
이동), 가족관계 등 사회정책의 주요한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일상의 어
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슈별로 시간 사용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저소득층의 일상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는 빈곤층의 여가시간, 또는 재량시간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
어지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시간 분석에서 더 확장, 풍부하여질 수 있다. 관련 연구나 면담 등을 거
쳐 저소득층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넓히고 분석을 종합하고
자 한다.

제2절 저소득층 면담 내용과 함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무급노동시간, 재량시간, 그리
고 돌봄시간에 한정하여 시간 소비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주제만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하여야 할 주제,
시간 영역을 찾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부부와 2인의 자녀 가구(자녀 중 1인 장애인) ② 1인 청년 가구 ③ 3인 한부모 가구 ④ 1인 노인 가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 규모를 1인 가구로 동일하게 하였으나 청년, 노인 가구와 같이 연령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한부모 가구와 부모아동 가구로 아동 가구도 사례를 구분하여 사례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발견한 저소득층의 생활상 어려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이미 자주 언급하였듯이 노동시간이 길고 시간대도 비빈곤층과 상이하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영역의 시간 소비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주말노동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노동시간대의 선택에서 제약이 있었다.

“일상을 보면 일만 하고 자기 바쁜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친구는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이에요. 명목상은 8~9시 출근이지만 기업문화 때문에 일찍 직장에 가야 해요. 그런데 퇴근은 저녁 11시 즈음이에요... 주말에도 직장에서 전화가 오면 출근하고...”

“배달하는 일을 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아이들 볼 시간은 거의 없어요. 토요일에도 출근해요.”

“(한부모 가구) 아이들만 있으니까 불안해서... 자꾸 전화하게 돼요. 저녁에 일하는 일자리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이동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다른 영역의 시간 소비 제약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이동이 쉽지 않아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포기가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

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지원은 향후 이 집단의 사회적 참여에서 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거주지 선택에서는 통근시간이 중요한 고려점이 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아동의 교육이 가장 큰 고려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임금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모의 일터와 집을 가까이 두고자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주지를 정하고 직장을 가까운 곳에서 구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지하철과 버스로 오가는 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집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줄이고 싶은 시간이 있는지요?) 굳이 따지자면 이동시간이죠.”

“(우리 아이 치료를 하자면…) 원하는 치료센터가 근처에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해요.”

“(농촌에 거주하는 1인 독거노인) 병원에 가려면 하루에 3번 정도 다니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혼자서 가려면 힘이 들어서 안 가게 돼요.”

“학교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다른 지역은) 내 경제수준과 맞지 않아 갭이 생기는 것이 좀 싫어서…(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다른 데도 월 180만 원 정도로 임금이 많지 않아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자주 발견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주거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과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이 장애로 작용하였다. 즉 집으로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한정되는 경향도 있었다. 외부인의 가정 방문이 매우 적은 특

징이었지만 경로당 방문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관계자의 방문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였다.

“둘째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친구가 둘째 아이한테 네 방은 없느냐고 했던 적 있어요. 첫째 아이는 예민해서 아예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회관에 가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혼자 지내요. 회관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굳이 따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외부 사람은 잘 안 와요. 외부 사람 출입은 없고 엄마, 아빠, 형제들만 오가요.”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원 돌봄이나 또는 낮은 소득, 긴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여가시간의 활용에서도 상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집에서 가족끼리 보내거나 집 밖에서도 가족 외 네트워크 활용은 매우 적은 듯하였다. 특히 종교생활에 대한 의존도 강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종교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친교를 하거나 또는 집밖의 활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TV만 보죠.”

“(교회에 가려면) 한 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끝나고 권사님과 밥 먹고요. 주변 분들과 커피 한 잔 하고 얘기 듣고 2~3시까지 있다 와요.”

“아이들을 교회라도 자꾸 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히면 밖에서 놀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집에 있는 편이에요.”

“(주말에는) 주로 아침에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약속이 잡히면 노는 거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거기 앉아서 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새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끝나면 애들 보내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애들이랑 어

올리는 시간은 교회에서 길게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학원이며 게임이며 바쁘지만 우리 집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돌봄노동의 분담에서 주 소득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에서 서비스 구매력이 낮아 돌봄노동시간이 길고 돌봄에서 분담이 어렵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원 중 미성년 가구원의 돌봄노동시간이 길 위험도 있었다. 성인 보호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돌봄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 내 연령이 높은 아동이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요양시설에서 아버지가 외출하여 오시면 그냥 시간이 다 소요되어 버려요... 아버지 드실 것 장만하거나 하려고 공사장에도 갔었어요.”

“첫째가 제가 일하러 가면 둘째 아이를 돌보곤 하였어요. 그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많이 참았을 거예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아동의 홀로 보내는 시간(아동끼리 보내는 시간)도 짧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부나 모는 아동에게 자주 전화로 아동의 이동이나 활동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학원으로 보내 아동의 안전한 시간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인의 홀로 보내는 시간도 길었으며 돌봄노동을 하는 가구원의 경우 집 밖으로의 외출이 쉽지 않아서 역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에 따라 시간 사용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비취업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시간 사용이

매우 작았으며 특히 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여가를 위한 비용 충당도 부담이 되므로 저소득의 경우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2분 정도의 무료 동영상을 여러 편 이용하기도 하였다.

상기의 저소득층 면담 내용은 이하 저소득층 생활시간 분석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시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 통근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돌봄시간에 대한 강조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통근시간이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주제별 분석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말과 주중의 구분, 취업과 미취업의 구분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상기 면담 내용은 각 장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3절 저소득층 시간 소비 개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시간 소비 분석은 이슈별로 진행하였다. 주제별 분석에 앞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시간 소비 개요는 통계청 시간 소비 자료의 대분류별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시간 소비 자료의 행동분류는 아래 <표 2-1>과 같다. 이하 본론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대분류에서 더 나아가 세분류의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 유지시간에서도 해당 시간 소비 감소가 건강관리시간을 줄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면시간을 줄인 때문인지 등은 매우 상이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에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돌봄의 경우에도 아동 돌봄과 간

42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병·간호의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므로 분리, 세분한 행동분류별 시간 소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 소비 개요 분석에서는 주로 대분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1〉 시간 소비 자료의 행동분류

대분류	세분류
개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유지: 수면, 잠 못 이룸 - 식사 및 간식: 식사, 간식·음료, - 개인 건강 관리: 자기 치료, 아파서 쉬, 의료서비스 받기 - 기타 개인 유지: 개인 위생, 외모 관리, 이미지 관련 서비스 받기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주업, 부업,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자가 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기타 일 관련 행동 - 구직활동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활동: 학교 수업, 학교 수업 간 휴식, 학교 자율학습, 학교 행사, 기타 학교 활동 - 학교활동 외 학습: 학원 수강, 방송·인터넷 수강, 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가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관리: 음식 준비, 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 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세탁하기,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가정용 섬유·신발서비스 받기 - 청소 및 정리: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주거 관리, 가정용품 관리·제작,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 차량 관리: 차량 관리하기, 차량서비스 받기 - 애완동물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애완동물서비스 받기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상품 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 기타 가정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이용, 관공서 등 이용, 기타 가정 관리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이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동거 배우자):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대분류	세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 의무적 참여활동, 자녀 교육 관련, 기타 참여활동 - 자원봉사: 국가·지역 행사 관련, 소외계층 관련, 재해주민 관련, 기타 자원봉사 -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소득 있는 활동 돕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대면 교제, 화상·음성 교제, 문자·메일 교제, 기타 교제활동 -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책 읽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 보기, 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인터넷 정보 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 - 종교활동: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 집회·모임 참가, 기타 종교 관련 활동 - 문화 및 관광활동: 영화관·비디오방, 연극·콘서트,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관광·드라이브, 기타 문화·관광활동 - 스포츠 및 레포츠: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산, 자전거·인라인, 개인 운동, 구기 운동, 낚시·사냥, 기타 스포츠·레포츠 - 의례활동: 관혼상제 등 의례 - 기타 여가활동: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여가·교양 학습, 유희,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쉬, 기타 여가 관련 활동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유지 관련 이동 - 일 관련 이동: 출퇴근, 기타 일 관련 이동 - 학습 관련 이동 - 가정 관리 관련 이동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동거 가구원/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 기타 이동 관련 행동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분류되지 않는 행동: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한편 주제별 분석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개요 제시는 2004년의 시간 소비 실태와 비교하였다. 저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와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 이전 자료의 경우 가구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슈별 분석에서는 2014년에 한정하여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 소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44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2004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규모를 가능한 수준에서 추정하여 저소득층을 구분하고 2014년의 시간 소비와 비교하였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등 가구정보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시간량 데이터의 응답자(만 10세 이상)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을 구하여 가구균등화소득을 계산하였다. 이때 가구원 수에는 가구원별로 응답한 미취학 자녀 정보를 토대로 자녀 수를 포함하였는데, 만 0세와 결측이 구분되지 않아 0인 경우는 모두 제외한 후 합산하여 가구원별로 가구원 수에 합산하였다.

〈표 2-2〉 소득계층별 집단 구성 비교(2004, 2014)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2004				2014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만 19세 미만	12.1 (1,692)	16.3 (6,214)	12.8 (2,118)	14.6 (10,024)	7.3 (910)	13.9 (4,094)	12.0 (2,020)	12.0 (7,024)
만 19세 이상 +취업	29.9 (4,444)	59.3 (20,788)	70.0 (9,694)	56.2 (34,926)	36.1 (4,422)	59.9 (15,984)	67.2 (9,526)	57.1 (29,932)
만 19세 이상 +미취업	58.1 (7,558)	24.5 (8,306)	17.2 (2,454)	29.2 (18,318)	56.6 (6,812)	26.2 (7,264)	20.8 (2,944)	30.9 (17,020)
전체	100.0 (13,694)	100.0 (35,308)	100.0 (14,266)	100.0 (63,268)	100.0 (12,144)	100.0 (27,342)	100.0 (14,490)	100.0 (53,976)
	2004				2014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만 65세 미만	68.0 (8,844)	94.2 (32,892)	96.9 (13,778)	89.8 (55,514)	56.3 (6,234)	91.8 (24,720)	95.6 (13,794)	85.6 (44,748)
만 65세 이상	32.0 (4,850)	5.8 (2,416)	3.1 (488)	10.2 (7,754)	43.7 (5,910)	8.2 (2,622)	4.4 (696)	14.4 (9,228)
전체	100.0 (13,694)	100.0 (35,308)	100.0 (14,266)	100.0 (63,268)	100.0 (12,144)	100.0 (27,342)	100.0 (14,490)	100.0 (53,976)

주: 1) 취업자-경제활동 상태가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휴가, 휴직 포함).

2) 가구균등화 소득-2004년 자료는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등 가구 정보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시간량 데이터의 응답자(만 10세 이상)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을 구하여 가구균등화소득을 계산함. 이때 가구원 수에는 가구원별로 응답한 미취학 자녀 정보를 토대로 자녀 수를 포함하였는데, 만 0세와 결측이 구분되지 않아 0인 경우는 모두 제외한 후 합산하여 가구원별로 가구원 수에 합산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취업자를 중심으로 2004년의 시간 소비를 계층별로 비교하여 보면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그리고 교제와 여가시간의 경우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가 길었다. 이는 주로 근로시간의 길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시간을 보면 저소득층의 해당 시간 소비가 짧다. 이동시간도 저소득층보다 기타 소득층의 시간 소비가 더 길었다. 이러한 경향은 2014에서도 여전하다. 하지만 개인유지가정관리시간의 계층 간 차이는 다소 줄었고 반면 일시간 차이도 역시 줄었다. 즉 2004년 대비 기타 소득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개인유지가정관리시간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아졌고 일시간은 조금 길어졌다. 기타 소득층의 일시간도 줄고 저소득층의 일시간은 조금 늘어났고 이러한 변화가 여타의 시간 소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4년과 2014년의 시간 소비 개요를 보면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보면 일시간과 학습시간이 증가한 반면 개인유지시간과 가정관리시간, 교제와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세분류를 참조하여 보면 개인유지시간 중 개인건강관리시간이 감소하였고 가정관리시간 중에서도 음식준비시간이 감소하였다.

46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표 2-3〉 계층별 취업자 시간 소비의 변화

(단위: 분)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33	607	659	641
일**/**	305	420	315	409
학습***/**	8	4	13	7
가정 관리***/**	102	55	92	56
돌봄**/**	12	15	10	16
참여/봉사***/**	4	2	4	1
교제/여가***/**	266	212	233	175
이동***/**	93	115	95	119
기타***/*	16	11	18	18
합계	1,440	1,440	1,440	1,440

주: 1) 만 19세 이상 취업자의 주중 시간 소비.

2)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표 2-4〉 취업자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단위: 분)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33	607	659	641
개인 건강 관리***/**	10	3	7	2
개인 위생, 아미용**/**	61	62	71	75
가정 관리***/**	102	55	92	56
음식 준비***/**	56	28	50	27
상품 매장 쇼핑**/**	6	5	6	6
상품 온라인 쇼핑***/**	0	0	0	1

주: 1) 개인 건강 관리-자기 치료, 아파서 쉬, 의료서비스 받기.

2) 개인 위생, 아미용-개인 위생, 외모 관리, 아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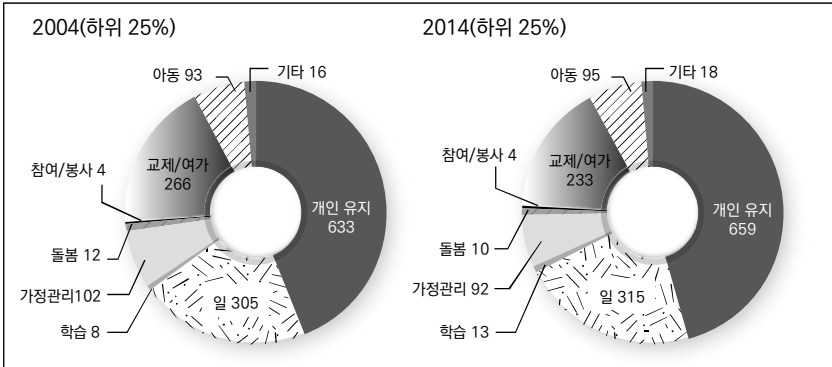
3) 음식 준비-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 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2004년 자료는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가 분류되어 있지 않음).

4) 상품 매장 쇼핑-2004년 자료는 시장 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학습 관련 물품 구입으로 행동이 분류되어 있음.

5) *.1,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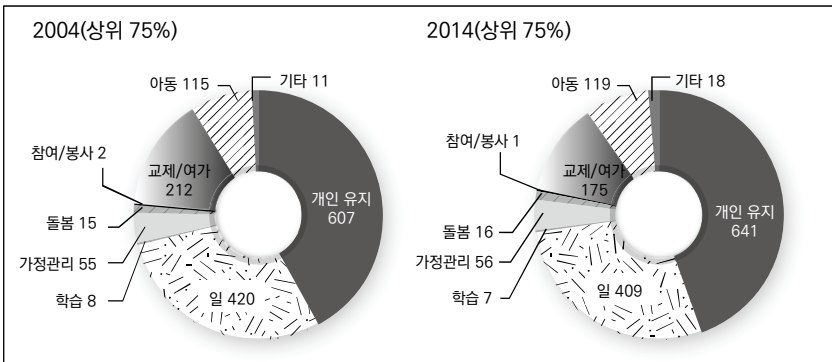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3] 저소득층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4] 기타 소득층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미취업자의 경우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개인유지시간과 가정관리시간이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습시간과 이동시간도 증가하였다. 반면 일시간과 교제·여가시간은 감소하였다. 개인유지시간 중에서는 건강관리시간이 감소하여 다른 시간의 증가가 더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가정관리 중에서는 음식 준비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취업자의 구성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노인인구 구성의

48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식을 피하고 교제 등 활동이 줄어드는 인구집단의 구성비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구 규모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계층별 미취업자 시간 소비의 변화

(단위: 분)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65	635	704	676
일***/**	20	8	12	8
학습***/**	22	44	51	70
가정 관리***/**	145	180	149	171
돌봄***/**	28	79	22	65
참여/봉사	9	9	5	5
교제/여가***/**	453	385	407	338
이동***/**	82	86	69	87
기타***/**	17	14	20	19
합계	1,440	1,440	1,440	1,440

주: 1) 만 19세 이상 미취업자의 주중 시간 소비.

2) **: .01,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 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표 2-6〉 미취업자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단위: 분)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65	635	704	676
개인 건강 관리***/**	24	10	20	9
개인 위생, 아미용***/**	61	58	69	70
가정 관리***/**	145	180	149	171
음식 준비***/**	74	91	79	84
상품 매장 쇼핑***/**	12	16	12	19
상품 온라인 쇼핑***/**	0	0	1	3

주: 1) 개인 건강 관리-자기 치료, 아파서 쉬, 의료서비스 받기.

2) 개인 위생, 아미용-개인 위생, 외모 관리, 아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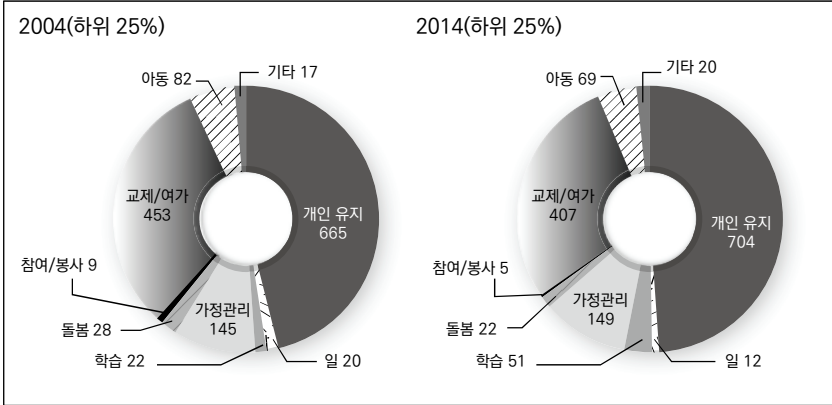
3) 음식 준비-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2004년 자료는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가 분류되어 있지 않음).

4) 상품 매장 쇼핑-2004년 자료는 시장 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학습 관련 물품 구입으로 행동이 분류되어 있음.

5) **: .01,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 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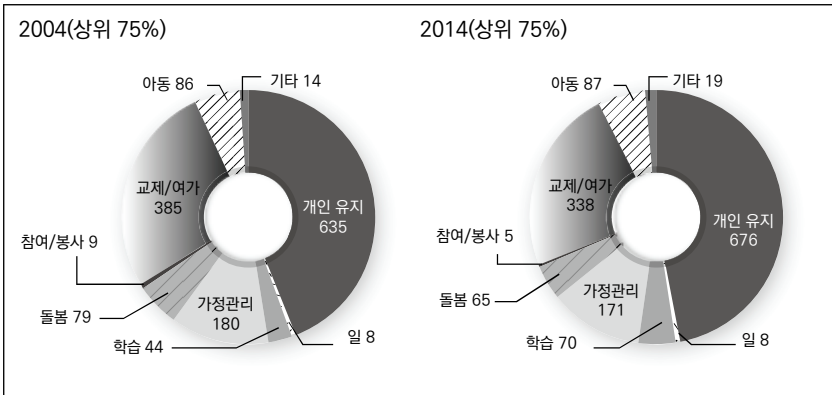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5]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6] 기타 소득층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65세 이상의 시간량 비교를 보면 위의 예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유지시간이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고 음식준비시간이 증가하였다. 한편 일시간은 증가하였지만 돌봄시간과 교제·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50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표 2-7〉 계층별 노인의 시간 소비의 변화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74	678	707	697
일***/**	94	152	83	109
학습/*	-	-	1	2
가정 관리***/**	140	111	142	122
돌봄***/**	11	17	7	10
참여/봉사***/**	6	2	4	4
교제/여가***/**	424	395	411	401
이동***/**	71	72	65	76
기타***/**	20	13	21	19
합계	1,440	1,440	1,440	1,440

주: 1) 만 65세 이상의 주중 시간 소비.

2) *.1,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표 2-8〉 노인의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 중 세분류 시간량

대분류	2004		2014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개인 유지/**	674	678	707	697
개인 건강 관리***/**	32	21	22	13
개인 위생, 이마용*/**	54	52	66	70
가정 관리***/**	140	111	142	122
음식 준비***/**	75	55	79	63
상품 매장 쇼핑***/**	8	6	9	9
상품 온라인 쇼핑	0	0	0	0

주: 1) 개인 건강 관리-자기 치료, 아파서 쉬, 의료서비스 받기.

2) 개인 위생, 이마용-개인 위생, 외모 관리, 이마용 관련 서비스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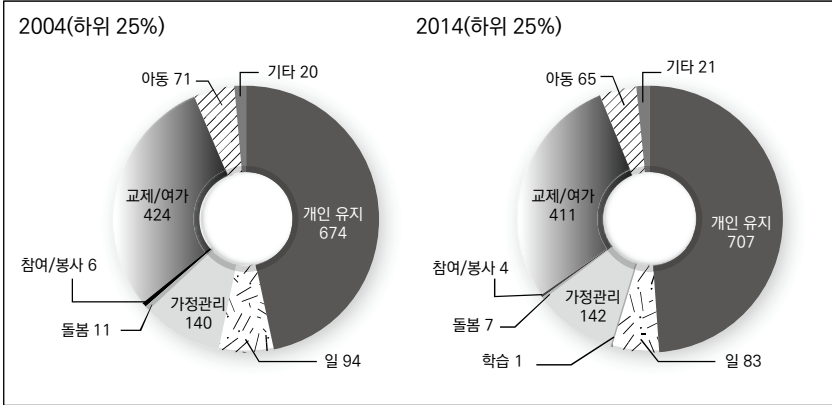
3) 음식 준비-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 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2004년 자료는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가 분류되어 있지 않음).

4) 상품 매장 쇼핑-2004년 자료는 시장 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학습 관련 물품 구입으로 행동이 분류되어 있음.

5) *.1,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의 앞부분은 2004년, 뒷부분은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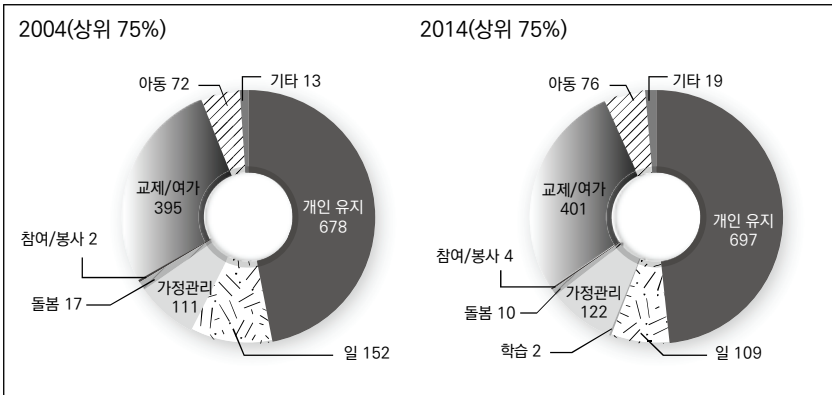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7]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그림 2-8] 기타 소득층 노인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제 3 장

해외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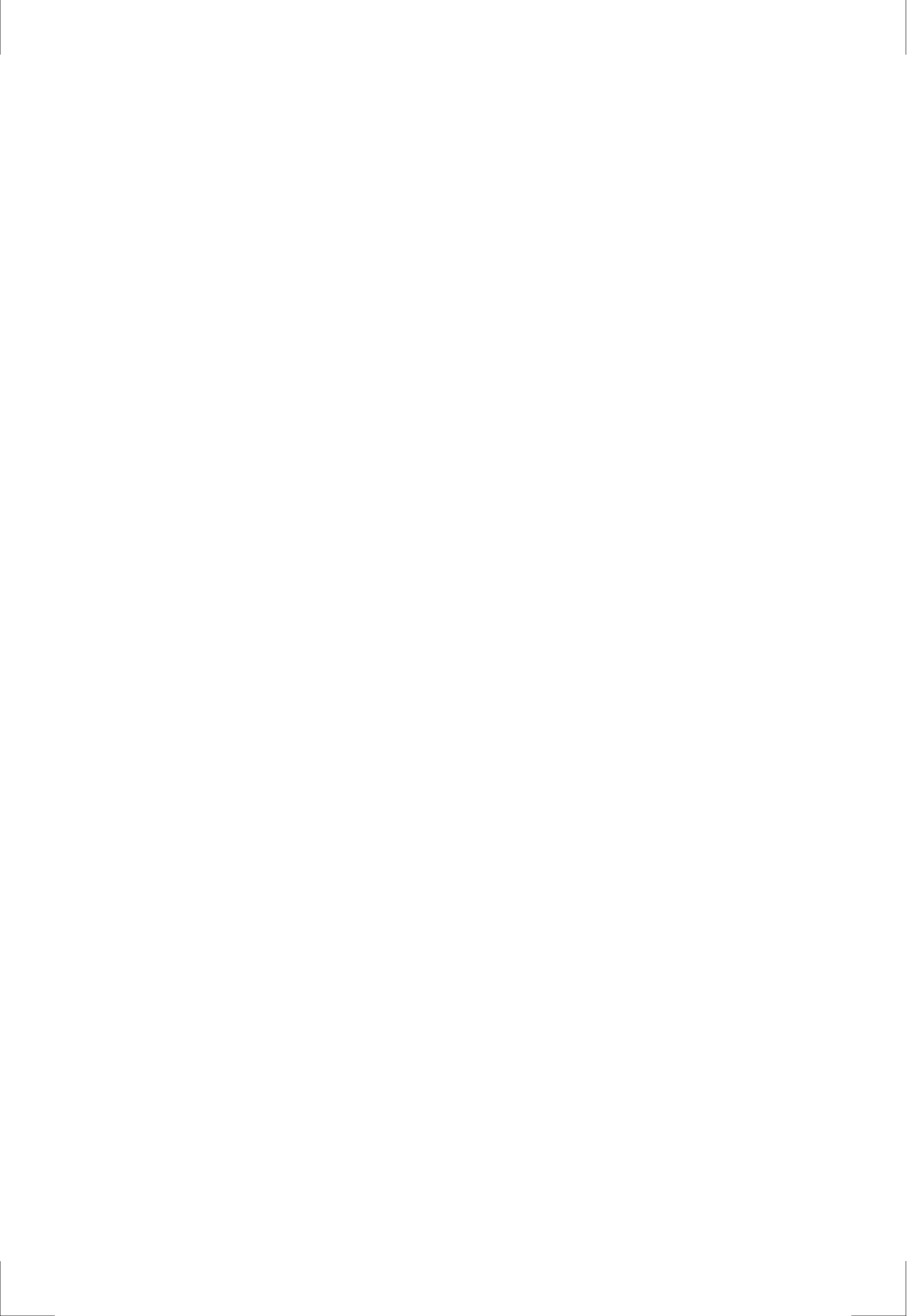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3

해외 저소득층의 << 생활시간 비교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이 장은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을 시작으로 매년 5년간 지금까지(2014년) 4회 실시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의 역사는 이미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Gershuny, 2000; Szalai & Converse, 1973). 영국의 경우 1961년 첫 전국적 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되었고, 미국은 1965년부터, 프랑스는 1966년, 캐나다는 1971년 등 여러 나라에서 시간조사 자료가 생성되었고 시간 소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져서 시간 사용을 이용한 삶의 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Vickery(1977)의 연구 이후에, 시간빈곤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연구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 중심의 불평등이나 빈곤 연구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시간 부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부족한 것이다. 소득 중심의 불평등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여부 및 경제활동 변화를 연구하고, 시장노동 정책을 기획하는 데에만 관심이 쏠렸다. 다른 이유는 생활시간 자료에서 정확한 소득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소득 자료는 실제 가구소득보다는 구간으로

파악된 가구소득에 한정된다. 그리고 실제 가구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각 가구의 시장소득의 합에 불과하다(Gershuny, 2000).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인 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장노동 등의 의무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다(Gershuny, 1993, 2000; Robinson, 1996). 이러한 상황에 대해 Gershuny는 선진국에서는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라고 해석하였다(Gershuny & Sullivan, 2012). 그렇기 때문에, 시장노동시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raig & Mullan, 2010; Moen, 2010).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는 저소득층에도 해당이 될까?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 낮은 고용 단절,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제시한다(이병희 등, 2010; 노대명 등, 2009). 그러나 반대로 많은 근로빈곤자들 중 적은 시간당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근로시간 양의 선택조차 없을 수 있다.

상위계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돌봄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만약 장시간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일 경우, 하루 24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생활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에 할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여가시간 사용 역시 다른 계층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저소득층의 여가시간은 다른 계층과는 다를까? 계층별로 남녀의 가사노동의 시간과 돌봄노동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선행된 국가 비교 연구(Gershuny, 1993, 2000; Robinson, 1996)에 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시간 사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의 연구는 비슷한 경제수준 및 문화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 특히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비교 대상 범위를 경제적·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했을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차이가 관찰되고, 특히 소득집단별로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국가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가별 다른 복지정책들의 차이가 이런 시간 사용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탐색하며,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이용하여 6개의 국가를 선정(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하여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성별과 균등화된 가구소득(equivalized household income),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차이에 대해 구분하여, 국가별 시간 사용 변화 추이에 대해 차이를 파악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지금까지의 시간 사용 패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시간 사용 패턴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가 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주제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시간의 패턴이다(Gershuny, 2000; Robinson & Godbey, 1997). Gershuny(2000)와 Robinson(1996)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비교 연구에서 시장노동과 여가시간이 비슷한 패턴으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감소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Sullivan과 Gershuny(2001)는 시간 사용 패턴에서 더 나아가, 계층의 차이라던가 젠더 간의 시간 사용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들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960년대부터 1990년 사이에 수집된 시간 사용 데이터를 통하여 6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런 결론은 복지의 형태가 비슷하고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복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시장노동과 여가시간,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국가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최근에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Esping-Anderson, 2009). 예를 들면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의 비교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낮은 스웨덴보다는 여성 시간제 고용이 높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Counsins & Tang, 2004).

개인의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균형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균형은 가족 내에서의 젠더 문제와 연관이 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이것을 통하여, Pfau-Effinger(2008)는 가족모델과 복지제도의 상호작용으로 남성 홀벌이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맞벌이와 부부가 돌봄 제공 모델 혹은 맞벌이와 외부 돌봄 제공 모델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런 모델이 일관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나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함께 변화해 온 것으로 제안한다.

Craig(2007)도 비슷한 형태로 가족 역할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준을 활용하였는데, 여성의 시간 활용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다. 북유럽 스타

일로 맞벌이 선호와 정책 지원형, 독일형으로 남성 주부양자 선호와 정책 지원형, 이탈리아형으로 남성 주부양자와 시장 지원형, 그리고 미국과 호주형으로 맞벌이 선호와 시장 지원형으로 나뉜다. 이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큼 우선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Korpi, 2000). 예를 들면, 이전의 한국은 이탈리아형으로서, 남성이 주부양자로서 존재하고, 여성은 시장노동에서 부차적인 존재이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과 강도가 훨씬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형태이다.

북유럽형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 불리며,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가장 강하며,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다(Esping-Anderson, 1990). 여성의 취업률도 높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전일제 근무가 권장되는 형태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성의 전일제 근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의 무료 공보육을 장려해 왔고, 이런 보육 혜택은 근로 기혼여성에게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북유럽형의 경우, 남녀의 시장노동은 유지하면서, 남녀 각자가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Craig, 2007).

Esping-Anderson(1990)에 따르면 독일형과 이탈리아형은 모두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속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다.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국가는 가족의 특성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독일형은 노동시장에서의 단시간 정책을 남녀 모두에게 강조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가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탈리아형은 독일형과 비슷하지만, 여성의 가사노동을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이 도맡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기에,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Hochschild, 1997).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속하는 장시간 시장경제 노동 패턴은 유지하되, 국가에서 주관하는 복지정책을 대신하여 개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여 대체재 및 소비재를 구입하여 해결하는 모형이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기준이 엄격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척 제한되어 있다. 즉 Esping-Anderson(1990)에 따르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라 불리며, 긴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에 할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심한 시간 압박을 경험하게 되었다(Craig, 2007).

복지국가 형태에 따라 시장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시간 사용은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여가시간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선행 연구는 보여주었다(Gershuny & Sullivan, 2012). 그러나 여가 시간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passive)인 여가시간이라 여기는 TV 시청하는 시간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일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노동시간을 해외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차승은 등(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해외 연구들과 비슷하게 북유럽 국가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 기혼여성의 경우 유급과 무급노동 시간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시간 사용 차이가 큰데, 취업여성은 유급노동 우선성이 강하고 미취업여성은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더 심각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이 장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국적시간연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시간연구소(Center for Time Use Research, CTUR)가 1960년대부터 수집한 각국의 생활시간 자료 조사를,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하여 통합된 코드를 통해 표준화하였다. 현재 30개가 넘는 국가와 90개가 넘는 시간 조사 자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각 나라의 생활시간 조사의 행동분류표는 69개의 통합된 코드로 재분류하고, 각 변수들은 표준화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90개가 넘는 시간 조사 데이터 가운데에서, 현재 한국 생활시간 조사는 2014년 분석이 가능하므로, 분석 시기가 비슷한 데이터와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 국가들 중 최종적으로 6개의 국가(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남성과 여성(19세-64세)이 작성한 6만 4811개의 시간일지 자료를 추출하였다(〈표 3-1〉 참조). 복지국가 유형은 앞서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그리고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구성하였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독일형과 이탈리아형 중에, 독일형에 해당하는 최신 독일 데이터는 MTUS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2009년 데이터로 대체하고, 이탈리아형은 스페인의 2009년 데이터로 대체한다. 북유럽형(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형)은 핀란드의 2009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는 캐나다의 2010년 데이터, 미국의 2014년 데이터, 그리고 영국의 2014·2015년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가별로 인구 구성, 인구 특성의 차이, 요일별, 계절별 편차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해 분석에는 MTUS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표 3-1〉 분석 대상 국가와 분석 시기

	국가	조사 연도	샘플 크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핀란드	2009	5,115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캐나다	2010	9,134
	영국	2014/2015	10,706
	미국	2014	8,525
보수주의 복지국가	프랑스	2009/2010	20,464
	스페인	2009	10,867

주: 19세에서 64세까지 응답자로부터 분석 표본을 구성.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2. 변수 구성 방법

이 장에서 사용된 가구소득 기준은 국가의 균등화된 소득(equalized household income)을 사용하여, 저소득층(25%), 중간소득(50%), 고소득층(25%)으로 나누고, 저소득층의 하루 24시간 동안 시간 사용 방식이 중간소득과 고소득층에 대비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단, 프랑스는 저소득층(20%), 중간소득(60%), 그리고 고소득층(20%)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분석은 소득계층별, 성별, 그리고 요일별(주말과 주중)로 나누어 하였다.

생활시간은 크게 시장노동시간(노동시간과 통근시간으로 세부 분류), 돌봄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3-2〉 참조). 시장노동시간은 출근시간과 통근시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돌봄노동은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의 세부 행위와 돌봄행위와 관련된 이동시간도 포함하였고, 가사노동은 MTUS에 기재된 가정 관리 항목에

포함된 세부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가정 관리와 관련한 이동시간도 포함하였다. 가사노동은 청소 및 정리, 차량 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기타 가정 관리를 포함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홀로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분석하였다.

〈표 3-2〉 분석에 활용된 생활시간 변수의 구성

카테고리		행동분류
시장노동시간	시장노동	직장에서의 일, 휴식, 재택근무, 일 관련 이동시간
	출퇴근시간	통근시간
돌봄노동		신체적 아이 돌보기, 가르치기, 직접적 감독하기
가사노동		집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 가사활동, 가정 관리
여가시간		휴식, 취미, 스포츠, 야외활동, 읽기, TV와 라디오, 정원 가꾸기 등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제4절 분석 결과

1. 노동시간과 통근시간

노동시장시간과 관련된 행동은 자영업이나 고용된 일과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구분 없이, 노동시장에 쓴 시간과 출퇴근에 사용한 시간을 계층별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표 3-3〉 참조). 편의를 위하여, 노동시장과 통근시간은 주중에 사용한 시간만을 포함시켰다. 나이 또한 19세에서 64세로 제한하였다. 국가별로 남녀 모두 저소득층의 시장노동시간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스페인과 영국에서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는 두 배가 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저소득층의 시장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고소득층의 반이다.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역시 영국과 스페인에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형태를 따르는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서, 영국의 시장노동시간은 계층에 상관없이 더 적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국의 저소득층이고, 그들의 시장노동시간은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1시간 30분 이상 적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형태를 따르는 핀란드는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대략 1.5배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른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작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핀란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표 3-3〉 계층과 성별로 나눈 노동시장과 통근시간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남성							
시장 노동	저소득층	202	250	160	231	204	133
	중간소득층	310	366	349	379	311	338
	고소득층	357	391	346	420	371	339
통근 시간	저소득층	14	31	21	19	24	19
	중간소득층	28	41	39	34	42	39
	고소득층	30	48	44	37	54	39
여성							
시장 노동	저소득층	152	195	87	146	133	87
	중간소득층	257	262	229	281	214	183
	고소득층	283	305	248	314	275	261
통근 시간	저소득층	14	19	13	12	20	13
	중간소득층	25	26	24	22	29	24
	고소득층	30	31	28	26	34	32

주: 나이는 19-64세로 제한, 주중.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표 3-4〉 시장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상대적 비율

(단위: %)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남성	저소득층	7	12	13	8	12	14
	중간소득층	9	11	11	9	13	11
	고소득층	8	12	13	9	14	12
여성	저소득층	9	10	14	8	15	15
	중간소득층	10	10	11	8	13	13
	고소득층	11	10	11	8	13	12

주: 나이는 19-64세로 제한, 주중.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시장노동시간과 비교했을 때의 통근시간의 상대적 비율 차이는 프랑스가 가장 컸다. 12%에서 14%의 차이로 이를 따르는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서, 영국의 시장노동시간은 계층에 상관없이 더 적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국의 저소득층이고, 그들의 시장노동시간은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1시간 30분 이상 짧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형태를 따르는 핀란드는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대략 1.5배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른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작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핀란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시장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결과는 보여진다. 그러나 통근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다른 계층과 비교해서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이 시장노동의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5〉 계층별 남녀의 고용 형태 분포

(단위: %)

		남성			여성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핀란드	상용	25.90	45.31	61.09	21.97	47.01	60.30
	임시	3.83	2.54	2.88	6.82	6.73	8.64
	취업(시간 모름)	3.93	6.54	9.28	2.70	3.08	4.16
	비취업	66.34	45.61	26.76	68.52	43.18	26.89
캐나다	상용	34.65	60.86	72.26	26.00	50.30	61.89
	임시	6.93	6.27	5.80	10.63	11.91	10.72
	취업(시간 모름)	13.07	6.00	4.18	10.63	6.12	4.96
	비취업	45.35	26.87	17.77	52.74	31.67	22.44
영국	상용	16.88	50.09	55.15	6.77	28.31	34.39
	임시	6.81	5.92	6.25	15.88	20.52	18.12
	취업(시간 모름)	18.94	12.12	9.92	13.38	11.93	8.39
	비취업	57.38	31.87	28.68	63.96	39.24	39.09
미국	상용	31.89	57.94	76.17	18.89	41.84	53.66
	임시	8.68	6.65	5.44	11.73	11.63	12.08
	취업(시간 모름)	3.54	3.63	2.97	3.30	3.52	3.17
	비취업	55.89	31.78	15.42	66.08	43.01	31.09
프랑스	상용	21.33	43.89	59.87	13.01	33.42	50.41
	임시	3.96	3.55	3.41	8.87	14.39	14.31
	취업(시간 모름)	0.55	0.99	2.54	0.32	0.25	0.82
	비취업	74.16	51.57	34.17	77.80	51.94	34.46
스페인	상용	17.20	52.18	56.02	9.67	27.65	46.84
	임시	1.93	1.54	2.27	6.26	8.58	5.06
	취업(시간 모름)	0.96	1.03	1.53	0.44	0.73	0.70
	비취업	79.90	45.26	40.18	83.63	63.04	47.40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계층별로 남성과 여성의 고용 형태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표 3-5〉를 살펴보면, 일단 남성 중 상대적으로 임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국이다. 저소득층 남성은 15.88%가 임시직에 종사하며, 20.52%의 중간소득, 그리고 18.12%의 고소득층이 임시직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의 10%라는 임시직 비중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스페인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의 6.26%가 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중으로, 고소득층 5.06%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프랑스 남성의 경우 14.31%의 고소득층이 임시직에 고용된 반면에 8.87%의 저소득층이 임시직에 고용되어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 것은 비취업자의 비중이다. 스페인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큰데, 저소득층 남성의 79.90%가 비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고소득층 남성의 40.18%가 비취업자임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스페인의 저소득층 여성의 83.63%가 비취업자였으며, 고소득층 여성은 47.40%가 비취업자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45%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층의 경우 20% 정도가 비취업자였다.

〈표 3-6〉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남성								
시장 노동	상용	저소득층	402	424	413	436	387	476
		중간소득층	385	443	423	475	399	485
		고소득층	416	448	415	498	409	445
통근 시간	임시	저소득층	148	125	204	274	228	154
		중간소득층	201	157	274	224	266	311
		고소득층	90	157	232	224	294	260
여성								
시장 노동	상용	저소득층	315	387	313	426	358	439
		중간소득층	335	381	365	436	344	401
		고소득층	341	398	364	445	354	398
통근 시간	임시	저소득층	133	147	177	235	188	184
		중간소득층	211	175	213	243	231	236
		고소득층	163	175	232	214	258	251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별(상용직과 임시직)로 유급노동시간을 시장노동시간과 통근시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표 3-6〉 참조). 저소득층 상용직 남성의 경우 짧은 노동시간을 대표하는 보수주의 자유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400분 이상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사용하였다. 6개의 국가 중 스페인을 제외한 5개 국가의 저소득층 상용직 남성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짧은 시장노동시간을 보여주었는데, 그 차이는 2분에서 60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상용직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노동시장시간은 60분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에, 스페인의 상용직 남성 노동자들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짧은 시장노동시간을 소비하였다(476분(저소득층) 대 445분(고소득층)).

남성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22%에서 72%의 시장노동시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저소득층 남성 임시직의 경우 남성 상용직의 63%에 해당하는 274분으로 남성 임시직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시장노동에 사용하였다. 다른 계층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남성 상용직 근무자들은 시장노동시간이 소득과 비례하였으나, 임시직일 경우 소득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성 상용직일 경우에 스페인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이 높아지거나(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비슷한 수준이다(캐나다). 스페인의 경우 여성 상용직 노동자의 시장노동시간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여성 중 상용직 근무자들 중에서 스페인의 상용직 여성이 가장 긴 시장노동시간(439분)과 통근시간(54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듯이, 저소득층 남성의 상용직 근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6개 국가들 중 가장 긴 시장노동시간(476분)과 통근시간(56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스페인의 "Siesta"라고 하는 특수

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후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시장노동자들의 일상은 오전 8시 반 정도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대략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임시직 남성의 경우, 핀란드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과 통근시간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와 캐나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임시직 남성의 통근시간이 상용직의 통근시간에 비해 월등히 짧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남성과 상용직 남성의 통근시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스페인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저소득층 스페인의 임시직 여성은 40분을 통근하는 데 사용하였고, 상용직 여성은 54분을 사용하였으며, 이 시간은 6개의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사노동

다음으로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 활용 양상을 계층별 그리고 성별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앞에서 시장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점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사노동을 살펴보면,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 차이점이 보인다(〈표 3-7〉 참조). 우선, 계층별 가사노동의 차이는 주중과 주말의 패턴에 차이가 있다. 핀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중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차이가 많은 영국의 예를 들면,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주중에 114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반면에 고소득층 남성은 74분을 사용하였다. 영국의 저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207분을 가사노동에 쓴 반면에, 고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150분을 사용하였다. 이런 결과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이 직접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주말에는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 이런 현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남성이 주중에 가사노동에 쓴 시간은 99분이었으나, 주말의 경우 평균적으로 133분을 사용하였다. 미국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주말에 231분이라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 여성은 174분을 사용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고소득층은 주중에 적게 가사노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주말에 더 높은 비중의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주중에는 시장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투입할 시간이 적을 수 있는 반면에, 주말에는 주중에 하지 못했던 가사노동에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7〉 계층과 성별, 주중과 주말로 나눈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주중								
가사 노동	남성	저소득층	118	97	114	99	112	89
		중간소득층	105	96	79	100	101	66
		고소득층	95	88	74	75	85	78
	여성	저소득층	159	158	207	169	182	262
		중간소득층	151	151	164	158	182	210
		고소득층	144	139	150	156	160	175
주말								
가사 노동	남성	저소득층	104	144	110	133	112	85
		중간소득층	136	155	115	157	132	87
		고소득층	147	168	118	191	140	99
	여성	저소득층	169	193	199	174	182	226
		중간소득층	188	211	178	213	202	199
		고소득층	196	222	190	231	209	187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이탈리아형을 대신했던 스페인에서, 앞서 말했듯이, 남성이 주부양자로 존재하고, 여성은 가사노동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보수적인 복지 국가의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스페인이었다. 주중과 주말 모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더 높고,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 남성의 경우 계층별로나 주중/주말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은 주중에 262분이라는, 조사된 6개의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스페인 남성의 시간에 3배 정도 된다. 스페인 저소득층 여성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226분이라는, 주말에 사용한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다. 그에 반해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주말에는 캐나다 저소득층 남성에게 비해 반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가사노동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다. 비슷한 패턴이 영국에서도 관찰되는데, 저소득층 여성과 남성 모두 주말에 비해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사노동시간이 주중에 여성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50분 이상 높이가 나타났다.

〈표 3-8〉 고용 형태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주중								
남성	상용	저소득층	85	79	76	69	77	43
		중간소득층	90	78	74	84	77	46
		고소득층	86	76	66	65	74	65
	임시	저소득층	100	84	109	71	105	122
		중간소득층	129	96	93	141	108	43
		고소득층	55	87	96	131	109	70
여성	상용	저소득층	131	114	128	124	112	129
		중간소득층	131	120	123	110	134	142
		고소득층	130	110	109	108	127	127
	임시	저소득층	120	151	189	118	167	234
		중간소득층	141	143	177	159	177	198
		고소득층	157	170	172	183	174	187
주말								
남성	상용	저소득층	108	165	93	157	107	83
		중간소득층	145	156	119	167	131	87
		고소득층	145	173	125	205	150	98
	임시	저소득층	66	93	84	141	102	31
		중간소득층	128	105	111	105	119	69
		고소득층	103	91	98	145	156	74
여성	상용	저소득층	160	192	180	172	172	147
		중간소득층	188	214	171	217	194	186
		고소득층	197	224	180	245	207	173
	임시	저소득층	129	151	188	125	168	229
		중간소득층	162	163	187	181	204	173
		고소득층	153	169	209	181	218	223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취업자만을 고려할 때, 계층별 가사노동시간이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까? 상용직은 임시직에 비해 시장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말일 경우, 이런 차이는 사라질 수 있으며, 계층별로도 그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표 3-8>은 고용 형태별로 성별, 계층별, 그리고 주중과 주말로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여준다. 상용직 남성의 경우, 계층별로 주중에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페인의 남성 상용직의 경우만 예외로 주중에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고소득층일수록 길게 나타났다.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상용직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는 달리 임시직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경우 저소득층 임시직 남성은 주중에 평균 100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고소득층 임시직 남성은 주중에 55분 정도만 가사노동에 할애한다. 이런 차이는 스페인의 임시직 남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의 저소득층 임시직 남성은 122분을 할애하였고, 중간소득층은 43분, 그리고 고소득층은 70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반대로 중간소득 임시직 남성이 가장 많은 시간(141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시간(7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였다.

상용직 여성의 경우도 상용직 남성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시직 여성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시간이 가사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스페인의 임시직 여성의 경우, 주중에 사용하는 가사노동시간(234분)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고소득층이 가장 낮게(187분) 나타났다.

주말에는 상용직과 임시직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말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주말에는 더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 모두, 주말에 또한 계층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분배는 어떻게 될까? 이를 위해 앞에서 보였던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 <표 3-9>는 시장노동시간 대비 가사노동시간이다. 소득계층과 국가에 상관없이 남성은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시장노동시간을 사용한다. 이는 저소득층 남성에게 비해, 고소득층 남성일수록 시장노동시간 비율 대비 가사노동시간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일상생활의 우선성은 시장노동시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 여성은 핀란드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노동시간 대비 가사노동 비율을 보여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사노동보다는 시장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국과 스페인은 시장노동시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다. 이는 스페인의 보수적인 복지국가 형태와 잘 맞아떨어지지만, 영국은 예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표 3-9> 시장노동 대비 가사노동시간 비율

(단위: %)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남성	저소득층	55	34	63	40	49	59
	중간소득	31	24	20	24	29	18
	고소득층	24	20	19	16	20	21
여성	저소득층	96	74	207	107	119	262
	중간소득	54	53	65	52	75	101
	고소득층	46	42	54	46	52	60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3. 여가시간

소득계층별 여가시간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계층별로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 남성의 경우 6개국 모두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여가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높았으며, 이는 주중과 주말에 전부 해당된다(〈표 3-10〉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더 많은 시간을 여가 사용에 할애하였다. 주중과 주말에 상관 없이 저소득층 여성과 고소득층 여성의 여가시간 사용의 차이는 대략 20분 정도인데, 프랑스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80분 이상으로 가장 컸다. 프랑스 저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261분을 여가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고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180분만을 여가에 사용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 통틀어 가장 적은 여가시간이었다.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여가시간 차이는 여성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주중에 남성은 345분을 여가에 사용하였는데, 고소득층 남성은 251분을 사용하였고, 이는 거의 100분이 적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주중일 경우 저소득층은 긴 시장노동시간에 쫓기면서, 시장노동에 전념하는 경우,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표 3-3〉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저소득층일 경우 고소득층과의 시장노동시간의 격차가 컸다. 즉 저소득층일 경우 더 적은 시간을 시장노동시간에 할애하였으며, 고소득층일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시간에 할애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장노동시간으로 인해, 비록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계층에 비해 조금 길 수는 있지만, 다른 계층의 시장노동시간만큼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고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주말의 경우 주중의 여가시간보다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00분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저소득층 남성은 주말에 331분을 여가에 사용한 것에 비해, 주말에는 100분 이상이 더 높은 439분을 여가에 사용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그 차이는 120분 이상이였으며, 저소득층 남성은 주중에 327분을 여가에 사용하였고, 주말에는 435분을 사용하였다. 이런 패턴은 여성에도 해당하는데, 핀란드의 저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284분을 여가시간에 사용하였고, 주말에는 372분을 사용하였다.

〈표 3-10〉 계층과 성별, 주중과 주말로 나눈 여가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주중								
여가 시간	남성	저소득층	331	327	338	351	296	345
		중간소득층	274	246	242	255	230	242
		고소득층	251	241	229	263	191	251
	여성	저소득층	284	272	281	274	261	244
		중간소득층	245	244	226	237	211	206
		고소득층	249	236	216	215	180	218
주말								
여가 시간	남성	저소득층	439	435	394	416	390	414
		중간소득층	398	415	370	412	363	384
		고소득층	384	404	357	370	330	407
	여성	저소득층	372	354	315	356	325	322
		중간소득층	344	364	314	335	294	313
		고소득층	358	353	309	319	275	349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그렇다면, 여가시간을 고용 형태별로 알아보자. 상용직의 경우 긴 시장 노동시간으로 인해 임시직에 비교하여 여가시간이 낮을 수 있고,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안정화되지 않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긴 통근시간으로 인

해, 여가시간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주중에는 남성과 여성 임시직 종사자들이 상용자들에 비해 긴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상용직 남성의 경우,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우 상용직 남성은 주중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다. 임시직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소득과 여가시간이 반비례함을 보여주지만, 다른 나라의 임시직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프랑스만이 상용직과 임시직에 상관없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은 여가시간을 나타냈다. 계층, 성별, 그리고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중에 비해 주말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뚜렷한 여가시간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11〉 고용 형태별 여가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주중								
남성	상용	저소득층	233	224	199	218	209	179
		중간소득층	240	216	211	208	192	179
		고소득층	230	217	205	214	177	202
	임시	저소득층	282	339	289	311	270	345
		중간소득층	370	302	289	266	240	255
		고소득층	329	379	280	350	242	254
여성	상용	저소득층	217	190	190	151	183	139
		중간소득층	216	205	190	187	173	145
		고소득층	239	211	190	173	158	174
	임시	저소득층	289	258	254	278	236	200
		중간소득층	247	256	233	233	188	179
		고소득층	260	232	218	254	169	204
주말								
남성	상용	저소득층	395	397	332	325	383	330
		중간소득층	371	396	361	381	356	353
		고소득층	377	396	349	362	321	382
	임시	저소득층	428	412	353	371	361	357
		중간소득층	469	512	355	423	328	327
		고소득층	460	430	355	392	337	429
여성	상용	저소득층	346	309	235	328	298	237
		중간소득층	331	355	311	333	278	290
		고소득층	359	349	316	316	267	334
	임시	저소득층	357	336	312	331	314	274
		중간소득층	356	378	299	309	272	292
		고소득층	353	355	292	262	263	296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4. 혼자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국가별로 생활시간조사는 시간대별로 함께한 사람을 작성하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함께한 사람은 혼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에서의 함께 있는 시간은 외국의 생활시간조사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인 경우 함께한 시간은 조사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함께 있는 시간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정의는 다소 협소하여,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같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해외의 생활시간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함께 있는 시간으로 이해된다. 즉 같은 집 안에서 자녀는 책을 보고, 엄마는 요리를 할 경우에, 엄마가 시간 사용 응답 대상자일 경우, 함께한 사람에 자녀라고 기입하게 된다.

우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요일별, 성별, 그리고 계층별로 알아보았다(〈표 3-12〉 참조). 다른 나라에 비해, 캐나다의 혼자 있는 시간이 주중과 주말 둘 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1440일 경우 반 이상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스페인의 3배가 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가장 낮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스페인의 가족적인 사회 분위기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12〉 혼자 있는 시간

(단위: 분)

		핀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남성	저소득층	464	394	951	858	532	480	327	302	505	439	329	252
	중간소득층	407	312	885	831	442	396	354	309	413	335	326	240
	고소득층	469	323	902	856	438	384	357	307	409	300	332	268
여성	저소득층	395	331	880	844	442	396	287	234	473	393	353	252
	중간소득층	344	276	856	810	381	332	310	252	393	319	322	237
	고소득층	389	293	879	839	384	335	322	234	374	291	327	248

자료: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제5절 정책적 함의

이 장은 해외 주요국 일부 국가의 계층별 시간 사용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현재 한국의 저소득층의 시간 소비의 특성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본문에서 분석의 주요 주제로 삼은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 6개국의 다른 국가 형태별 국민들의 시간 사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정책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MTUS 자료 중 6개국의 근접 시점의 자료를 선택하였다. 6개국의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계층의 시장노동시간이 역시 길었다. 이 현상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형태의 복지국가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스페인의 계층별 노동시간의 격차가 컸다. 저소득계층 중 임시직 비중이 높은 영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유급노동시간의 길이는 해당 소득계층의 고용 현황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고소득층의 임시직 비중이 높아서 소득계층별 시장노동시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에서 계층별 시간 소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 저소득층의 경우 계층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더 많은 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을 소비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에서도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대비 유급노동시간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남성은 계층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유급노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같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와 캐나다의 저소득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서 문화적 요인과 사회서비스의 공급 기반이 양호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사노동 참여 확대와 같은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히 정책과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이 강한 사민주의적 국가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작다.

통근시간은 공히 고소득층일수록 길었다. 다만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소득계층별 통근시간의 차이가 작았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비교 국가들보다 주거비가 저렴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비는 해당 국가의 주거정책, 즉 주거비 지원이나 공공주택의 공급과 저렴한 주거의 양 등이 모두 결합된 상황을 의미한다. 여가시간은 대개 유급노동시간의 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저소득층 남녀 모두 미국과 스페인에서 적었다. 스페인의 경우 가족주의적 문화가 아직 강한 사회여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

러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위해 별도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국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은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정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 보수주의적 문화, 사회서비스 발달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시간도 노동시장 구조와 저소득층의 고용 상태, 가사노동 등 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같은 문화적 특징, 보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정책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 등 사회 구성원의 구성이나 그 변화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은 줄고 돌봄시간, 간병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보수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을 경우 남녀의 무급노동시간·돌봄시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유급노동과 자녀 돌봄노동시간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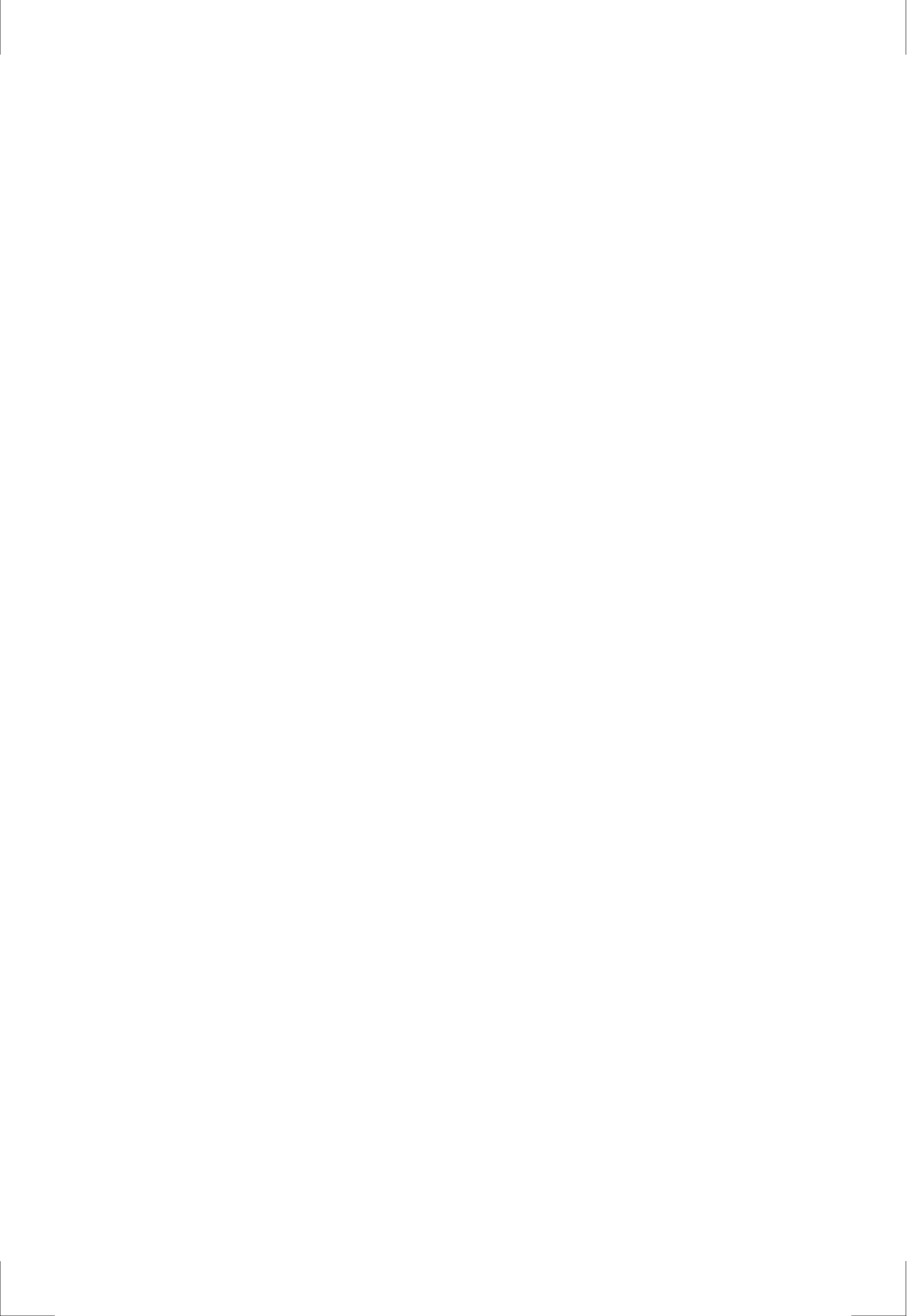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4

유급노동과 << 자녀 돌봄노동시간의 부담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한된 시간이라는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의 접근성과 성과일 것이다. 누구나 동일하게 가진 시간자원이지만, 노동시장 접근성과 성과로 결정된 소득이 주어지며, 가구와 개인은 이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나름대로 활용한다. 본 장은 유자녀 양부모 가구에서 이러한 소득의 제약으로 인한 시간자원 배분의 계층별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유자녀 양부모 가구는 돌봄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녀의 존재로 인해 소득만으로 기본적인 필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후기 산업사회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영역에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증가시켰고,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유급 돌봄노동과 자녀 양육 양립의 어려움 경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기회와 성과로 인해 경험하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는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과는 다른 시간의 문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 부모는 가사나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느라 자녀를 돌볼 시간을 희생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여가를 줄일 수 있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자원 부족으로 돌봄노동에 할애할 시간이 없고 그 불이익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양부모 가구의 취업자 수는 유급노동시간 이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자원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보다 소득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서 가사 및 돌봄노동 수행을 큰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맞벌이 가구에 한정하여 가구 내 취업자가 두 명일 때 일·가정 양립의 갈등과 시간빈곤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본 장에서는 양부모 유자녀 가구의 맞벌이와 홀벌이 등 가구 형태별로 소득계층별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유자녀 양부모 가구의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가구경제의 추가 취업자의 필요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홀벌이 가구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 부담이 더해지며 여가시간의 박탈과 심리·육체적 스트레스와 질병을 갖게 되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라기보다는 시장 구매 대체재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권순범, 진미정, 2016; 김미영, 박미려, 2017; 김양지영, 2015; 박예은, 윤미, 이예술, 이효진, 정익중, 2016; 배호중, 2015; 손문금, 2011; 안미영, 2016; 이승호, 박미진, 2017; 홍승아, 김정미, 2011; 은기수, 2009).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사회경제 및 연구의 관심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노동 부담의 가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유자녀 양부모 가구의 시간 사용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논문은 극히 드물다.

맞벌이 가구의 유급노동 부담으로 인한 부부간 가사노동 갈등은 홀벌

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표적 연구로 배호중(2015)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평일 홀벌이 가구 남편은 26.4분, 맞벌이 가구 남편은 29.9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에 미미하게나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우자의 시장노동 부담 증가에 필적할 만한 정도의 시간 투입은 아닌 것이다.

친인척의 도움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완화된다는 점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양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 찾기는 어렵다. 김양지영(2015)은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전일제 취업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와 장시간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조부모 지원 없이 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장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전일제 취업 부부에게서 조부모 활용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김진욱, 고은주(2014)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배 상황을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저소득층 부모가 다른 계층보다 자녀 돌봄에 시간을 더 쓰고 있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 부모는 고소득층 부모에 비해 자녀 돌봄시간이 42분 짧았고 59%에 지나지 않아 소득만이 아니라 자녀 돌봄시간에서의 불평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자녀 가구가 시간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소득 차원에서 빈곤한 가구가 동시에 시간 차원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유자녀 가구일수록 동시 빈곤 가능성이 높아진다(노혜진, 김교성, 2010; 오혜은, 2017). 김미영, 박미려(2017)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면서 시간빈곤 수준을 진단하고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노동패널의 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유급노동, 출퇴근시간, 보육과 가사 관련 시간을 제외한 개인유지시간이 중위값보다 적은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빈곤 집단보다 시간 비빈곤 집단의 생활만족도로 측정한 삶의 질 수준이 더 높았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자녀 돌봄시간을 정의함에 있어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행동분류 기준만을 참고하여 자녀 돌봄의 다양한 시간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소영, 진미정(2016)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돌봄시간을 분석하고 있는데, ‘가족 보살피기’ 행동에 속해 있는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또는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만을 돌봄시간으로 정의하고 분석했다. 그들은 이러한 돌봄시간 정의에 기반하여 보육예산이 급증한 2004년과 2014년 사이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집중적인 부모 역할 이데올로기의 강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은주, 김진욱(2016)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의 계층 특성이 영유아 자녀 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유형을 분석하면서 소득계층별 특성에 주목했다. 가사노동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가 가진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르므로 그들이 자녀에 대해 가지는 교육적 열망의 실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행동분류를 기반으로 자녀 돌봄시간의 속성별로 2가지로 구분했다. 상호작용은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놀아주기, 숙제 도와주기’ 등 놀이 및 학습의 특성을 지닌 자녀 돌봄이며, 기본적인 돌봄은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로 나누었다. 이 2가지의 상대적 집중성에 따라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0-2세 자녀를 둔 집단에서 고소득층

부모는 상호작용적 돌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웠다.

2009년부터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행동별 시간 사용의 길이라는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시간 사용을 누구와 함께했는지 질적 측면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손문금(2011)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분배 실태를 분석하였다. 홑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이 짧았는데, 부부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부부가 무급노동이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부부간 여가활동 공유 시간을 감소시켰다.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활동도 미디어 이용이라는 수동적인 여가활동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부담이 부부가 함께하는 공유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 변수를 활용하여 돌봄노동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단순한 시간량의 차이만으로 소득계층 간의 유급노동시간과 돌봄노동 실태를 드러내는 것은 저소득층 양부모 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 차원의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제3절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본 장에서는 돌봄 욕구가 있는 10세 미만 자녀를 둔 양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유급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실태를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유급노동시간의 양적, 질

적 특성을 분석했다. 양부모 가구에서 저소득층은 맞벌이보다는 홀벌이일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홀벌이 형태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저소득층 부모는 다른 계층과 다른 유급노동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저소득층의 돌봄노동 수행상 특수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저소득층의 노동시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급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시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의 특성이 낮은 소득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결합되어 있을 경우,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무급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수행에서 시간자원의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즉 소득이 낮은데 유급노동시간이 짧아서 저소득층일 경우, 시간적 여력이 주어진 소득빈곤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대체재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그러한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반면 유급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소득이 가사 및 돌봄노동과 보완재일 경우, 짧은 유급노동시간으로 여유시간이 많아도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지만 유급노동시간이 길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빈곤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시간 부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소득계층별로 나타나는 돌봄노동의 실태와 부담을 ‘직접’과 ‘간접’ 돌봄노동 차원에서 분석했다. 우선 ‘직접’ 돌봄노동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주된 행동으로 분류된 행위들로 정의했다. ‘직접’ 돌봄시간의 질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혼자서’ 돌봄노동을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직접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하는지 혹은 배우자와 함께 수행하는지는 돌봄노동의 강도나 질적인 특성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Folbre & Yoon, 2007). 또한 ‘간접’ 돌봄시간을 측정하여 돌봄시간에서 소득계층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씻기고 같이 놀아주고 가르치는 등의 직접적인 돌봄 행위뿐만 아니라

여가나 문화활동, 교제활동 등을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를 동반하고 하는 시간도 간접적인 돌봄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Folbre, Yoon, Finnoff & Fuligni, 2005).

넷째, 계층별 돌봄노동시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소득계층별 인구학적 특성, 가구 변인의 차이를 통제하고도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의 돌봄노동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 배분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1) 돌봄노동 개념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유급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변수에 포함된 행동 범주는 다음과 같다. 유급노동시간에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였다. 출퇴근시간까지 포함한 유급노동시간의 총량이 돌봄노동시간의 객관적 제약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시간에도 자녀 돌보기, 자녀 교육 관련 봉사활동, 그리고 이러한 행동 관련 이동시간을 포함하였다.

〈표 4-1〉 201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범주와 노동 측정

	행동
시장노동	주업, 부업, 농림어업 무급가족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일, 자가 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기타 일 관련 행동, 구직활동, 출퇴근, 그 외 일 관련 이동
(직접) 돌봄노동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공부 봐주기, 기타 학생 보살피기, 자녀 교육 관련 자원봉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만 10세 미만과 만 10세 이상으로 구분됨)
가사노동	식사 준비, 설거지·식후 정리, 간식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세탁하기,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가정용 섬유 신발서비스 받기,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주거 관리, 가정용품 관리 제작,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차량 관리하기, 차량 서비스 받기, 애완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애완동물 서비스 받기, 상품 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이용, 관공서 등 이용, 기타 가정 관리, 가정 관리 관련 이동
여가	대분류: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이와 관련 이동

본 연구는 직접 돌봄노동과 간접 돌봄노동 시간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은 돌봄노동을 ‘제3자 원칙’에 기반하여 정의한다. ‘제3자 원칙’이란 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 행위가, 본인이 아닌 제3자, 즉 타인이 고용되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내가 아닌 타인이 소비한다면 노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Reid, 1934; Folbre, 2008). 이 제3자 기준에 의하면 유급노동은 당연히 노동으로 정의되고, 돌봄노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하게 된다. 즉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거나 박물관에 데려가는 것, 아이가 놀 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도 부모가 아닌 타인을 고용해서 하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이 소비하는 것이므로 노동이다.

돌봄노동시간의 측정은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조사한 행동분류에 의존

한다. 여러 나라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각기 조사 내용이 달라 돌봄노동 측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Folbre & Yoon, 2007).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는 특정 시간에 응답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자녀 돌봄과 관련된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들은 자녀 돌봄시간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 가운데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같이 놀아주기, 가르치기 등 직접적인 형태의 돌봄노동 이외에도 강도 높은 신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집중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신의 TV 보거나 친구 만나기 등 여가활동에 자녀를 동참시키는 혹은 시킬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 이럴 때도 부모는 자신들의 활동을 하면서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운다던가, 자녀의 돌봄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보호·감독·대기하는 돌봄노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동’에 초점을 두는 ‘직접’ 돌봄노동시간에만 초점을 둘 경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겪게 되는 시간 제약과 빈곤을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행동’에 기반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들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간사용조사는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가?(Was there a child in your care?)’라는 질문을 던져 ‘행동’ 중심으로 묻는 자녀 돌봄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의의 돌봄시간을 측정했다(Allard et al., 2007). 부모가 설사 밥 짓거나 TV 보기 등 자신의 필요나 즐거움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가까이에서 즉각적인 자녀의 호출이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돌봄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돌봄노동도 부모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자녀를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

서 제3차 원칙에도 들어맞는다. 2003년 미국 시간사용조사 분석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아동을 1명 이상 둔 모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면 2.8시간, 광의의 돌봄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10.8시간을 자녀 돌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5).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도 2014년에 행동을 '함께한 사람'을 조사했다. 이 자료를 사용하면 응답자가 특정 행동을 자녀와 같이했을 때 시간을 간접 돌봄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간접 돌봄노동시간에서의 소득계층별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유자녀 양부모 가구의 유급노동시간이 돌봄노동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본을 구축했다.

자녀가 모두 1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 3인 가구까지 포함했다. 자녀의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돌봄정책의 연령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10세 미만인 경우 법·제도적인 적극적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서 시간 부족 문제는 한부모 가구에서 첨예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조사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표본 수(56개)가 분석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표본 수가 작아 한 부모를 취업 상태별로, 그리고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무리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 유형은 부부와 자녀 3인까지로 구성된 가구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의 수는 5562개이다. 각 계층에 속하는 시간일지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1792개, 중간소득층

1490개, 고소득층 2280개이다.

계층별 표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술통계 수준에서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 특성을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구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은 부부의 취업 상태, 자녀 수, 조사된 시간일지의 요일 분포에서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 가구는 취업자 수가 다른 계층보다 적다. 저소득층의 맞벌이 비중은 19.97%, 고소득층은 55.27%이다. 저소득층이 부부가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중은 3.52%인 반면 고소득층은 0.48%로 이러한 가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가구 내 취업자 수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돌봄노동시간 제공의 시간적 여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가구 형태별로 소득계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수에서도 저소득층에서 자녀 3명인 가구의 비중은 9.09%인 반면 고소득층은 2.18%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이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녀 한 명의 비중은 저소득층은 49.21%, 고소득층은 46.51%로 저소득층이 다소 높다. 자녀 2명인 가구의 비중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서 자녀 수가 양극화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소득빈곤으로 인해 다른 계층보다 자녀 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역으로 다자녀 가구에서 전업주부의 필요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저소득층에 속하게 되었을 수 있다. 조사된 시간일지 분포를 보면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2〉 계층별 표본 특성

(단위: 명, %, 만 원)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표본	관측치	1,792	1,490	2,280	5,562
	비중	31.44	25.01	43.55	100
가구형태	맞벌이	19.97	36.72	55.27	39.53
	남성 홀벌이	74.63	61.24	43.68	57.8
	여성 홀벌이	1.89	0.5	0.57	0.97
	비취업	3.52	1.54	0.48	1.7
자녀 수	1명	49.21	45.79	46.51	47.18
	2명	41.7	44.81	51.31	46.66
	3명	9.09	9.39	2.18	6.16
시간일지	평일	72.87	71.78	72.62	72.49
	토요일	13.49	15.19	13.24	13.81
	일요일	13.63	13.03	14.14	13.7
월평균 가구소득		225.47	353.32	554.96	400.9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제4절 분석 결과

1. 유급노동

계층별 남성과 여성의 취업 상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11.69%로 고소득층 2.8%보다 매우 높았다. 저소득층의 자영업 비중은 17.89%, 고소득층 22.41%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층 남성의 자영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많은 반면 고소득층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은 비취업 상태가 많았고 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 계층별 남녀의 취업 상태 분포와 취업 상태별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 만 원)

		남성				여성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분포	비취업	4.98	1.15	0.53	2.09	77.77	62.51	43.92	59.21
	상용	65.45	78.32	74.26	72.5	6.37	17.52	41.54	24.47
	임시/일용	11.69	3.4	2.8	5.75	10.66	11.72	7.86	9.71
	자영업	17.89	17.13	22.41	19.67	5.2	8.25	6.68	6.6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평균 개인 소득	비취업	91	218	442	147	5	10	34	16
	상용	226	307	399	325	110	141	258	225
	임시/일용	177	229	274	205	75	78	150	102
	자영업	206	308	424	337	46	95	183	121
	합계	210	303	401	317	21	48	146	8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계층별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자. 저소득층 남성의 노동시간은 443분으로 고소득층 남성 456분에 비해서 짧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비슷한 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데도 월평균 개인소득은 저소득층이 210만 원, 고소득층이 40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는 유급노동시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저소득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58분이었고, 고소득층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166분이다. 맞벌이 가구만을 한정해 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고소득층에 편입되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의 유급노동의 기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소득과 여유시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계층과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가 있다. 주중 저소득층 남성은 고소득층 남성에 비해 유급 노동시간이 짧다. 저소득층 남성의 노동시간 특징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비중이 저소득층 남성에서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 가구 여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주말에 저소득층 여성은 65분을 유급노동을 하는 반면, 중간계층은 96분, 고소득층은 58분을 일을 했다. 중간소득층 여성이 임시일용과 자영업 비중이 높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4-4〉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남성			여성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전체	443	466	456	58	104	166
	맞벌이	461	481	452	249	274	291
	남성 홀벌이	464	462	463	4	0	1
	여성 홀벌이	13	31	359	265	234	539
	비취업	67	202	0	1	67	0
주중	전체	525	566	573	74	128	215
	맞벌이	504	569	571	310	349	384
	남성 홀벌이	559	570	577	5	0	1
	여성 홀벌이	18	-	408	315	182	540
	비취업	89	256	-	1	80	0
주말	전체	227	213	143	17	42	34
	맞벌이	335	267	153	65	96	58
	남성 홀벌이	217	183	134	1	0	1
	여성 홀벌이	5	31	0	163	280	520
	비취업	19	78	0	0	0	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유급노동시간을 고용 형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긴 고용 형태는 맞벌이 가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고 홀벌이 가구에서는 자영업이다. 취업자가 한 명인 홀벌이 자영업 가구는 여성 대신 남성이 유급노동 특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때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주중과 주말 유급노동시간의 격차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상용직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주중에 유급노동시간은 짧았지만 주말에는 더 길었다. 맞벌이 가구의 여성도 주중보다 주말에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유급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가 주중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말에 유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부모는 주말 자녀 돌봄 문제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맞벌이	남성	상용	498	498	463
			임시/일용	412	389	395
			자영업	399	452	424
		여성	상용	213	326	317
			임시/일용	269	233	196
			자영업	255	220	241
	남성 홀벌이	남성	상용	454	462	455
			임시/일용	461	568	610
			자영업	505	451	481
주중	맞벌이	남성	상용	567	596	590
			임시/일용	419	479	460
			자영업	422	499	524
		여성	상용	321	409	420
			임시/일용	328	287	264
			자영업	270	297	294
	남성 홀벌이	남성	상용	560	581	590
			임시/일용	530	573	610
			자영업	569	518	541
주말	맞벌이	남성	상용	332	251	134
			임시/일용	379	218	-
			자영업	316	343	202
		여성	상용	58	103	53
			임시/일용	57	88	-
			자영업	130	91	64
	남성 홀벌이	남성	상용	187	171	114
			임시/일용	264	535	-
			자영업	323	244	223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2. 가사노동과 직접 돌봄노동

소득계층별 가사노동과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계층별로 가구 형태를 구분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급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중보다 주말에 가사노동시간이 길다.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주중과 주말 가사노동시간의 격차에 소득계층별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 가구의 남성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주말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오히려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남성이 주말에 유급노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량이 적은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주중에는 저소득층의 가사노동시간이 26분으로 중간소득층 18분과 고소득층 남성 19분보다 크다.

반면 맞벌이 가구 여성은 주중이나 주말이나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주중에 저소득층 여성은 160분, 고소득층 여성은 128분인 데 비해, 주말에는 저소득층 여성이 218분, 고소득층 여성이 200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주말에 가장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은 중간소득층이었다. 남성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계층 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반면, 여성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계층 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감소했다. 여유시간이 많을 수 있는 주말에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급노동 이외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유급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주말에 몰아서 해치워야 하는 정해진 가사노동량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성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주중에 저소득층 남성이 고소득층 남성

보다 미미하지만 약간 더 많은 시간(저소득 19분, 중간소득 20분, 고소득 17분)을 쓰고 주말에는 저소득층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점은 맞벌이 가구와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계층 간 격차는 맞벌이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대략 주중 245분이 할애되었고, 주말에는 각각 236분과 230분이 할애되었다. 중간소득층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계층과의 차이는 맞벌이 가구에서보다 크지 않다. 즉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 여성은 소득과 상관없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정량의 가사노동시간을 주중과 주말에 비교적 고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노동시간을 살펴보자. 직접 돌봄노동 역시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중과 주말의 돌봄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중에 맞벌이 가구 남성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직접 돌봄노동시간을 쓰고 있으며, 주말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이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주중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30분가량이 더 많다. 김진욱, 고은주(2014)의 분석과 달리 저소득층 여성의 주말 직접 돌봄노동시간 부담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중에 저소득층 남성의 직접 돌봄노동 미참여를 보충하기 위한 시간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남성 홀벌이 가구를 살펴보자.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 남성이 고소득층 남성에게 비해 주중에는 시간을 약간 더 쓰지만 주말에는 직접 돌봄노동을 8분가량 덜 수행한다.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도 저소득층 여성

의 직접 돌봄시간은 고소득층 여성보다 30분이 더 많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맞벌이 가구에서든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든 소득의 부족은 저소득층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돌봄노동을 다른 계층보다 더 수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자녀에게 돌봄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표 4-6〉 소득계층별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남성			여성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가사노동	주중	맞벌이	26	18	19	160	148	128
		남성 홀벌이	19	20	17	245	257	247
		여성 홀벌이	129	0	43	122	268	90
		비취업	55	27	0	269	198	352
	주말	맞벌이	37	51	78	218	172	200
		남성 홀벌이	67	81	77	236	250	230
		여성 홀벌이	126	85	40	154	205	0
		비취업	56	6	36	252	201	199
돌봄노동	주중	맞벌이	29	44	47	150	164	149
		남성 홀벌이	34	38	30	286	294	289
		여성 홀벌이	148	0	25	171	217	62
		비취업	112	155	0	274	224	165
	주말	맞벌이	66	71	68	164	145	134
		남성 홀벌이	87	97	95	210	200	180
		여성 홀벌이	206	29	280	73	120	90
		비취업	87	124	81	111	192	22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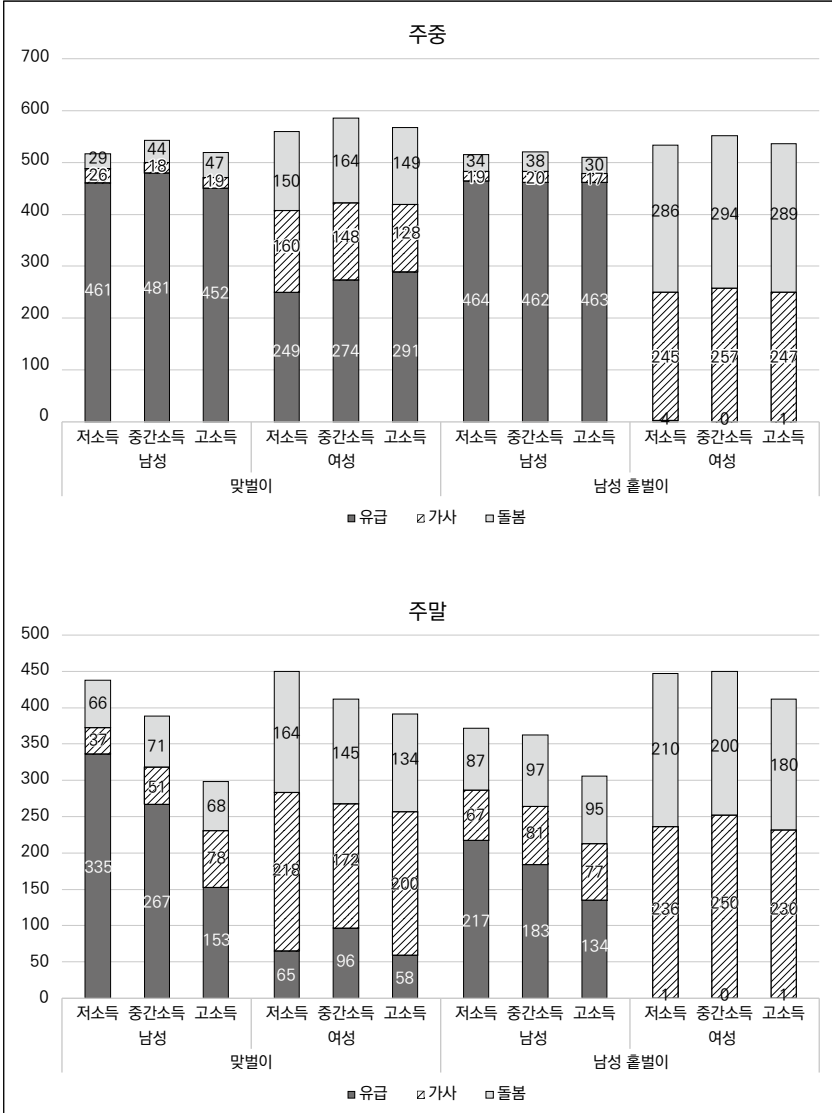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이러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부담이 유급노동에 더해질 때 다른 계층에 비해 총 노동시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1]을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저소득층 여성이었다. 저소득층 남성의 가사와 돌봄노

동시간이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시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계층별 총 노동시간을 볼 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총 노동시간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주중보다 주말에 가중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은 다른 계층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커서 다른 계층의 총 노동시간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게 만들고 있다. 짧은 유급노동시간으로 인한 가구 소득은 여성이 가사와 돌봄노동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의 노동으로 확보하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 임시일용이거나 자영업인 저소득층 여성은 시간당 임금이 낮기 때문에 대체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가사와 돌봄노동을 하는 것이 생계 비용을 절약하는 방편인 것이다.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그럼에도 주말에는 저소득층의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말 저소득층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량은 고소득층보다 많다. 즉 고소득층 전업주부는 다른 계층보다 유급노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데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쓰는 시간이 적어 총 노동 부담이 적다. 주말에 맞벌이와 남성 홀벌이 가구 모두에서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돌봄노동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떠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소득계층별 총노동시간과 유급/가사/돌봄노동 구성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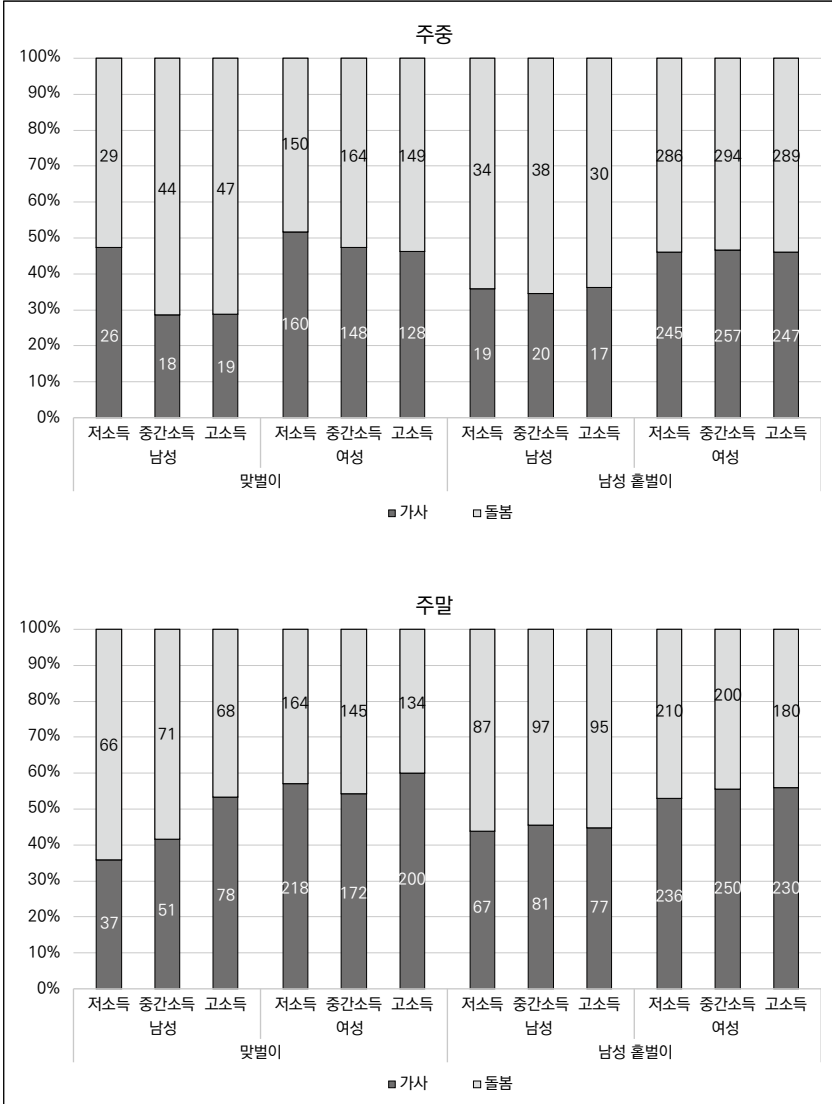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합계를 100으로 놓았을 때 돌봄노동시간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돌봄노동이 자녀의 인적자본 내지는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수행하는 무급노동시간 가운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상대적 비중은 세대 간 자원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계층별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림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몇몇 집단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일수록 대체로 가사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 격차는 맞벌이 남성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주중에 더 많은 비중의 시간을 돌봄노동보다 가사노동에 투입하지만 주말에는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맞벌이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 부족의 정도가 심한 주중에는 가사노동에 몰입하는 반면, 주말에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주중에 더 높은 비중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한다. 주말의 경우 중간계층 여성보다는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높지만 고소득층 여성보다는 낮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은 소득빈곤으로 인해 기초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노동보다는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소득계층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상대적 비중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7〉 고용 형태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가사노동			돌봄노동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주중	맞벌이	남성	상용	13	13	18	34	45	44
		임시/일용	51	16	26	24	25	77	
		자영업	35	36	20	20	47	53	
	여성	상용	169	125	114	150	147	139	
		임시/일용	166	176	169	133	192	181	
		자영업	142	158	164	182	162	174	
	남성홀벌이	남성	상용	20	19	17	34	38	30
		임시/일용	23	21	39	41	14	25	
		자영업	12	25	16	30	41	30	
주말	맞벌이	남성	상용	37	52	82	46	72	71
		임시/일용	42	59	61	51	65	72	
		자영업	33	41	66	152	70	56	
	여성	상용	235	148	196	172	178	139	
		임시/일용	211	203	202	149	105	128	
		자영업	166	178	225	189	135	110	
	남성홀벌이	남성	상용	75	82	78	95	97	97
		임시/일용	56	0	0	66	0	0	
		자영업	40	81	74	63	97	18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지금까지의 분석은 소득계층별로 자녀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부담 가중을 통제하지 않았다. 〈표 4-8〉은 자녀 수가 동일할 때 소득계층별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패턴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자녀 수에 대해서도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저소득층 남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주중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돌봄노동시간은 짧은 반면 주말에는 가사노동시간이 더 짧고 돌봄노동시간이 더 길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도 앞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4-8〉 자녀 수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가사노동			돌봄노동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자녀 1명	주 중	맞벌이	남성	30	12	22	26	28	52
			여성	168	132	120	118	138	144
		남성 홀벌이	남성	19	25	20	37	41	35
			여성	244	255	238	263	269	279
	주 말	맞벌이	남성	43	55	73	69	74	58
			여성	238	164	191	147	166	130
		남성 홀벌이	남성	71	81	100	83	85	93
			여성	242	256	225	210	197	202
자녀 2명	주 중	맞벌이	남성	26	22	17	36	38	43
			여성	152	172	133	198	188	151
		남성 홀벌이	남성	18	16	13	31	36	25
			여성	241	258	251	307	324	292
	주 말	맞벌이	남성	29	44	85	65	70	79
			여성	206	170	204	181	127	142
		남성 홀벌이	남성	62	77	64	90	114	96
			여성	225	241	233	195	216	16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실태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소득계층을 떠나 각 계층이 다양한 활동 가운데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식사 준비’ 관련 활동, ‘청소’, ‘자녀 씻기기’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인 생명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일 수행해야 하는 노동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에도 소득계층별로 격차가 존재했다. 식사 준비에서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여성은 주중에 92분을 할애했고, 고소득층 여성은 65분만을 할애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부족하고 유급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외식이나 반제품 구매 대신 직접 조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주말에도 맞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 여성이 다른 계층 여성보다 식사 준비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했다.

〈표 4-9〉 주중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맞벌이						남성 홀벌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표본 수	105	107	165	165	395	395	410	403	285	286	308	301
식사 준비 및 설거지	4	92	4	74	5	65	3	122	2	122	5	115
서비스 받기	0	0	0	1	0	1	0	1	0	1	1	1
세탁	1	10	1	12	1	9	1	22	0	21	0	17
청소	7	38	7	36	5	31	4	59	8	64	4	58
주거 관련	2	0	0	0	0	0	1	1	1	1	1	0
애완동물 돌보기	0	1	0	1	0	1	0	1	0	0	0	1
쇼핑	5	11	4	14	4	12	7	23	4	31	4	33
은행업무	2	2	0	1	1	2	1	3	1	2	1	4
씻기	11	68	20	84	17	73	11	150	13	151	10	136
가르치기	2	15	3	15	2	14	1	16	1	18	1	25
놀아주기	11	25	12	25	18	31	19	73	20	67	17	66
기타 돌봄	1	22	4	24	4	16	1	28	1	34	1	33
합계	46	284	54	287	57	256	48	499	52	511	44	49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10〉 주말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맞벌이						남성 홀벌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표본 수	57	57	111	113	255	257	286	271	173	168	174	174
식사 준비 및 설거지	7	103	11	81	12	88	2	110	3	118	14	104
서비스 받기	0	0	0	0	0	0	1	1	1	1	0	0
세탁	0	23	1	17	4	14	1	22	1	21	1	14
청소	11	45	15	42	26	47	14	50	17	46	18	52
주거 관련	2	1	3	0	1	1	2	1	2	0	0	1
애완동물 돌보기	0	1	0	0	0	1	0	1	1	2	0	1
쇼핑	11	29	14	23	22	32	22	32	26	38	28	38
은행업무	0	0	0	0	0	0	1	3	0	1	1	1
씻기기	14	76	23	82	21	70	31	122	43	112	31	98
가르치기	5	15	1	6	2	12	1	7	2	8	2	13
놀이주기	31	54	40	41	38	43	49	67	41	62	51	49
기타 돌봄	12	13	3	8	3	5	2	7	3	9	7	12
합계	92	358	110	300	129	312	128	421	143	418	153	382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직접 돌봄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자녀 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표 4-11〉과 〈표 4-12〉에 자녀 1명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했다. 1자녀 맞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 여성(259분)은 고소득층(247분)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할애했다. 식사준비시간에서 계층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은 자녀 씻기기에 51분, 고소득층은 78분을 할애했다. 자녀 가르치기에 저소득층 여성이 13분, 고소득층이 9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주말에는 고소득층 여성이 10분, 저소득층 여성이 6분을 자녀 가르치기에 할애했고 있다. 주중에 유급노동시간이 긴 고소득층 여성이 주말에 자녀 돌보기 관련 행동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말에 저소득층 여성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자녀를 위한 직접 돌봄시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홀벌이 가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4-11〉 자녀 1명 맞벌이 가구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주중						주말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표본 수	63	63	74	74	190	190	23	23	52	52	124	124
식사 준비 및 설거지	6	94	2	60	5	61	9	96	13	69	13	85
서비스 받기	0	0	0	0	0	1	0	0	0	0	1	0
세탁	1	11	0	12	1	9	1	24	1	14	3	12
청소	9	36	4	34	5	30	14	52	15	47	22	41
주거 관련	1	0	0	0	0	0	1	0	4	0	2	1
애완동물 돌보기	1	1	0	0	0	1	0	1	0	0	0	0
쇼핑	5	14	3	17	7	11	10	40	15	27	19	32
은행업무	3	3	1	1	1	2	0	0	0	0	0	0
씻기	11	51	11	72	19	78	17	80	20	94	20	76
가르치기	2	13	4	8	2	9	4	6	0	5	1	10
놀아주기	9	25	11	29	20	36	39	47	42	47	31	37
기타 돌봄	1	12	1	18	3	9	4	10	5	9	3	4
합계	47	259	36	251	64	247	99	355	115	311	115	29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12〉 자녀 1명 남성 홀별이 가구 세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주중						주말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표본 수	191	183	121	125	127	123	141	131	79	75	71	71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서비스 받기	3	119	1	114	8	107	13	110	4	121	24	101
세탁	1	22	1	17	0	15	2	21	2	20	3	15
청소	5	63	13	65	6	55	12	48	18	47	22	51
주거 관련	1	1	0	2	1	1	3	1	5	0	0	2
애완동물 돌보기	0	2	0	0	0	0	1	1	1	2	0	1
쇼핑	4	21	5	37	2	32	22	35	28	40	33	36
은행업무	1	2	0	2	0	9	2	3	0	2	0	0
씻기기	10	135	14	139	16	140	30	123	34	100	30	129
가르치기	0	11	0	8	0	12	1	4	2	10	1	6
놀이주기	24	85	23	82	18	83	47	72	41	73	51	54
기타 돌봄	0	17	1	20	1	19	1	5	4	7	5	8
합계	51	478	59	486	54	475	133	425	140	423	170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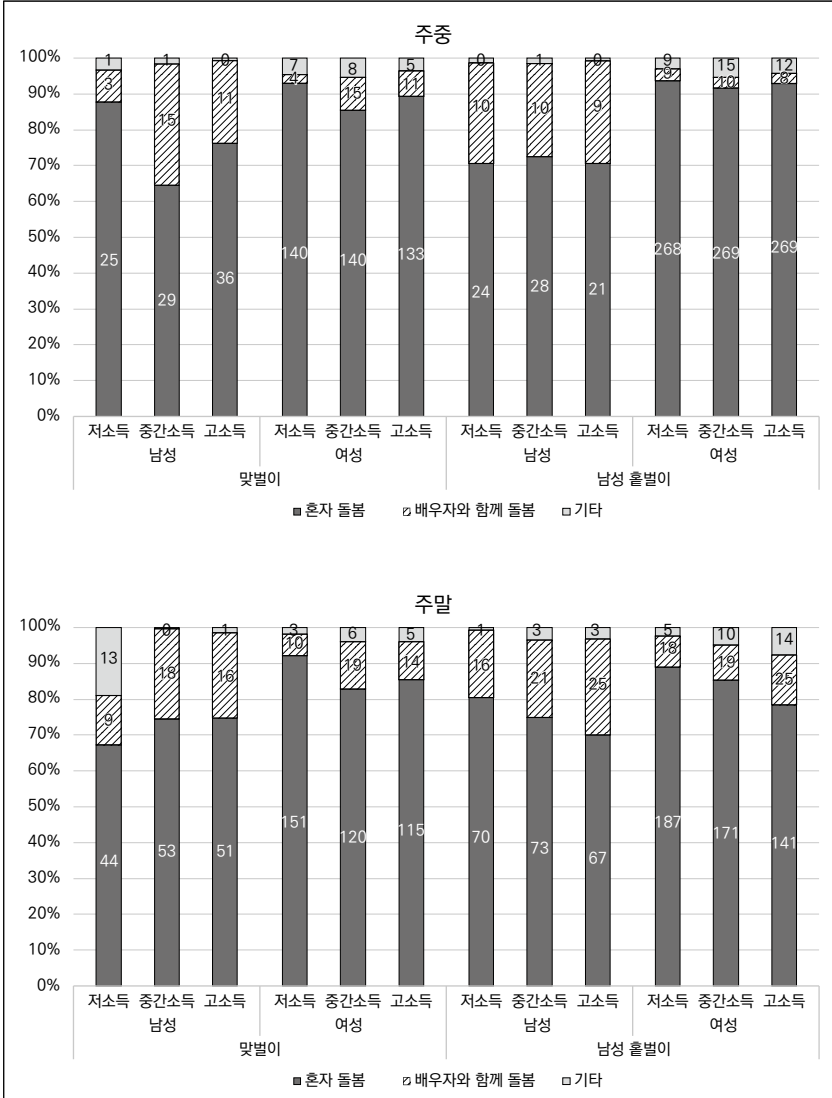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직접 돌봄노동의 강도에서 계층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직접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했느냐, 배우자와 함께했느냐는 돌봄노동의 성격, 강도, 비용의 대리 지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직접 돌봄을 수행했을 때보다 혼자서 직접 돌봄노동을 한 경우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육체적 피로도와 집중도가 높아 노동 강도가 심할 수 있다. 혼자 직접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같이할 경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시간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참여해서 직접 돌봄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시간적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 돌봄노동을 혼자서 수행할 때는 소외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닌 배우자와 같이했

을 경우에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질적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혼자 돌봄’은 오직 본인만이 그 행동을 수행한 경우이고, ‘배우자와 함께 돌봄’은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돌봄시간을 함께한 경우이며, ‘기타’는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이다. 대체로 저소득층의 경우 주중이나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돌보는 시간의 비중이 컸다. [그림 4-4]에서와 같이 자녀 1인 가구에 한정해도 저소득층 부모는 다른 계층보다 혼자서 직접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의 비중이 더 높았다.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도 저소득층 여성은 혼자 직접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

[그림 4-3]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한 직접 돌봄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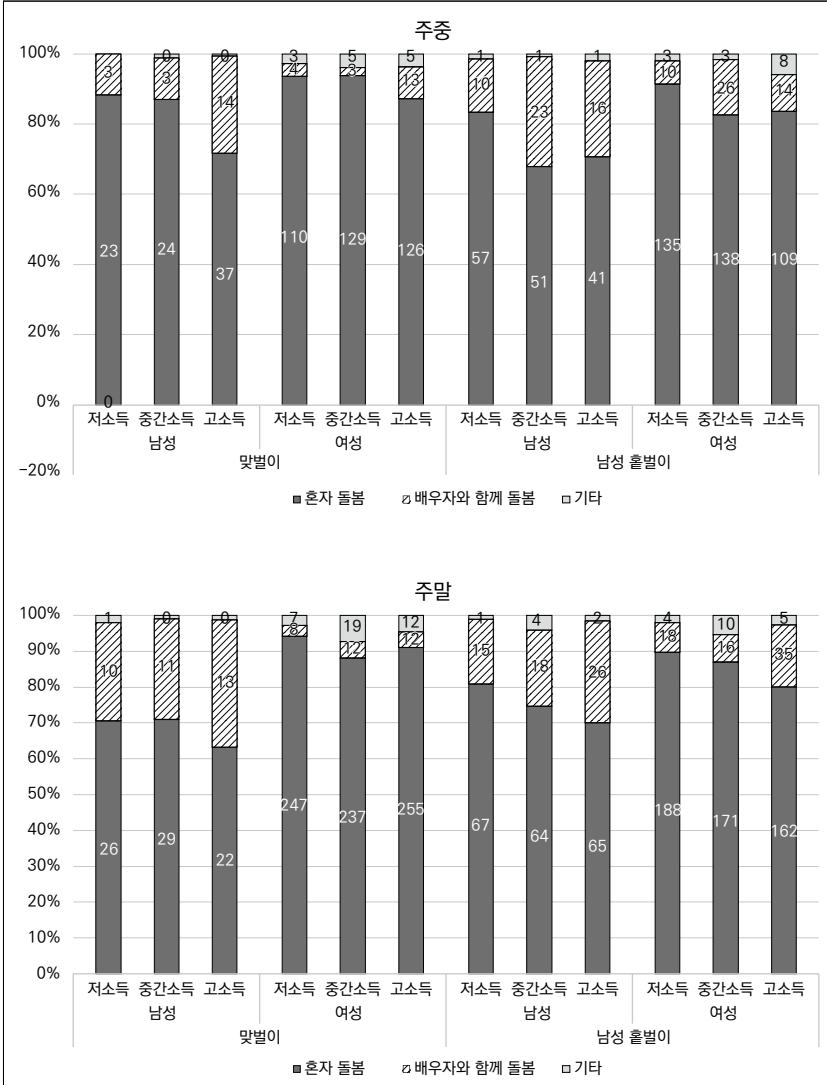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그림 4-4] 자녀 1인 가구의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한 직접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3. 간접 돌봄노동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내외라는 사실에 수긍할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씻기고 가르치고 놀아주는 등의 행동 이외에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경험한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책을 보는 대신 TV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 전반의 돌봄노동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접 돌봄노동’을 분석했다. 부모가 행동을 ‘함께한 사람’이 10세 미만 자녀인 시간 사용을 간접 돌봄노동으로 정의하고 소득계층별로 분석했다. 즉 부모가 직접 돌봄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맞벌이 가구를 살펴보자. 주중과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간접 돌봄시간에 소득계층별 격차가 존재했다. 주중에는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 모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해야 했다. 저소득층 남성은 49.8분, 중간소득층 남성은 41.2분, 고소득층 남성은 36.5분을 자녀와 함께했다. 이는 주중 고소득층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어 부모가 가정에 부재하는 시간이 저소득층보다 더 길기 때문이거나, 주중에 자녀 사교육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장시간 이루어져 자녀가 가정에 부재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주말에 저소득층 계층의 유급노동과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홀벌이 가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중과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에서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활동 영역은 식사하기나 목욕하기 등 ‘개인 유지’, ‘가사노동’, ‘교제 및 여가’활동이다. 맞벌이 가구에서 각 소득계층은 주중이나 주말에 이러한 활동에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간접 돌봄시간이 길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주중에 이러한 활동에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고, 주말에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이러한 활동에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 앞서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주말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직접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지만, 고소득층은 직접 돌봄노동 대신 간접 돌봄노동의 형태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4-13〉 자녀와 함께한 시간

		맞벌이						남성 홀벌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중	유급노동	0.4	1.9	0.7	1.2	0.8	1.1	0.2	0.1	0.3	0.0	0.3	0.0
	개인유지	30.3	47.4	23.9	44.6	20.6	37.6	22.8	52.0	23.2	58.1	18.0	56.2
	학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사노동	2.1	5.6	1.4	6.4	2.2	7.5	4.6	11.4	3.1	19.6	2.6	19.2
	배우자 돌봄	0.0	0.3	0.0	0.0	0.1	0.1	0.0	0.1	0.0	0.2	0.0	0.0
	기타 가족돌봄	0.0	0.4	0.4	0.1	0.2	0.3	0.0	0.4	0.2	0.1	0.2	0.6
	참여	0.0	0.0	0.0	0.0	0.0	0.1	0.0	0.5	0.0	0.0	0.6	0.4
	교제여가	17.0	39.6	14.8	25.1	12.5	13.4	18.0	37.1	14.3	38.8	8.4	32.9
	합계	49.8	95.2	41.2	77.4	36.5	60.0	45.7	101.6	41.1	116.8	30.1	109.4
주말	유급노동	0.0	0.0	3.1	3.8	0.5	0.2	1.6	0.5	0.1	0.1	1.6	1.8
	개인유지	70.2	108.0	76.4	95.1	97.8	110.6	68.4	96.2	88.8	118.9	103.0	119.5
	학습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가사노동	12.0	31.1	18.6	24.4	28.7	32.7	28.9	42.5	39.8	52.4	35.0	48.2
	배우자 돌봄	0.0	0.0	0.0	0.0	0.2	0.1	0.0	0.1	0.1	0.3	0.0	0.2
	기타 가족돌봄	1.3	1.3	1.5	3.1	0.6	0.8	1.2	1.3	1.0	2.1	4.1	5.3
	참여	0.0	0.0	0.0	0.9	0.8	1.1	0.1	0.6	0.9	0.1	0.0	0.3
	교제여가	67.5	100.1	124.8	139.6	140.8	141.7	88.0	112.2	103.9	117.1	143.6	135.9
	합계	151.0	240.6	221.3	263.0	269.0	286.9	186.7	253.1	234.6	290.9	285.8	3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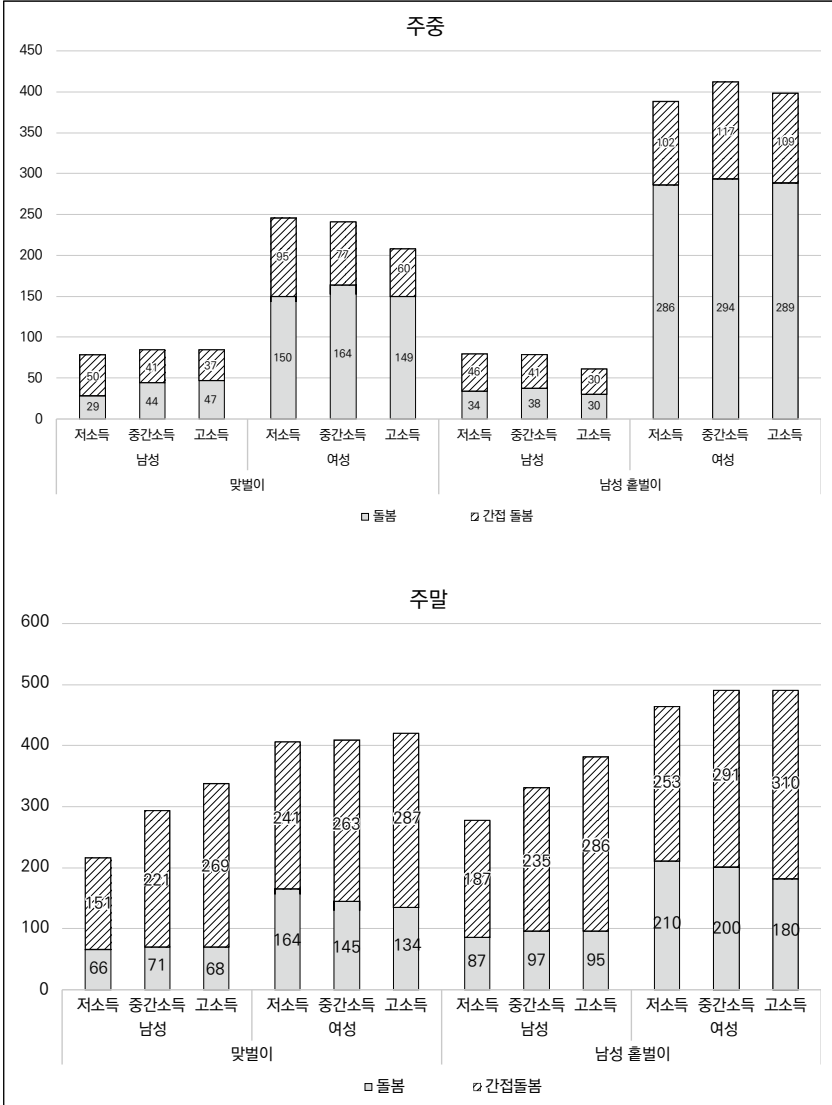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이렇게 소득계층별로 직접적인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간접적인 돌봄노동시간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4-5]에서는 자녀 1인 가구에 한정하여 직접 및 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총량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맞벌이 가구를 살펴보면, 주중에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은 다른 계층 남성과 여성보다 직접 돌봄시간이 적었지만 간접 돌봄시간까지 합하면 다른 계층보다 총돌봄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주말에 저소득층 남성

과 여성은 다른 계층보다 적지 않은 시간을 직접 돌봄노동을 했지만, 다른 계층의 간접 돌봄노동이 더 길어서 총돌봄노동시간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간접 돌봄노동 가운데 교제와 여가는 부모의 시간과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저소득층의 소득빈곤 상황은 부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돌봄노동시간은 다른 계층보다 길지만, 소득지출이 동반되거나 부모에게 여가문화적 성격일 수 있는 간접 돌봄노동시간은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 홀별이 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4-5] 자녀 1인 가구의 직접 및 간접 돌봄노동시간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부모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다차원적 의미와 경험을 가진다. 어떠한 활동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대체서비스 구입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활동은 자녀와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유의미한 여가 활동이나 양질의 가족시간(family time) 성격을 띠 수도 있다. 생활시간 조사 자료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성격을 명백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득계층별로 부모의 각 활동 가운데 자녀가 동반된 시간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맞벌이 가구를 살펴보면 각 활동의 전체 시간 가운데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단연코 교제여가활동이다. 개인의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유급노동과 같이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있거나 자녀를 동반하는 데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특징적인 것은 맞벌이 가구에서 주중의 교제여가시간 가운데 저소득층 여성이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여성보다 더 높은 비중인 24.3%를 자녀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다른 계층 여성에 비해 저소득층 여성은 자녀 없이 순수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교제나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주말에는 교제여가와 더불어 가사노동활동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활동에 자녀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쇼핑과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저소득층 여성이 다른 계층 여성에 비해 교제여가에 자녀를 동반하는 비중이 낮다. 중간소득층 이상에서 교제여가시간을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교제여가에 자녀를 동반하는 시간 비중이 낮아,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단란한 가정의 문화적 실천에서 저소득층은 다소 벗어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4〉 시간 사용 범주별 시간 대비 자녀와 함께한 시간 비중

(단위: %)

		맞벌이						남성 홀벌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중	유급노동	0.1	0.6	0.1	0.3	0.1	0.3	0.0	1.2	0.1	0.0	0.0	2.0
	가사노동	8.1	3.5	8.1	4.4	11.7	5.9	24.2	4.6	15.1	7.6	15.4	7.8
	교제여가	8.9	24.3	10.3	19.8	8.9	12.5	12.0	17.8	10.0	18.9	5.5	16.0
	돌봄노동 제외 전체 행동	3.6	7.5	3.0	6.2	2.7	4.7	3.3	9.0	3.0	10.4	2.2	9.7
주말	유급노동	0.0	0.0	1.2	4.0	0.3	0.4	0.7	52.3	0.1	50.0	1.2	163.0
	가사노동	32.6	14.3	36.6	14.2	37.1	16.3	42.9	18.0	48.8	21.0	45.3	21.0
	교제여가	25.1	43.9	43.3	51.5	40.3	51.5	29.0	47.0	34.6	52.3	39.5	49.2
	돌봄노동 제외 전체 행동	14.8	20.2	20.4	22.3	22.4	23.4	16.7	20.9	20.5	23.8	23.9	25.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4. 소득계층 간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 격차 영향 요인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소득계층 간 가사노동과 직접 및 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차이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고, 소득계층 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집단을 대상으로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먼저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제시한 기술통계로 드러난 소득계층 간 격차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소득계층만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했다. 〈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집단은 주중 맞벌이 가구 여성이었다. 반면 주말 맞벌이 남성 집단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 두 집단에 한정하여 소득계층 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것은 노동시장 특성과 개인 및 가구 특성, 그리고 대체서비스나 조력자 존재 대리변수이다. 노동시장 특성은

조사 당일 유급노동시간의 길이, 주당 휴일시간, 고용 형태 변수로 파악되며, 개인 특성은 건강 상태, 연령, 학력수준, 가구 특성은 자녀 수, 그리고 당일 방문객 여부를 대체서비스나 조력자의 대리변수로 삼았다. <표 4-16>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과의 집단적 특성 차이를 통제하고 나면 소득계층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당 노동시간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 있는 주휴무제 변수였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일주일에 1일 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거나 ‘기타’라고 응답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러한 형태의 주휴무제는 판매서비스직이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같이 수요가 있을 때 노동을 하게 되는 일자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임시/일용이나 자영업은 상용직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설명하지 않았다. 주말 맞벌이 남성의 경우 방문객이 소득계층 간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인이나 친인척이 방문할 경우 주말에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가사노동활동은 감소한다.

<표 4-15> 가사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주중				주말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저 소득층	6.826 (5.211)	32.172*** (9.963)	2.254 (3.629)	-1.160 (7.995)	-40.597*** (10.914)	18.328 (17.797)	-9.928 (10.534)	5.616 (13.090)
중간 소득층	-1.376 (3.339)	19.933** (8.716)	3.342 (5.584)	10.913 (9.442)	-26.843*** (9.287)	-28.034** (13.943)	4.108 (11.894)	19.891 (14.738)
상수	19.123*** (2.133)	127.640*** (5.174)	16.895*** (2.291)	246.547*** (6.141)	77.531*** (6.282)	200.101*** (8.688)	77.328*** (8.263)	229.924*** (10.370)
R-square	0.005	0.021	0.001	0.003	0.037	0.016	0.004	0.004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16〉 가사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주중 맞벌이 여성	주말 맞벌이 남성
저소득층	-8.543 (19.608)	1.003 (23.245)
중간소득층	8.277 (5.638)	-0.462 (9.103)
일일 유급노동시간	-0.288*** (0.019)	-0.123*** (0.013)
일주일에 1일 휴무	2.029 (7.885)	-9.072 (12.691)
일주일에 1일 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	31.359*** (8.890)	-17.318 (17.891)
2주마다 1일 휴무	8.422 (15.143)	-3.340 (21.109)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쉽	6.849 (10.270)	-8.026 (14.075)
기타	54.647*** (12.138)	-6.558 (15.560)
임시/일용	7.273 (7.338)	-2.636 (10.782)
자영업	-6.514 (8.362)	1.400 (12.855)
건강 상태 좋음	5.373 (3.876)	-3.249 (5.422)
연령	1.690*** (0.617)	-1.030 (0.736)
대출	5.431 (6.469)	5.536 (11.695)
자녀 수	8.049* (4.252)	-4.781 (7.187)
방문객	-13.250 (8.556)	-14.574* (8.456)
상수	143.339*** (28.282)	147.630*** (37.936)
R-squared	0.492	0.202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에 대해 <표 4-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계층 간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단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주중 맞벌이 남성과 주말 홀벌이 여성이다. 주중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주말에 홀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 여성은 고소득층 여성보다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표 4-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 주중 맞벌이 저소득층 남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직접 돌봄노동시간에 적은 시간을 쓴 것은, 이들의 주휴무제가 주 5일제가 아닌 형태의 일자리에서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말 홀벌이 여성의 경우 여러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직접 돌봄노동에 쓰는 시간이 52분가량 많았는데, 계층 간 단순 차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남편의 주휴무제 변수로서 주 5일제가 아닌 '2주마다 1일 휴무'나 '기타'일 경우 주말에 홀벌이 가구 여성의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한다.

<표 4-17>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주중				주말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저 소득층	-18.686*** (5.884)	1.613 (12.716)	3.905 (3.683)	-2.733 (11.044)	-1.839 (18.142)	30.435 (23.302)	-8.273 (9.938)	30.005** (14.751)
중간 소득층	-3.177 (7.455)	15.052 (12.729)	8.115* (4.259)	4.992 (12.492)	3.368 (10.776)	11.287 (16.608)	1.868 (12.200)	19.354 (16.702)
상수	47.386*** (3.633)	148.865*** (7.356)	29.902*** (2.843)	289.064*** (8.206)	67.883*** (5.568)	133.942*** (7.877)	94.980*** (7.723)	180.402*** (11.841)
R- square	0.012	0.003	0.005	0.001	0.000	0.008	0.002	0.009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18〉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주중 맞벌이 남성	주말 홀벌이 여성
저소득층	-17.938 (20.686)	52.434** (24.852)
중간소득층	-6.273 (5.134)	5.124 (14.992)
일일 유급노동시간	-0.169*** (0.021)	0.050** (0.023)
일주일에 1일 휴무	-12.560** (5.709)	-14.701 (16.399)
일주일에 1일 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	-7.463 (8.516)	-1.091 (25.218)
2주마다 1일 휴무	-18.142*** (6.555)	58.080* (35.066)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쉽	-22.236** (10.495)	-8.767 (24.168)
기타	-30.995*** (10.542)	87.692** (38.096)
임시/일용	-4.763 (11.058)	-19.677 (23.333)
자영업	1.585 (6.982)	16.044 (20.527)
건강 상태 좋음	-1.572 (3.209)	15.523** (7.320)
연령	-1.557*** (0.490)	-7.083*** (1.323)
대출	8.400 (5.422)	14.653 (14.425)
자녀 수	10.529* (5.502)	1.203 (10.056)
방문객	-2.904 (9.421)	-16.223 (19.138)
상수	188.560*** (25.620)	363.985*** (56.230)
R-squared	0.225	0.105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주말 홀벌이 여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남편 정보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총돌봄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맞벌이 여성과 홀벌이 남성, 주말 맞벌이 남성과 홀벌이 남성 집단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했다. <표 4-20>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에는 주중 홀벌이 남성 집단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총돌봄노동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총(직접+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주중				주말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저 소득층	-5.416 (9.990)	36.779** (16.594)	19.421*** (6.862)	-10.542 (11.213)	-120.439*** (36.930)	-16.113 (31.224)	-107.317*** (23.345)	-27.724* (16.348)
중간 소득층	1.533 (10.031)	32.389** (14.026)	19.043** (7.578)	12.387 (12.403)	-41.771 (30.662)	-8.971 (23.734)	-50.780* (27.029)	-0.988 (19.811)
상수	83.867*** (5.226)	208.914*** (8.508)	60.042*** (4.848)	398.420*** (8.582)	337.447*** (16.111)	421.076*** (13.803)	382.322*** (18.901)	491.727*** (13.642)
R-square	0.001	0.015	0.011	0.005	0.032	0.001	0.042	0.008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4-20〉 총(직접+간접)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 차이 영향 요인

	주중 맞벌이 여성	주중 홀벌이 남성	주말 맞벌이 남성	주말 홀벌이 남성
저소득층	24.410 (24.232)	39.502*** (12.027)	62.217 (47.130)	-8.118 (30.486)
중간소득층	10.634 (7.892)	19.894*** (6.026)	33.601* (18.960)	-30.194 (21.608)
일일 유급노동시간	-0.518*** (0.028)	-0.259*** (0.028)	-0.579*** (0.032)	-0.548*** (0.024)
일주일에 1일 휴무	-0.581 (10.413)	-19.778*** (7.077)	8.363 (25.708)	6.044 (18.439)
일주일에 1일 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	4.616 (16.489)	-1.429 (8.775)	-11.249 (35.498)	15.431 (24.921)
2주마다 1일 휴무	-17.757 (20.550)	-21.223* (12.122)	20.993 (34.292)	-24.839 (19.568)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쉽	-45.444*** (14.237)	-9.233 (13.750)	-17.433 (32.724)	-16.568 (26.839)
기타	16.971 (19.234)	-3.215 (19.075)	-67.147* (36.364)	-9.859 (25.164)
임시/일용	-2.181 (11.074)	15.704 (13.787)	-15.167 (34.028)	-10.217 (28.421)
자영업	-7.369 (11.821)	4.417 (7.616)	-30.057 (26.865)	-16.629 (20.662)
건강 상태 좋음	4.140 (5.416)	-1.549 (3.193)	-1.089 (13.729)	-22.309** (9.008)
연령	-3.840*** (0.858)	-0.841 (0.589)	-2.051 (1.917)	0.455 (1.677)
대출	20.090** (10.107)	-1.527 (7.164)	5.567 (21.548)	29.072* (17.515)
자녀 수	39.169*** (6.765)	0.478 (3.911)	18.218 (17.063)	47.018*** (12.974)
방문객	20.878* (10.899)	3.636 (8.263)	-16.689 (22.124)	-20.558 (23.928)
상수	458.007*** (39.408)	242.091*** (30.515)	471.833*** (90.457)	396.183*** (80.612)
R-squared	0.598	0.288	0.493	0.456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제5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유자녀 양부모 가구에서 시간 소비를 둘러싸고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이 차별적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빈곤으로 인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의 불안정한 대체성이나 불충분한 접근성을 경험할 수 있다. 구매력의 부족은 필요에 따른 시장서비스 접근 기회에 제약을 가져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수행할 수 있는 돌봄노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과 유급노동시간에서 시간량이라는 양적 특징뿐만 아니라 노동 수행의 일상적 맥락이 달랐다. 저소득층은 맞벌이보다는 홀벌이일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남성의 주중 노동시간은 443분으로 고소득층 남성 456분에 비해서 짧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소득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저소득층 남성의 노동시간 특징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상당히 짧은 대신, 상당한 시간을 가사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둘째, 계층별 무급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남성은 주중에는 고소득층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주말에는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졌다. 남성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계층 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반면, 여성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계층 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감소했다. 직접 돌봄노동 역시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중과 주말의 돌봄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중에 맞벌이 가구 남성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직접 돌봄노동시간을

쓰고 있으며, 주말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주중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직접 돌봄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든 남성 홀벌이 가구에서든 소득의 부족은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돌봄노동을 더 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을 볼 때, 저소득층 남성에 비해 저소득층 여성의 총 노동시간의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부담은 주중보다 주말에 가중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은 다른 계층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커서 다른 계층의 총 노동시간을 추월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 행동 범주와 직접/간접 돌봄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주중에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총 시간 가운데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더 높았다. 저소득층은 외식이나 반제품 구매 대신 직접 조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도 맞벌이 가구에서 저소득층 여성이 다른 계층 여성보다 식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저소득층의 노동 부담은 시간량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에서도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주중이나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돌보는 시간 비중이 높았다. 주중에는 맞벌이 가구 남성과 여성 모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간접 돌봄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주말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 홀벌이 가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주말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직접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고소득층은 직접 돌봄노동 대신 간접 돌봄노동의 형태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중에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은 다른 계층 남성과 여성보다 직접 돌봄시간이 적었지만 간접 돌봄시간 까지 합하면 다른 계층보다 총돌봄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다른 계층의 간접 돌봄노동이 더 길어서 저소득층의 총돌봄노동시간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간접 돌봄노동 가운데 교제와 여가는 부모의 시간과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저소득층의 소득빈곤으로 인해 부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돌봄노동시간은 다른 계층보다 길지만, 소득 지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간접 돌봄노동시간은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계층 간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격차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 유의성이 두드러지는 영향 요인은 부모의 연령, 일일 유급노동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휴무제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유자녀 양부모 가구의 복지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다.

주말의 저소득층 유급노동시간이 다른 계층보다 길다는 사실은 아동 돌봄정책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미세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서비스 제공 모델은 주중을 중심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부모가 원할 경우 토요일에도 운영을 해야 하지만 시설의 눈치와 등원한 어린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시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부모와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주중이 아닌 주말의 유급노동은 이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비전형 일자리일 때 돌봄정책이 저소득층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계층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불규칙하고 비정기적인 휴무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 근본적인 접근은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영역에서 노동시간특별제도로 인해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빈번하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야간이나 주말 노동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에서 노동과 휴가(휴무)의 불규칙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주중에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이 크고, 주말에는 주중에 가사노동을 하느라 못한 직접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문화생활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저소득층의 소득빈곤은 다른 계층에 비해 대체재를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워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만든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은 신체적 돌봄과 기본적인 학습과 인지 능력 발달에 집중되고 있으며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생활과 체험, 그를 통한 다양한 차원의 인성과 능력 계발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 가사서비스 바우처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중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 여가생활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저소득층의 주말 노동시간 실태를 고려해 볼 때 현금 지원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 차원의 장애 요인도 분명 존재한다. 저소득층의 주말 유급노동 관행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서비스정책의 효과가 한정적임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여성이나 모든 계층의 홀벌이 여성은 주중에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직접 돌봄노동시간의 비중이 높거나 간접 돌봄노동시간이 길었다. 저소득층 여성이나 전업주부가 경

힘하게 되는 돌봄노동의 공간적, 관계적 고립은 소득과 시간 부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적 박탈감을 가증시킬 수 있다. 이들의 돌봄노동 수행이 보다 공적이고 관계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5 장

간병·간호시간과 그 영향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5

간병·간호시간과 그 영향 <<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간병은 돌봄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돌봄행위는 시간 소비의 성별 격차 분석에서 빈번하게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아동의 양육을 중심으로 성 역할, 시간 소비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간병, 간호 부담에 대한 분석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 양육을 중심으로 한 돌봄 분석과 함께 간호·간병에 대한 시간 소비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가구 내 성인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가구 내 노인과 질환자에 대한 돌봄 여력이 오히려 감소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간병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간호·간병 부담이 가구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크다.

저소득층은 돌봄, 간병서비스 필요 가구원의 분포 확률이 높고, 반면 이들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 구매력도 낮아 간병과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은 유한의 자원으로 간병과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타 시간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일상의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누구이고 어떻게 분

포되어 있는지, 해당 가구의 돌봄 여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간호·간병 시간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구매나 여타 돌봄 지원 인력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지도 살펴보았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간호·간병을 위한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주로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자를 돌보는 이의 시간과 그 부담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거나 활용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를 위한 질환자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수이다.

선행 연구 중 돌봄 제공자 시간 사용(care-giver time use⁴⁾)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연구의 예이다.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질병의 악화와 돌봄 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들도 있다. Tooth, Mckenna, Barnett, Prescott, Murphy(2005)는 재활치료 후 퇴원한 중풍환자를 돌보는 이들의 시간 소비와 부담, 건강 상태를 분석하였다. 퇴원 후 6개월이 되었을 때와 1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각각 71명과 57명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자들이 퇴원 후 특정 시점에 부담이 커졌고, 돌봄자들은 일평균 4.6시간(6개월 경과 시점)에서 3.6시간(12개월 경과 시점)을 돌봄에 소요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기능 변화가 시간 소요에 그리고 돌봄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간병인 교육, 환자의 퇴원 치료

4) 간호시간 사용(nursing time use)은 주로 전문적 서비스 시간에 대한 분석으로 돌봄제공자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과 구분된다.

와 교육 프로그램 및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간병을 하는 이들은 재량시간이 줄고 여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시간이 줄면서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수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NYU 랭곤 헬스의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메리 미텔만은 수년 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한국일보, 2017).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 연구는 간병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카운슬링 세션과 지지 집단,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뉴욕을 비롯한 여러 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간병인들이 필요한 소통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지원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간병, 간호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질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시간 소비 자료를 활용한 간병시간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이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분석을 초점화한 반면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세분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간호·간병을 중심으로 한 돌봄 부담을 분석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 소비 자료의 행동분류 중 대분류 돌봄행동 중 간호하기를 중심으로 세분류를 활용하여 시간 분석을 하였다.

〈표 5-1〉 행동분류 중 간호, 간병

대분류	세분류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동거 배우자):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간호시간을 중심으로 돌봄시간을 분석하되 앞의 장과 달리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대상의 구분은 아동 돌봄과 구분하기 위함이다.⁵⁾ 생활시간 소비 자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장애, 치매, 중풍과 같이 간병에 준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동 자료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일반적 분포와 구성을 우선 살피고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돌봄자의 구성이 계층별로

5) 통계청 생활시간 소비 자료의 분류에 따르면 돌봄 필요 여부에 아동 돌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10세 미만의 아동 돌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여부에는 10세 이상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돌봄 필요 여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10세 미만 아동의 돌봄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이후 돌봄시간과 돌봄시간 외 여타 영역의 시간 소비가 계층별로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문자와 돌봄 필요자의 가구 밖 체류시간을 분석하여 가구원 외 돌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1. 돌봄 필요자의 특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3.8%에 해당된다. 이 가구의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가구 중 상당수는 하위 소득계층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외 돌봄이 가능한 성인 1인이 있는 가구 유형1의 경우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돌봄 필요 가구 중 25.5%나 된다는 것이다.

〈표 5-2〉 돌봄 필요 가구 및 가구 소속 개인의 분포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가구				개인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59.1 (558)	28.7 (266)	12.3 (90)	100.0 (914)	45.2 (1,032)	35.8 (764)	19.0 (308)	100.0 (2,104)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79.7 (236)	17.4 (46)	2.9 (10)	100.0 (292)	78.1 (442)	19.0 (92)	2.9 (18)	100.0 (552)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41.2 (58)	45.4 (72)	13.4 (16)	100.0 (146)	41.0 (158)	45.2 (196)	13.8 (48)	100.0 (402)

주: 1) 돌봄 필요 가구원- 치매, 중풍, 장애,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한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한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해당 가구의 약 60%에 이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 필요 가구 중 1, 2인 가구가 70%를 넘고 있다. 이는 저소득 돌봄 필요 가구의 돌봄 여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대부분 1, 2인 가구였다. 해당 가구의 80.4%가 1인 가구이고 17.2%가 2인 가구였다.

〈표 5-3〉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가구규모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1인	29.6(170)	7.3(28)	20.5(198)
2인	47.9(268)	18.4(70)	35.8(338)
3인	15.3(84)	24.7(98)	19.2(182)
4인	4.8(24)	33.3(106)	16.5(130)
5인	1.4(6)	9.8(34)	4.9(40)
6인	0.8(6)	6.5(20)	3.2(26)
전체	100.0(558)	100.0(356)	100.0(914)

주: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참고로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특성을 보면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 강하고 그래서 심각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해당 가구 중 저소득층은 25.9%, 기타 소득계층은 48.6%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가구 응답자의 92.4%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였다.

〈표 5-4〉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개인 특성

(단위: %, 세,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성별	남성	30.6	59.1	36.1
	여성	69.4	40.9	64.0
만 나이	10대	0.0	0.0	0.0
	20~40대	3.6	10.1	4.8
	50대	9.7	37.4	15.0
	60대	14.7	7.1	13.3
	70대 이상	72.0	45.4	67.0
	평균 연령	73.8	63.8	71.9
혼인 상태	미혼	7.4	19.0	9.6
	배우자 있음	25.9	48.6	30.3
	사별	55.1	16.1	47.7
	이혼	11.6	16.2	1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73.8	31.2	65.7
	중학교 졸업	15.0	27.0	17.3
	고등학교 졸업	8.9	29.0	12.7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2.4	12.8	4.4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7.6	34.5	12.7
	휴가 및 일시 휴직	-	-	-
	일을 하지 않았음	92.4	65.5	87.3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8	35.0	22.4
	임시근로자	0.0	30.4	15.7
	일용근로자	2.6	0.0	1.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7	19.4	35.9
	무급가족종사자	35.0	15.1	24.7
취업자 근로시간(1주)	주업+부업	31.7	44.5	38.3
전체		100.0 (238)	100.0 (62)	100.0 (300)

주: 취업자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18케이스, 26케이스로 총 44케이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돌봄 필요 사유를 보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사유가 가장 많았다. 기타는 치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중풍, 장애 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사유가 보다 분명한 항목 중에서는 장애가 사유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치매와 중풍은 돌

봄 필요 사유 중 약 7%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계층별 차이가 작는데 기타 소득층에서 치매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돌봄 필요자 외 성인 가구원이 1인인 가구 유형1의 경우에는 치매가 더욱 높았는데 이 가구의 전형이 노인 부부여서 그럴 가능성도 높다. 이 가구 유형에서 돌봄자는 배우자 있음이 약 76%, 평균 연령이 68세였다. 반면 돌봄 필요 가구 유형2의 경우에는 배우자 있음이 약 66%, 돌봄자의 평균 연령이 54세여서 차이가 있다.

<표 5-5> 돌봄 필요 가구원의 돌봄 필요 사유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	치매	7.2(38)	8.6(32)	7.8(70)
	중풍	7.0(34)	6.2(22)	6.7(56)
	장애	31.0(172)	25.5(82)	28.7(254)
	기타 돌봄 필요	54.8(308)	59.7(228)	56.9(536)
	전체	100.0(552)	100.0(364)	100.0(916)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	치매	6.2(16)	17.3(10)	8.7(26)
	중풍	9.7(18)	2.2(2)	8.0(20)
	장애	29.7(60)	30.5(14)	29.9(74)
	기타 돌봄 필요	54.5(112)	50.0(28)	53.5(140)
	전체	100.0(206)	100.0(54)	100.0(260)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	치매	9.7(6)	5.1(4)	7.0(10)
	중풍	19.6(6)	15.3(10)	17.1(16)
	장애	38.5(20)	14.6(10)	24.5(30)
	기타 돌봄 필요	32.3(16)	65.0(50)	51.5(66)
	전체	100.0(48)	100.0(74)	100.0(122)

- 주: 1) 돌봄 필요 가구원- 치매, 중풍, 장애,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돌봄 필요 가구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5) 가구 유형2의 경우 사례 수 부족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6) ***: 소득계층별 분포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자의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아서 돌봄 필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 저소득층에 밀집된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경제활동 상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계층 차이가 있어도 돌봄 필요자 개인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5-6〉 돌봄 필요 가구의 돌봄 필요자의 개인 특성

(단위: %, 세,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성별	남성	46.5	49.8	57.3	48.7
	여성	53.5	50.2	42.7	51.3
만 나이	10대	0.6	13.4	23.8	7.0
	20대	2.6	3.5	22.8	5.2
	30대	5.0	9.9	1.7	6.1
	40대	5.5	3.3	1.0	4.3
	50대	10.1	20.9	17.1	14.1
	60대	13.8	9.4	5.8	11.6
	70대 이상	62.5	39.7	27.9	51.8
	평균 연령	69.2	56.8	45.7	62.8
혼인 상태	미혼	13.2	29.9	48.3	22.2
	배우자 있음	50.8	45.5	28.1	46.6
	사별	31.0	19.3	23.6	26.7
	이혼	5.0	5.3	0.0	4.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9.5	40.9	49.9	52.9
	중학교 졸업	15.2	18.7	7.7	15.3
	고등학교 졸업	22.1	35.2	32.0	27.1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3.2	5.2	10.4	4.6
경제활동 상태	비해당(만 15세 이하)	0.1	9.4	16.2	4.7
	일을 하였음	10.8	16.0	17.6	13.1
	휴가 및 일시 휴직	0.0	2.1	0.0	0.6
	일을 하지 않았음	89.1	72.6	66.2	81.6
취업자 근로시간	주업+부업	36.1	40.9	35.1	37.8
근무일 (등교일)	근무 또는 등교	9.6	23.8	30.3	16.2
	쉬는 날	1.7	7.6	11.1	4.5
여부	해당 없음	88.6	68.6	58.7	79.2
전체		100.0 (552)	100.0 (274)	100.0 (90)	100.0 (916)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취업자 근로시간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42케이스, 52케이스, 14케이스로 총 108케이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2. 돌봄자의 돌봄시간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별 간호시간과 돌봄시간을 보면 가구 규모가 클수록 총 간호, 돌봄시간, 즉 가구원이 돌아가면서 돌보는 시간 합이 크지만 가구원 1인당 간호 돌봄시간은 작아서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가구원 1인의 돌봄 부담이 클 위험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성인의 수가 결국 해당 가구의 시간자원의 양을 결정한다는 가정과 유사한 현상이다.

〈표 5-7〉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규모별 돌봄자의 간호시간과 돌봄시간

(단위: 분)

가구 규모	돌봄자의 간호시간***		돌봄자의 돌봄시간***	
	가구 내 간호시간	가구원 1인당 간호시간	가구 내 간호시간	가구원 1인당 간호시간
1인	-	-	-	-
2인	24	12	34	17
3인	21	7	36	12
4인	24	6	42	11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3) 간호시간-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간호시간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 포함.

4) 돌봄시간-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간호 및 기타돌봄시간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 포함.

5) 극단치를 고려하여 5인 이상 가구 제외.

6) ***: 가구 규모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간호시간과 돌봄시간은 매우 희박하고 1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간호, 돌봄시간이 0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의 돌봄이 외부로 분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료의 한계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10분 이하로 유지되는 행위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간호, 돌봄시간이 기록 과정에서 상실될 위험이 크다.

〈표 5-8〉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

(단위: 명, 분)

	돌봄 필요 가구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N(0시간 포함)	436	656	1092	236	56	292	110	170	280
평균	17.6	16.2	16.7	23.8	21.8	23.3	5.7	13.5	10.3
최소값	0	0	0	0	0	0	0	0	0
최대값	550	520	550	550	210	550	90	240	240
N(0시간 제외)	105	116	221	71	18	89	16	36	52
평균	80.1	113.0	98.1	90.4	77.3	87.4	31.4	83.6	60.8
최소값	10	10	10	10	10	10	10	10	10
최대값	550	520	550	550	210	550	90	240	240

주: 1)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간호시간-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간호시간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 포함.

3)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5)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시간 0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돌봄 가구의 시간 분석을 하게 될 경우 가구 유형별 가구 수가 매우 작아서 중간소득층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돌봄시간을 0으로 기록한 가구를 제외한 상태로 돌봄 필요 가구의 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포함하여 취업, 근무한 이의 경우 저소득층은 하루 약 46분, 기타 소득층은 약 54분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해당 시간이 약 89분, 기타 소득층은 약 150분이었다. 저소득층보다 중간층 이상 소득계층의 돌봄시간이 더 길었다.

〈표 5-9〉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0시간 제외)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주행동		동시행동		주행동+동시행동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취업+근무	46.1 (18)	54.1 (43)	- (0)	- (0)	46.1 (18)	54.1 (43)	51.6 (61)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90.1 (86)	154.4 (70)	10.0 (4)	41.6 (5)	89.4 (87)	149.8 (73)	118.7 (160)
	전체	80.6 (104)	114.5 (113)	10.0 (4)	41.6 (5)	80.1 (105)	113.0 (116)	98.1 (221)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취업+근무	60.4 (11)	68.2 (11)	- (0)	- (0)	60.4 (11)	68.2 (11)	63.8 (22)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97.8 (60)	100.9 (5)	10.0 (2)	65.3 (2)	97.9 (60)	87.2 (7)	96.3 (67)
	전체	90.3 (71)	80.1 (16)	10.0 (2)	65.3 (2)	90.4 (71)	77.3 (18)	87.4 (89)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취업+근무	21.5 (3)	60.6 (13)	- (0)	- (0)	21.5 (3)	60.6 (13)	49.0 (16)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36.2 (12)	103.9 (23)	10.0 (1)	- (0)	34.9 (13)	103.9 (23)	68.0 (36)
	전체	32.3 (15)	83.6 (36)	10.0 (1)	- (0)	31.4 (16)	83.6 (36)	60.8 (52)

주: 1)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간호시간-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간호하는 시간.
 3)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5)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6) 취업+근무-경활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 가구의 전체적인 시간 소비를 보면 돌봄시간이 없는, 즉 해당 시간이 0인 가구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노동시간보다 중상층의 노동시간이 길고, 돌봄시간이 있는 가구의 경우 즉 해당 시간이 0보다 큰 가구의 경우에는 일시간이 저소득층에서 더 길었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돌봄노동시간이 0시간인 가구가 더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외부 서비스 구매나 여타 가구원 등의 여력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위의 돌봄노동시간에서 시장노동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중산

층에서 더 강하고 그래서 0시간 돌봄노동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오히려 근로 시간도 적고 돌봄노동도 더 길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돌봄노동시간이 0 이상인 가구의 경우 돌봄자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의 돌봄자의 개인 유지, 수면 등의 시간이 짧고 일시간과 가정 관리의 시간은 길어서 해당 가구의 돌봄 부담이 매우 가중될 위험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5-10〉 돌봄자의 행동분류(대분류)별 평균 시간량: 돌봄 필요 가구 (단위: 분)

취업 여부	대분류	돌봄시간 없는 경우			돌봄시간 있는 경우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취업 + 근무	개인 유지	664	635	641	589	624	612	639	633	634
	개인 유지 중 수면시간	469	441	447	423	431	428	453	439	442
	일	364	432	418	354	332	339	360	412	400
	일 중 구직활동 제외	364	432	418	354	332	339	360	412	400
	학습	3	3	3	13	2	6	6	3	4
	가정 관리	91	47	55	168	113	132	117	60	73
	돌봄	3	5	4	43	49	47	17	13	14
	참여 및 봉사활동	0	1	1	1	4	3	1	2	1
	교제 및 여가활동	207	175	181	186	180	182	200	176	182
	이동	93	127	120	70	118	102	85	125	116
	기타	15	15	15	17	18	17	16	16	16
n		89	262	351	39	78	117	128	340	468
취업 + 근무 외	개인 유지	677	705	692	665	645	654	672	682	678
	개인 유지 중 수면시간	494	497	496	479	443	460	488	477	482
	일	24	15	19	8	9	8	18	13	15
	일 중 구직활동 제외	21	13	17	8	8	8	16	11	13
	학습	39	102	74	8	28	19	27	75	53
	가정 관리	176	105	137	231	206	218	198	143	168
	돌봄	4	20	13	94	135	116	40	63	52
	참여 및 봉사활동	4	3	3	1	6	4	3	4	3
	교제 및 여가활동	426	390	406	349	295	321	396	355	373
	이동	70	84	78	59	92	77	66	87	77
	기타	19	16	17	26	23	24	22	18	20
n		175	186	361	133	130	263	308	316	624
전체	개인 유지	673	663	666	644	637	640	662	655	658
	개인 유지 중 수면시간	486	463	470	464	438	449	478	456	464
	일	131	267	224	100	134	119	119	230	191
	일 중 구직활동 제외	129	266	223	100	133	119	118	229	190
	학습	28	43	38	9	18	14	21	36	31
	가정 관리	149	70	95	214	170	189	174	98	124
	돌봄	4	11	9	80	102	93	33	36	35
	참여 및 봉사활동	3	2	2	1	5	3	2	3	3
	교제 및 여가활동	357	260	291	306	251	274	338	258	286
	이동	77	110	100	62	102	85	72	108	95
	기타	18	15	16	24	21	22	20	17	18
n		264	448	712	172	208	380	436	656	1,092

주: 1) 돌봄자-돌보미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 하였음' 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 인 경우.
 4) 돌봄시간은 주행동과 동시행동 포함, 행동 대분류별 시간량은 주행동 시간량 기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은 돌봄 필요 가구 유형2에서 더욱 크다. 이 가구 유형에서 취업, 근무하는 돌봄자의 경우 일시간도 기타 소득층보다 길고 가정관리시간도 길어서 수면과 개인유지시간이 짧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에 소요할 수 있는 시간도 큰 차이로 짧다. 다만 해당 가구 유형의 표본 크기가 작아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표 5-11〉 돌봄 필요 사유별 돌봄자의 간호하는 시간량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치매	36.1 (20)	29.7 (10)	33.4 (30)	1.3 (20)	1.8 (16)	1.5 (36)
중풍	37.7 (26)	89.5 (2)	40.1 (28)	9.6 (12)	12.6 (20)	11.2 (32)
장애	16.0 (72)	40.4 (14)	21.2 (86)	2.0 (44)	14.3 (30)	7.8 (74)
기타 돌봄 필요	23.9 (118)	5.2 (30)	20.0 (148)	9.6 (34)	15.4 (104)	13.6 (138)

주: 1)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4) 간호시간-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간호하는 시간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 포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시간은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서도 상이하였다. 간호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혼자 돌보는 경우 중풍에 소요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치매였다. 오히려 장애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단지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도 긴 시간의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소득의 여력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성인 2인의 돌봄이 가능한 가구 유형2에서는 역시 중풍의 경우 그 시간이 길고 치매의 경우는 매우 짧아서 추정컨대 이 현상은 외

부 서비스를 또는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의 치매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돌봄자의 특성

돌봄자(care giver 또는 carer)의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의 돌봄자는 여성이 많고 평균 연령 62세 정도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며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 일하는 돌봄자는 적은 반면 일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많았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자도 노인인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표 5-12〉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전체 돌봄 필요 가구)

(단위: %, 세,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성별	남성	37.1	49.1	47.1	44.4
	여성	62.9	50.9	52.9	55.6
만 나이	10대	0.4	2.3	0.0	1.0
	20대	8.0	12.0	24.6	13.8
	30대	4.8	15.1	18.0	12.2
	40대	8.5	23.3	14.2	15.8
	50대	14.9	21.0	33.5	22.0
	60대	23.1	12.6	5.6	14.5
	70대 이상	40.3	13.8	4.2	20.7
	평균 연령	61.6	48.6	43.6	51.9
혼인 상태	미혼	15.3	23.3	30.9	22.4
	배우자 있음	71.3	66.1	65.1	67.7
	사별	8.6	4.8	2.2	5.5
	이혼	4.9	5.8	1.8	4.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6	14.8	3.9	22.9
	중학교 졸업	14.6	8.8	1.0	8.9
	고등학교 졸업	28.8	44.1	35.0	36.4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11.0	32.2	60.2	31.8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37.2	63.1	73.6	56.7
	휴가 및 일시 휴직	0.3	0.1	0.0	0.1
	일을 하지 않았음	62.5	36.8	26.4	43.2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9	37.9	61.5	41.0
	임시근로자	17.5	13.8	6.0	12.1
	일용근로자	17.9	12.1	2.4	10.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6	6.5	8.5	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8.5	22.1	17.9	24.5
	무급가족종사자	4.8	7.8	3.6	5.7
임금 근로자 취업 형태	전일제	73.3	85.8	90.6	85.1
	시간제	26.7	14.2	9.4	14.9
취업자 근로시간	주업	39.6	44.5	45.9	43.8
	부업	0.6	0.6	0.3	0.5
	주업+부업	40.1	45.0	46.2	44.3
근무일 (등교일)	근무 또는 등교	32.2	51.2	61.2	47.0
	쉬는 날	8.8	15.2	16.7	13.3
여부	해당 없음	59.0	33.6	22.2	39.7
전체		100.0 (436)	100.0 (448)	100.0 (208)	100.0 (1,092)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172케이스, 286케이스, 156케이스로 총 614케이스이며, 임금근로자 취업 형태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94케이스, 172케이스, 98케이스로 총 364케이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5-13〉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단위: %, 세,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성별	남성	34.4	47.8	37.2
	여성	65.6	52.2	62.8
만 나이	10대	-	-	-
	20대	-	-	-
	30대	1.5	8.4	3.0
	40대	5.5	8.6	6.1
	50대	12.9	21.2	14.7
	60대	22.1	11.8	19.9
	70대 이상	58.0	50.1	56.3
	평균 연령	69.5	63.2	68.1
혼인 상태	미혼	5.4	3.1	4.9
	배우자 있음	75.7	76.2	75.8
	사별	14.0	13.1	13.8
	이혼	5.0	7.7	5.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0.1	30.6	53.8
	중학교 졸업	19.1	12.0	17.6
	고등학교 졸업	17.0	21.1	17.9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3.8	36.4	10.8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32.5	63.3	39.1
	휴가 및 일시 휴직	0.6	0.0	0.5
	일을 하지 않았음	66.9	36.7	60.4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5	25.4	16.3
	임시근로자	17.5	0.0	11.5
	일용근로자	24.3	18.2	22.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	6.7	2.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5.5	41.9	44.3
	무급가족종사자	1.2	7.9	3.5
입금근로자 취업 형태	전일제	59.6	77.1	64.8
	시간제	40.4	23.0	35.2
취업자 근로시간	주업	35.7	38.7	36.7
	부업	0.7	0.0	0.5
	주업+부업	36.4	38.7	37.2
근무일 (등교일) 여부	근무 또는 등교	26.3	54.5	32.3
	쉬는 날	6.8	8.9	7.3
	해당 없음	66.9	36.7	60.4
전체		100.0 (236)	100.0 (56)	100.0 (292)

주: 1)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80케이스, 40케이스로 총 120케이스이며, 입금근로자 취업 형태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44케이스, 16케이스로 총 60케이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5-14〉 돌봄자의 개인 특성 비교(돌봄 필요 가구 유형2)

(단위: %, 세,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성별	남성	45.7	52.0	49.4
	여성	54.3	48.0	50.6
만 나이	10대	1.5	0.0	0.6
	20대	14.0	6.9	9.8
	30대	7.2	19.2	14.3
	40대	1.0	15.5	9.6
	50대	16.1	24.8	21.2
	60대	33.5	19.7	25.3
	70대 이상	26.7	14.0	19.2
	평균 연령	57.1	52.4	54.3
혼인 상태	미혼	26.8	20.3	23.0
	배우자 있음	65.9	66.8	66.4
	사별	2.1	4.7	3.6
	이혼	5.1	8.2	7.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6.9	18.7	26.1
	중학교 졸업	7.8	9.9	9.0
	고등학교 졸업	33.2	38.5	36.3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22.2	33.0	28.6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40.2	74.6	60.5
	휴가 및 일시 휴직	-	-	-
	일을 하지 않았음	59.8	25.4	39.5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9.9	47.1	39.7
	임시근로자	30.4	12.4	17.3
	일용근로자	7.2	6.0	6.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1	8.6	7.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9.9	16.2	19.9
	무급가족종사자	6.5	9.8	8.9
임금근로자 취업 형태	전일제	90.3	89.5	89.7
	시간제	9.7	10.6	10.3
취업자 근로시간	주업	90.3	89.5	89.7
	부업	9.7	10.6	10.3
	주업+부업	43.3	44.2	44.0
근무일 (등교일) 여부	근무 또는 등교	33.5	62.7	50.8
	쉬는 날	10.1	12.5	11.5
	해당 없음	56.4	24.8	37.7
전체		100.0 (110)	100.0 (170)	100.0 (280)

주: 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48케이스, 118케이스로 총 166케이스이며, 임금근로자 취업 형태에 응답한 표본 수는 소득계층별로 각각 26케이스, 76케이스로 총 102케이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 가구의 가구 유형을 고령자 유무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 부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 돌봄 필요 가구의 거의 55%에 이른다. 비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4.8%에 불과하다. 장년으로 구성된 가구를 구분하여 보면 이러한 가구 유형의 연령 편중은 더욱 심할 수 있다.

〈표 5-15〉 돌봄 필요 가구 유형1의 고령자 가구 여부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가구 구성 구분	비율
65세 이상 가구원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노인 부부)	53.7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노인 2인)	1.0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인 가구원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노인+비노인 부부)	7.2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은 아니면서 65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중 '노인+비노인 부부' 가구를 제외한 가구(노인+비노인)	23.2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은 가구(비노인 가구)	14.8
전체	100.0 (292)

주: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 가구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돌봄 필요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거의 돌봄 여력이 없거나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돌봄자의 환경: 외부 도우미와 시설 이용 가능성 비교

돌봄시간은 만약 집 밖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돌봄을 도와줄 도우미나 다른 가구의 가구원이 있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나 도움은 해당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여

력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른 가구의 가구원 방문이나 도움은 1시간 이상 방문자 여부로 추측해볼 수 있다. 돌봄 필요 가구 중 1시간 이상 방문자가 있던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높다. 돌봄시간이 0이라 기록된 돌봄 가구에서도 유사하다.

〈표 5-16〉 돌봄 필요 가구 중 1시간 이상 방문자가 있던 가구 비율(가구 기준)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방문자 있음	37.5	18.4	29.7
	방문자 없음	62.5	81.6	70.3
	전체	100.0(558)	100.0(356)	100.0(914)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방문자 있음	28.0	21.3	26.6
	방문자 없음	72.0	78.7	73.4
	전체	100.0(236)	100.0(56)	100.0(292)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방문자 있음	33.0	26.2	29.0
	방문자 없음	67.0	73.8	71.0
	전체	100.0(58)	100.0(88)	100.0(146)
전체***	방문자 있음	17.5	10.0	12.1
	방문자 없음	82.5	90.0	87.9
	전체	100.0(7,148)	100.0(16,824)	100.0(23,972)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4) ***: 소득계층별 분포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방문자의 구성을 보면 가사도우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가장 높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다. 다음으로 다른 곳에 사는 자녀의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도우미 등 도우미 지원의 영향과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구매력의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서비스 제공에서 그 대상을 저소득층에 엄격하게 한정하는 경향이 강한 상태에서 구매력

이 높은 소득계층에서 더 높은 도우미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 필요 가구가 노인으로 구성된 경향이 강하지만 대개 소득이 낮아 서비스 구매력이 낮고 일부 저소득층만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주로 필요에 따라 서비스 구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효 표본 수가 매우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5-17〉 돌봄 가구 내 1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가구주 기준)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돌봄 필요 가구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	1.9 (2)	8.9 (4)	3.6 (6)	0.0 (0)	0.0 (0)	0.0 (0)	14.5 (1)	4.0 (2)	8.9 (3)
다른 곳에 사는 자녀	25.7 (49)	10.7 (10)	21.9 (59)	27.3 (17)	0.0 (0)	22.9 (17)	25.0 (5)	25.5 (6)	25.3 (11)
다른 곳에 사는 부모	0.0 (0)	7.4 (5)	1.9 (5)	0.0 (0)	0.0 (0)	0.0 (0)	0.0 (0)	1.3 (1)	0.7 (1)
다른 곳에 사는 형제자매	2.9 (5)	4.9 (5)	3.4 (10)	3.8 (2)	0.0 (0)	3.2 (2)	2.9 (1)	11.6 (3)	7.5 (4)
가사(요양)도우미	36.2 (63)	41.2 (29)	37.4 (92)	31.7 (18)	79.9 (11)	39.5 (29)	42.1 (7)	38.9 (6)	40.4 (13)
기타	33.4 (68)	26.9 (25)	31.7 (93)	37.2 (24)	20.1 (2)	34.4 (26)	15.5 (4)	18.7 (7)	17.2 (11)
전체	100.0 (187)	100.0 (78)	100.0 (265)	100.0 (61)	100.0 (13)	100.0 (74)	100.0 (18)	100.0 (25)	100.0 (43)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반면 돌봄 필요 가구원이 밖으로 나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파악은 돌봄 필요 가구원의 집 밖에 체류시간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 체류시간을 보면 집 밖 체류시간이 없는 돌봄자의 비율은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높다. 체류시간이 0시간인 돌봄 필요자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 필요 가구원은 약 3-4시간을 밖에서 체

류한다. 최대치는 24시간 밖에 체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해당 돌봄 필요자가 시설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는 돌봄 필요자를 포함하여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상층의 집 밖 체류시간이 더 길었다. 그리고 돌봄 여력이 낮은 가구 유형1에서 체류시간이 더 짧았는데 이 현상은 가구 유형1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18〉 돌봄 필요 가구원의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체류시간

(단위: 명, 분)

0시간 포함	돌봄 필요 가구*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N	552	364	916	206	54	260	48	74	122
평균	141.4	172.6	154.2	129.3	166.9	137.7	161.1	130.5	143.1
최소값	0	0	0	0	0	0	0	0	0
최대값	1,440	1,440	1,440	1,340	810	1,340	1,420	550	1,420
0시간 제외	돌봄 필요 가구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N	359	262	621	127	39	166	26	36	62
평균	216.7	242.7	227.9	205.5	258.6	217.6	289.9	235.7	258.2
최소값	10	10	10	10	20	10	20	40	20
최대값	1,440	1,440	1,440	1,340	810	1,340	1,420	550	1,420

- 주: 1) 돌봄 필요 가구원- 치매, 중풍, 장애,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5)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본인 집, 직장, 학교, 식당주점 외를 제외한 장소.
 6)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체류 시간을 보면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은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나가는 경우

에도 여타 돌봄 필요 가구의 경우보다 길지 않았다. 저소득 가구의 돌봄 필요 가구원의 0시간 제외 체류시간 분석에서는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해당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나 큰 차이가 아니었다. 즉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돌봄자가 가구 내 없어서 외부 체류시간이 더 길 것이라는 기대도 부응하지 않는 결과였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고립의 위험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이들의 돌봄 필요 정도가 비교되지 않아서 돌봄자가 있는 가구의 돌봄 필요자보다 다소 약한 상태의 장애나 질환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표 5-19〉 돌봄 필요 가구원의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체류시간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

(단위: 명, 분)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0시간 포함	N	238	62	300
	평균	158	178	162
	최소값	0	0	0
	최대값	1,440	1,350	1,440
0시간 제외	N	168	56	224
	평균	222	192	215
	최소값	10	10	10
	최대값	1,440	1,350	1,440

주: '남의 집' 및 '기타 장소': 본인 집, 직장, 학교, 식당·주점 외를 제외한 장소.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자가 느끼는 시간 부족의 정도를 보면 중산층 이상이 더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돌봄으로 인한 시간 부담은 반드시 빈곤층으로 한정하여 나타나지 않는데 더 긴 노동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서비스 구매 부담을 경험하는 중산층 이상에서도 돌봄노동의 부담이 매우 크게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20〉 돌봄자가 평소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 평균점수

(단위: 점,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취업+근무	2.80(128)	3.18(340)	3.09(468)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2.31(308)	2.61(316)	2.48(624)
	전체	2.46(436)	2.92(656)	2.76(1,092)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취업+근무	2.43(61)	2.89(34)	2.59(95)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1.81(175)	2.60(22)	1.92(197)
	전체	1.97(236)	2.75(56)	2.14(292)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취업+근무	2.87(37)	3.12(99)	3.05(136)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2.80(73)	2.29(71)	2.57(144)
	전체	2.82(110)	2.81(170)	2.81(280)

주: 1)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5) 취업+근무-경활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6) 항상 여유 있다고 느끼는 경우 1점~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4점.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시간 부족의 주된 이유를 보면 시장노동을 하는 취업자의 경우 일과 가사였다. 비취업자의 경우는 가사였으며 가사노동의 경우는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소요시간이 더 길었다. 이동시간의 부담에 대해서는 취업자는 기타 소득층에서, 비취업자는 저소득층에서 부담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1〉 돌봄자의 시간 부족 주된 이유: 돌봄 필요 가구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취업+근무	직장 일	79.6	73.5	74.8
	자기 학습	0.0	3.0	2.4
	자녀 보육교육	1.4	3.6	3.1
	가사	11.0	9.4	9.7
	교제와 사회활동	3.2	6.1	5.5
	이동시간	0.0	2.3	1.8
	기타	4.8	2.1	2.6
	전체	100.0(86)	100.0(266)	100.0(352)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직장 일	11.2	25.9	20.3
	자기 학습	8.6	23.1	17.6
	자녀 보육교육	7.7	7.0	7.3
	가사	34.2	22.1	26.7
	교제와 사회활동	12.9	14.7	14.1
	이동시간	2.7	1.8	2.1
	기타	22.7	5.4	12.0
	전체	100.0(120)	100.0(174)	100.0(294)
전체	직장 일	40.0	56.4	51.9
	자기 학습	5.0	10.2	8.8
	자녀 보육교육	5.1	4.8	4.9
	가사	24.5	14.0	16.9
	교제와 사회활동	8.8	9.2	9.1
	이동시간	1.5	2.1	2.0
	기타	15.2	3.3	6.6
	전체	100.0(206)	100.0(440)	100.0(646)

주: 1)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2)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돌봄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저소득층의 만족 수준이 더 낮다.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이해된다. 저소득층의 취업과 미취업을 비교하여 보면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취업의 만족도가 낮다. 시장노동시간이 길고 일을 위한 이동, 통근시간도 길어서 가사에 할애하거나 여가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

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유형2의 경우 가구 내 돌봄 가능자의 수가 많아서 취업한 돌봄자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돌봄을 떠맡을 가능성이 높은 미취업자의 만족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2〉 돌봄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단위: 점,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돌봄 필요 가구	취업+근무	2.63(128)	3.09(340)	2.99(468)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2.67(308)	3.12(316)	2.92(624)
	전체	2.66(436)	3.11(656)	2.95(1,092)
돌봄 필요 가구 유형1	취업+근무	2.49(61)	2.91(34)	2.64(95)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2.67(175)	2.80(22)	2.69(197)
	전체	2.62(236)	2.86(56)	2.67(292)
돌봄 필요 가구 유형2	취업+근무	2.79(37)	2.83(99)	2.82(136)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2.66(73)	2.81(71)	2.73(144)
	전체	2.70(110)	2.82(170)	2.77(280)

주: 1) 돌봄자-돌봄이 불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2) 돌봄 필요 가구-돌봄 필요 가구원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3) 돌봄 필요 가구 유형1-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구성.

4) 돌봄 필요 가구 유형2-돌봄 필요 가구원 1인과 돌봄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 구성.

5) 취업+근무-경활 상태가 '일을 하였음' 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6) 매우 불만족이 1점~매우 만족이 5점.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앞서 언급한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약 76%는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타 소득층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을 반영한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3〉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단위: %, 점)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전체
전혀 피곤하지 않음	6.6	14.2	8.1
거의 피곤하지 않음	17.6	14.8	17.0
조금 피곤함	30.5	42.5	32.8
매우 피곤함	45.4	28.6	42.2
평균 점수	3.15	2.85	3.09

주: 평균 점수-전혀 피곤하지 않은 경우 1점~매우 피곤한 경우 4점으로 평균 계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제5절 정책적 함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내 노인과 질환자에 대한 돌봄 여력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간병 부담이 가구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크다.

분석 결과 치매·중풍·장애 등 돌봄 필요자가 있는 가구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지 않으며 이 가구들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 지난 몇 년간 생계형 사건사고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절망이 도화선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간병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규모가 줄어들수록 간병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돌봄 필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커서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이러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 외 기타 소득계층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의 영향으로 돌봄시간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돌봄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외 기타 소득계층의 돌봄시간이 길었다. 간호, 돌봄에 대한 부담은 단지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중산층으로까지 퍼져 있다고 판단되며, 이유는 간병 서비스 구매에서 그 가격이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호·간병서비스의 확충은 중산층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 가격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의 질 관리가 주요 사안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풍과 장애의 경우 가구 내 돌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돌봄의 제공에서 포괄하는 영역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돌봄자의 고립 위험이 크고 이 점은 이미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돌봄자의 삶의 질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더욱 낮아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돌봄자 지원 등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가구 내 돌봄자의 돌봄 필요자가 있어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원거리 전화 또는 오프라인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가구 규모가 작고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돌봄자에게 이러한 지지는 매우 긴급하다고 할 것이다.



제 6 장

통근시간과 결정 요인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6

통근시간과 결정 요인 <<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최근 들어 교통약자는 물리적인 차원의 과거 전통적인 개념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진화·확대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전통적인 개념의 교통약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원인이란 기능장애(impairment: 심리적 혹은 육체적 기능이 손상을 받은 상태), 능력장애(disability: 기능장애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감소한 상태), 사회적 불리(handicap: 기능장애와 능력장애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상태)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이신해, 2009, p. 198). 하지만 최근 교통약자는 신체적·물리적 핸디캡을 지닌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교통서비스의 제약으로 사회·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이러한 활동의 축소로 삶의 질이 저하된 사람을 의미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마강래, 2011, p.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서비스 이용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러한 측면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장 실패의 영역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책 방향의 정립이 요구되는지 등과 관련한 논의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환경 등의 사회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⁶⁾ 실제로 교통약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장애인, 고령

6)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자, 임산부 등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염주희, 2012, p. 2).⁷⁾ 더 나아가 교통약자 혹은 교통서비스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통근시간 실태 및 결정 요인 주제의 무수히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경우에도 교통약자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저소득 가구는 교통약자인가라는 문제의식과 그러한 문제의식을 엄격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와 결정 요인의 상이성을 엄밀하게 비교·분석한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통근시간이 상이할 가능성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소득탄력성 - 통근시간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과 양질의 주거환경 수요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 - 이 가구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까닭에 통근시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가구는 통근비용에 비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심 밖에 거주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둘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경제적 제약에 의해 불가피하게 양질의 주거환경보다는 통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중심에 주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 결정 과정에서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Alonso, 1964; Muth, 1969; White, 1986; Benito & Oswald, 2000).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건설이나 환경폐기물 처리장 등 생활에 부적합한 환경 요인들이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들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정부는 물론 각종 사회·환경단체,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및 주의 환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7) 어쩌면 교통약자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 추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원의 근로 조건이 상위 소득계층 가구원의 근로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 통근시간이 짧을 수 있다. 보상격차가설(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hypothesis: Brown, 1980; Eberts & Stone, 1985)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은 긴 통근시간이라는 비효율을 보상할 만한 수준의 고임금 등 양질의 근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Madden, 1981). 또한 특정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가 소속 가구원의 근무지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따라서 이직도 쉬운) 시간제근로와 같은 일자리 성격에서 비롯된 낮은 임금수준 때문이라면, 가구의 소득과 통근시간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관찰될 수 있다.

가구원 소득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구 소득계층 간에 가구원 수, 가구 구성, 가구 유형 등 다양한 가구 속성들이 상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가구책임 가설(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에 따르면 가구는 돌봄 등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을 주로 담당하는 가구원(주로 여성)의 일자리와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 주거를 결정하거나 가계생산담당 가구원이 주거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주 소득원(주로 남성)의 통근시간보다 짧은 경향이 존재하는데(Ericksen, 1977; Fagnani, 1983; Madden, 1981; Preston, Mclafferty & Hamilton, 1993; Singell & Lillydahl, 1986; Tkocz & Kristensen, 1994; Turner & Niemeier, 1997), 만약 돌봄 가구원의 비율 등 가구원 구성이 가구 소득계층 간에 상이하다면 가계생산과 시장노동 사이의 가구 내 분업 구조에서 가구 소득계층 간 차이가 발생하여 통근시간 격차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통근수단 선택에 대한 경제적 제약 및 통근수단의 접근성 수준이 가구 소득계층 간에 상이한 까닭에 통근시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통근시간을 기록한 가구주와 그 배우자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통근시간이 가구 소득계층 간에 상이한지, 상이하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격차 발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한 원인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장 실패의 영역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 가구의 통근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 소득계층별 주거분리가설과 가구책임가설

수많은 해외 선행 연구들이 통근시간 결정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왔다. 일례로 Giuliano(1998)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지역의 높은 수준의 통근시간이 남성, 고소득, 자가 소유, 25-50세, 대중교통수단 이용,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는 풀타임, 취업자 가운데서는 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통근시간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그간의 선행 연구가 특히 주목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거지 결정과 통근시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이다.

Alonso(1964)는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주거지 결정 과정을 이론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시 가구는 주거지를 결정할 때 주거비용과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교통비용 간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가구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구가 고정되어 있고 가구 소득이 동일한 단핵도시에서 모든 직장도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지가 도심에서 멀어지면 통근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들은 도심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도심 부근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도심 부근 토지의 지대가 상승한다. 이는 주택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토지 공급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자본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도심 부근의 토지 단위 면적당 주택 밀도가 외곽 지역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가구는 통근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심 부근의 면적이 좁고 임대료가 비싼 주택에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교외 지역의 넓고 싼 주택에 거주하면서 높은 통근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주거지 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도심 부근에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낮은 통근비용과 높은 주거비용, 교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높은 통근비용과 낮은 주거비용이라는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거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전명진, 안현주, 2016, p. 26).

Alonso(1964)의 주거입지론은 Muth(1969)에 의해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이론적 체계에 기초하여 상당수의 주거입지론자들(Alonso, 1964; Muth, 1969; White, 1986; Benito & Oswald, 2000)은 Solow(1973)의 소득계층별 주거분리(income segregation) 가설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펴게 된다.

이들에 따르면 소득 증가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통근비용에 대한 (-)의 소득탄력성이 그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한 소득의 주 원천인 일자리에 가까이 위치하여 통근비용

을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그러한 일자리에서 먼 곳보다는 가능한 한 근접한 장소에 주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면 양질의 주거환경 소비에 대한 (+)의 소득탄력성도 작용한다. 소득의 증가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욕구로 이어져 넓고, 쾌적하며, 지대가 낮은 도심 밖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소득탄력성이 반대 방향의 소득탄력성을 압도하느냐에 따라 주거 입지가 선택되고 이에 따라 통근시간의 길이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부유한 계층(the rich)은 주거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통근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압도하여 주거비용이 낮은 도심 밖(suburban)에 거주하는 반면, 통근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주거비용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압도하는 빈곤계층(the poor)은 도심 중심(urban centre)에 위치하는 소득계층별 주거분리(income segreg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⁸⁾

통근시간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해외 선행 연구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왜 여성은 남성보다 통근시간이 짧은가'이다.

가구책임가설(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을 지지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에 비해 가계생산 및 돌봄에 관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통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택한다(Turner & Niemeier, 1997). 더 나아가 '직장 일보다는 가정'을 우선하는 여성의 역할이 사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직장 일'을 위해 여성이 긴 통근시간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근시간이 짧다는 주장도 존재한다(Tkocz & Kristensen, 1994).

이러한 가구책임가설에 기초하여 성별 통근시간 격차를 실증한 해외

8) 물론 이들 주거입지론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Wheaton(1977)은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에 비해 넓은 토지를 소비하는 반면 높은 통근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은 토지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통근비용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주거분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Ericksen(1977)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기혼여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Fagnani(1983)는 (아동)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파리(Paris) 기혼여성의 통근거리가 짧아진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아동) 자녀의 수와 3살 이하의 자녀 존재 여부가 기혼여성의 통근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Madden(1981)은 가구 내 가사노동 분업 구조가 임금이나 일자리 특성보다 기혼여성의 짧은 통근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Preston, Mclafferty와 Hamilton(1993)은 (아동) 자녀의 나이와 존재 여부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여성의 통근시간을 감소시킨다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Singell과 Lillydahl(1986) 역시 (아동) 자녀의 존재 여부가 여성의 통근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통행시간을 가구책임가설 이외의 요인에 기초하여 해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Madden(1981)은 비록 (아동) 자녀의 수나 3살 이하의 자녀 존재 여부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작지만 남성에 비해 적은 여성의 임금수준 역시 여성의 통근시간을 짧게 만드는 주요인임을 관찰하였다. 즉 긴 통근시간을 보상할 만큼의 높은 임금수준이 여성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내할 수 있는 (tolerable) 짧은 통행시간이 요구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임금수준과 양질의 근로 조건 사이의 음(-)의 관계를 설명한 보상격차가설(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hypothesis: Brown, 1980; Eberts & Stone, 1985)에 기초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Benson(2014)은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비해, 전통적인 직업인 장치·기계조작·조립 직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사무·서비스·판매 직무에 비해 도심 밖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산업 혹

은 직업에 대한 선호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in preference)에 의해 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에 비해 짧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우리나라 통근시간 결정 요인 관련 연구

통근시간 결정 요인과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득 계층별 주거분리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근시간이 짧은 주된 이유가 가구책임가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Lee와 McDonald(2003)는 1995년 인구센서스의 2% 추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자의 통근시간 및 통근거리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 시간제 근로보다는 전일제 근로,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 저학력보다는 고학력, 전세/월세보다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35세 이상 인구의 통근시간 및 통근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특히 (아동) 자녀의 수 및 수입이 없는 60세 이상 가구원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통근시간 및 통근 거리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연구의 관심사였던 가구책임가설이 한국에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im(2008)은 1996년 서울시 통행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비용과 통근시간 간의 상충관계에 주목하는 주거입지론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이 서울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통근인구들은 도심 밖의 낮은 주거비용보다는 도심에 주거하면서 통근시간을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는 1990년대 서울의 소득계층별 주거분리 현상이 주거 수요 증가의 결과라

기보다는 일자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산되고 도심 밖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제공되기 시작한 현상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권기현과 전명진(2014)은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다항로짓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통행수단(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에 비해 주중 6.7배, 주말에는 3.5배 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즉 가사노동시간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근 시 남편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반면 아내는 도보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았으며 통근 시 도보에 대한 선호 역시 아내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이러한 모든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가구책임가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양준석과 이상현(2014)은 한국노동패널 7차 자료에 선택편의(selection-bias) 완화를 위한 Heckman two-stage 방정식을 Oaxaca-Blinder 요인분해 방법론에 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성별 간 통근시간 격차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통근시간은 남성보다 짧았는데, 선택편의를 통제하면 통근시간 격차는 4.5분에서 17분으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어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짧아지는 반면 남성은 증가하였다. 연령 및 임금수준의 증가는 오직 여성의 통근시간만을 증가시키는 한편, 18세 이상 가구원 수, 자가주택 여부 등은 오직 남성의 통근시간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axaca-Blinder 요인분해 결과 성별 간 통근시간 차이의 대부분은 인적 속성의 차이가 아닌 계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근거하여 성별 간 통근시간 차이가 성별 간 인적 속성의 차이가 아니라, 양육 및 가사에 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감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함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미숙(2016)은 한국노동패널 7차 자료에 내생성(endogeneity) 완화를 위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토빗 모형에 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성별 간 통근시간 차이가 성별 간 가계생산 시간 차이와 육아 및 돌봄시간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생산시간이 아닌 육아 및 돌봄시간만이 통근시간에 (-)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이 성별 통근시간 격차의 주된 요인이라는 가구책임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명진과 안현주(2016)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통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통근시간에 대한 시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적용하여 소득별 통근시간에 대한 가치를 추정한 후, 추정된 통근의 시간가치와 주거비의 상충관계를 주거비 결정 요인 분석 모형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직장과 주거지 간 실제 거리에서 발생하는 통근 기회비용과 주거비 사이의 상충관계가 수도권에서 실재하였다.

3. 저소득층 통근시간 분석의 초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러한 격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상술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가구 소득계층 가구원의 통근시간은 다른 가구 소득계층 가구원의 통근시간에

비해 다양한 이유로 길거나 짧을 수 있다.

무엇보다 Alonso(1964), Muth(1969), White(1986), Benito와 Oswald (2000) 등의 주거입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계층별 주거분리 현상에 의해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즉 고소득 가구의 가구원들이 낮은 교통비용보다는 도심 밖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경제적 제약에 의해 양질의 주거환경보다는 가능한 한 통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도심 내에 주거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과 도심 외곽의 주거환경(주거비를 포함한 모든 주거 조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일자리에서 가능한 한 근접한 장소에 주거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통근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 탄력성만이 작용-소득이 증가하면 그러한 소득의 주 원천인 일자리에 가까이 위치하여 통근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긴 통근시간이라는 비효율을 보상할 만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임금 등 양질의 근로 조건이 제공되어야 근로자 개인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보는 보상격차가설(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hypothesis)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가구 가구원들의 평균 근로 조건이 고소득 가구 가구원들의 평균에 비해 열악하다면 저소득 가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가 소속 가구원의 직장이 쉽게 구직 및 이직이 가능한 시간제 근로와 같은 일자리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소속 가구원의 통근시간은 짧게 나타날 것이다.

가구 전체가 가계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가구원의 일자리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 주거를 결정하거나 가계생산 담당 가구원 스스로 주거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가구책임가설을 고려하면 가구원 수, 가구 구성,

가구 유형 등 다양한 가구 속성들이 가구 소득계층 간에 상이한 까닭에 통근시간이 상이할 수도 있다. 만약 저소득 가구의 돌봄 필요 가구원의 비율이 고소득 가구에 비해 현격히 높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까닭에 통근시간이 짧을 수 있다. 설혹 돌봄 필요 가구원의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돌봄 필요 가구원의 존재 여부 자체가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례로 고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제력을 활용하여 돌봄종사자를 고용하여 소속 가구원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통근시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적 제약에 의해 돌봄종사자를 고용하기 쉽지 않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시장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원이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통근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혹은 주거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제력에 기초하여 고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 수준보다 소속 가구원의 돌봄에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반면 주어진 시장노동에 충실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전체의 경제적 생활의 영위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돌봄 필요 가구원에 주의를 기울이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통근수단 선택에 대한 경제적 제약 및 접근성 수준이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까닭에 통근시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잠재적 요인들, 즉 주택 유형·주택 면적·주택 소유 유형·거주 지역 등 거주지 속성, 전체 가구원 수·미취학 아동 비율·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가구별이 유형·(비)농가 유형 등의 가구 속성, 임금·근로시간·근로 형태·산업·직업 등 일자리 속성, 성·가구주와의 관계·나이·배우자 유무·학력·건강 상태 등 인적 속성, 그리고 통근 교통수단까지 모두 고려한 상황

에서 가구 소득계층별 통근시간의 격차 및 주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주된 이유가 여전히 논쟁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과 통근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이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기 때문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목한다.

제3절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본 장에서도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동 자료의 통근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 자료 응답자의 통근 여부별 관측치는 아래와 같다.

〈표 6-1〉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통근 여부별 관측치 수 및 비중

(단위: 표본 수, 괄호 안은 %)

통근 여부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생활시간조사 기간) 통근하지 않았음	34,965 (64.78)	10,057 (82.81)	16,785 (61.39)	8,123 (56.06)
(생활시간조사 기간) 통근하였음	19,011 (35.22)	2,087 (17.19)	10,557 (38.61)	6,367 (43.94)
합계	53,976 (100)	12,144 (100)	27,342 (100)	14,490 (100)

주: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본 장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 추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우선 생활시간조사의 전체 샘플 중에서 통근한 기록이 있는 개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1만 9011개 관측치가 추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가구원 가운데 취업한 가구원의 비율을 보면, 상위 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더 많이 제외되었음을 <표 6-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2〉 통근 기록이 있는 샘플의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관련 기술통계량

(단위: 표본 수, 괄호 안은 %)

가구주와의 관계	통근 샘플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관측치 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가구주	11,401 (59.97)	36.53625 [19.96534]	1,495 (71.63)	6,567 (62.21)	3,339 (52.44)
배우자	4,432 (23.31)	31.95826*** [18.48082]	370 (17.73)	2,335 (22.12)	1,727 (27.12)
미혼 자녀	2,419 (12.72)	40.82803*** [20.93635]	138 (6.61)	1,233 (11.68)	1,048 (16.46)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253 (1.33)	40.33597*** [25.41308]	22 (1.05)	163 (1.54)	68 (1.07)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3 (0.33)	36.1164 [25.60432]	17 (0.81)	38 (0.36)	8 (0.13)
부모 (배우자 쪽 포함)	147 (0.77)	32.81179** [18.21966]	21 (1.01)	74 (0.7)	52 (0.82)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0 (0.00)	- -	0 (0.00)	0 (0.00)	0 (0.00)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162 (0.85)	43.73971*** [20.81402]	14 (0.67)	84 (0.8)	64 (1.01)
기타 가구 동거인	134 (0.7)	35.22388 [19.58081]	10 (0.48)	63 (0.6)	61 (0.96)
합계	19,001 (100)	36.0876 [20.04469]	2,087 (100)	10,557 (100)	6,367 (100)

주: 1) 상기한 표에서 숫자는 관측치 수를 의미하며, ()는 비중(%)을 나타냄. 다만 1일 편도 통근시간 열의 경우에는 가구원 유형의 1일 평균 편도 통근시간을 의미하며,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2) *, **, ***는 해당 가구원 유형과 가구주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임: *는 10% 내 수준에서, **는 5% 내 수준에서, ***는 1% 내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3) 상기한 결과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전체 샘플에서 통근 기록이 있는 관측치만을 대상(이하 통근 샘플)으로 분석한 결과임.

4)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5) 1일 편도 통근시간은 '1일 통근시간 / 1일 통근 횟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추가적으로, 통근 기록이 있는 샘플의 83.3%에 해당하는 가구주와 가구의 배우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는 통근거리, 양질의 주거환경, 가구원 돌봄시간 모두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여타 가구원들, 특히 전체 통근 샘플의 12.7%를 차지하는 미혼 자녀들은 가구의 주거 결정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근시간 결정 과정이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가구원 유형에 따른 통근시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완화하고자 분석 대상을 가구원 및 가구원의 배우자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관측치 수는 1만 5883개로 감소하였는데, 전체 가구원에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의 관측치가 더 적게 제외되었다(〈표 6-2〉 참조).

이 외에도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모든 응답자(즉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분석 대상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통근시간 결정의 이질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가능한 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장의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만 4522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관측치 수는 1640개, 중간소득 가구는 8232개, 고소득 가구의 관측치 수는 4650개를 차지하고 있다(〈표 6-3〉의 합계 참조).

(표 6-3) 최종 샘플의 소득계층별 통근수단

(단위: 표본 수, 괄호 안은 %)

통근 교통수단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걷기	1,974 (13.59)	427 (26.04)	1,060 (12.88)	487 (10.47)
자전거	301 (2.07)	53 (3.23)	178 (2.16)	70 (1.51)
개인 교통	8,019 (55.22)	521 (31.77)	4,594 (55.81)	2,904 (62.45)
대중교통	2817 (19.4)	476 (29.02)	1594 (19.36)	747 (16.06)
기타 교통	859 (5.92)	118 (7.2)	538 (6.54)	203 (4.37)
복수 교통수단	552 (3.8)	45 (2.74)	268 (3.26)	239 (5.14)
합계	14,522 (100)	1,640 (100)	8,232 (100)	4,650 (100)

주: 1)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통근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음: (1) 걷기: 오직 걸어서 통근한 경우 (2) 자전거: 오직 자전거로 통근하거나 걷기와 자전거를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3) 개인 교통(승용차, 오토바이): 오직 개인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4) 공공 교통(버스, 택시, 전철/지하철/기차, 배, 항공기): 오직 공공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5) 기타 교통(그 외 교통수단 - 아마도 직장용 차량 등): 오직 기타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6) 복수 교통수단: 걷기와 자전거를 제외하고 2종 이상의 통근수단을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3)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2. 분석모델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가 존재하는지, 격차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최종 분석 샘플을 아래의 회귀방정식 <6-1>에 적용하여 추정한다.

$$Commute_{it} = \beta_0 + \beta_1 Middle_{it} + \beta_2 High_{it} + \Theta_{it} \quad \langle 6-1 \rangle \\ H_{it} + Z_{it} + J_{it} + V_{it} + \zeta_{it}$$

i : 해당 취업자 개인(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

t : 2014년

$Commute_{it}$: OLS 분석에서는 t 기 해당 개인의 1일 편도 통근시간, 다
항로짓분석에서는 1일 동안 활용한 통근수단

$Middle_{it}$: t 기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가 중간소득 가구이면 '1'인 더미
(비교: 저소득 가구)

$High_{it}$: t 기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가 고소득 가구이면 '1'인 더미
(비교: 저소득 가구)

Θ_{it} : 해당 개인이 통근한 요일의 속성 효과

H_{it} :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의 기타 속성 효과(전체 가구원 수, 미취학
아동 비율, 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주
택 유형, 주택 면적, 주택 소유 유형, 가구별이 유형, (비)농가 유
형, 거주 지역)

Z_i : 해당 개인의 속성 효과(성,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배우자 유무, 학
력, 건강 상태)

J_{it} : 해당 개인의 일자리 속성 효과(임금, 근로시간, 근로 형태[종사상 지위 X 전일제/시간제 근로], 산업, 직업)

V_{it} : 해당 개인이 사용한 통근수단 속성 효과(다항로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음)

ζ_{it} : 교란항

본 장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1일 편도 통근시간과 통근에 사용된 교통수단이다. OLS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1일 편도 통근시간은 1일 총 통근시간을 1일 통근 횟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1일 총 통근시간이 아니라 1일 편도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생활시간조사에 통근시간을 기록한 개인의 출퇴근 횟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근 샘플의 약 88.6%가 하루 동안 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기록하였지만, 9.3%는 출근 혹은 퇴근만 기록하였으며, 313개의 관측치는 하루 동안 3회 이상 출근 혹은 퇴근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근 횟수의 이질성에 의해 초래 가능한 통근시간의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OLS 분석에서는 1일 총 통근시간이 아닌 1일 편도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둔다.

〈표 6-4〉에 따르면, 소득 하위 25% 이하 저소득층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평균 편도 통근시간은 34.5분으로서 중간소득 가구보다 약 1분, 소득 상위 25% 초과 고소득층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평균 편도 통근시간보다 약 2.7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표 6-4〉 1일 통근시간, 통근 횟수, 편도 통근시간의 주요 기술통계량

구분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일 통근시간(분)	69.633	40.517	66	41.362	68.642**	39.399	72.669***	41.959
1일 통근 횟수(회)	1.934	0.357	1.909	0.420	1.931**	0.351	1.949***	0.344
1일 편도 통근시간(분)	35.873	19.772	34.481	20.584	35.400*	19.211	37.201***	20.383

주: 1) *, **, ***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임: *는 10% 내 수준에서, **는 5% 내 수준에서, ***는 1% 내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를 의미함.

2)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4) 1일 편도 통근시간은 '1일 통근시간 / 1일 통근 횟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다항로지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통근에 사용된 교통수단이다. 〈표 6-3〉은 통근에 사용된 교통수단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근수단 활용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의 가구주 혹은 배우자일수록 걸어서 통근하는 비중, 자전거를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 공공 교통으로 통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자가용·오토바이 등 개인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임을 관찰할 수 있다.

〈표 6-5〉 주요 통제변수의 편도 통근시간

(단위: 분)

주요 통제변수		내용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통근 요일	주말	3,223	34.401	19.560
	평일	11,299	36.293***	19.813
가구별이 유형	외벌이, 무배우 가구주	6,707	37.117	19.912
	맞벌이	7,815	34.805***	19.590
거주 지역	비수도권	9,466	31.835	16.39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056	43.434***	23.062
(비)농가 유형	농가	207	26.224	13.377
	비농가	14,315	36.012***	19.816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기타	6,104	34.932	19.929
	아파트	8,418	36.555***	19.631
주거 소유 유형	전세, 월세, 무상주택	5,711	36.813	20.495
	자기 집	8,811	35.264***	19.266
미취학 가구원 존재 여부	없음	11,816	35.623	19.605
	있음	2,706	36.966***	20.454
10세 미만 취학 가구원 존재 여부	없음	12,794	35.969	19.893
	있음	1,728	35.161	18.849
돌봄 필요 가구원 존재 여부	없음	14,263	35.933	19.774
	있음	259	32.568***	19.455
성	여성	5,367	33.211	18.710
	남성	9,155	37.433***	20.208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3,975	32.896	18.621
	가구주	10,547	36.995***	20.076
유배우 유형	미혼, 이혼, 사별	2,570	36.089	19.262
	배우자 있음	11,952	35.826	19.881
학력	전문대졸 이상	6,592	37.824	20.684
	고졸 이하	7,930	34.251***	18.830
건강 상태	보통 혹은 나쁨	9,041	35.998	19.695
	좋음	5,481	35.667	19.899
일자리 속	임시·일용(전일제), 시간제(상용, 임시·일용), 자영업자	6,466	32.802	18.967
	상용직(전일제)	8,056	38.338***	20.059

주요 통제변수		내용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성	개인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상	12,859	36.480	19.799
		100만 원 미만	1,663	31.179***	18.926
	산업	제조업 외	11,538	35.101	20.033
		제조업	2,984	38.856***	18.434
	직업	단순노무직 외	12,404	35.987	19.921
		단순노무직	2,118	35.205*	18.867

주: 1) *, **, ***는 해당 변수 비교 대상의 편도 통근시간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임(예를 들어, 평일 vs. 주말(비교 대상)): *는 10% 내 수준에서, **는 5% 내 수준에서, ***는 1% 내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를 의미함.
 2)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1일 편도 통근시간은 '1일 통근시간 / 1일 통근 횟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6-5〉와 〈표 6-6〉은 실증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될 통근시간 결정 요인들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확인하였듯이 개인의 통근시간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거주지와 개인이 선택한 직장 사이의 통근 거리 및 통근수단은 물론 거주지 속성, 가구 속성, 일자리 속성, 인적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본 연구에서도 거주지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주택 유형, 주택 면적, 주택 소유 유형, 거주 지역 변수를, 가구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 가구원 수, 미취학 아동 비율, 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가구별이 유형, (비)농가 유형 변수를, 일자리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 형태, 직장의 산업 및 직무 변수를, 개인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배우자 유무, 학력, 건강 상태 변수를, 그리고 요일에 따라 통근시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근 요일 더미 변수를 독립변수로서 고려한다.

실제로 이들 통제변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개인의 1일 편도 통근시간에 차이를 양산하고 있음을 <표 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주중(평일) 1일 평균 편도 통근시간은 36.29분으로서 주말 평균 편도 통근시간보다 약 1.9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일에 비해 주말의 출퇴근시간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이 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6-6> 통근수단별 1일 편도 통근시간

(단위: 분)

통근 교통수단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걷기	20.633	9.813	21.516	10.842	20.388	9.398	20.394	9.725
자전거	29.704	14.790	29.151	16.342	29.059	13.813	31.762	15.961
개인 교통	33.601	16.678	31.140	17.647	33.206	16.303	34.668	17.015
공공 교통	49.736	22.105	48.564	21.116	48.712	21.964	52.668	22.776
기타 교통	42.516	19.250	37.867	21.636	42.776	18.109	44.532	20.350
복수 교통수단	45.649	25.339	44.593	22.617	42.618	23.808	49.247	27.063

주: 1) 1일 편도 통근시간은 '1일 통근시간 / 1일 통근 횟수'를 의미함.

2)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통근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음: (1) 걷기: 오직 걸어서 통근한 경우 (2) 자전거: 오직 자전거로 통근하거나 걷기와 자전거를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3) 개인 교통(승용차, 오토바이): 오직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4) 공공 교통(버스, 택시, 전철/지하철/기차, 배, 항공기): 오직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5) 기타 교통(그 외 교통수단 - 아마도 직장용 차량 등): 오직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6) 복수 교통수단: 걷기와 자전거를 제외하고 2종 이상의 통근수단을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4)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통근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에 따라 통근 시간 수준도 상이하다. <표 6-6>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걷기, 자전거, 개인 교통, 기타 교통, 복수 교통수단, 공공 교통수단 순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통근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따라서 통근수단이 통근 거리의 괜찮은 대리변수(proxy)임을 함의한다.

흥미로운 점은 걷기와 복수의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통근수단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동일한 통근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은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이 현실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⁹⁾

<표 6-7>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의 가구소득별 분포

구분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N=1,640)		중간소득층 (N=8,232)		고소득층 (N=4,65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통근 요일: 평일 더미	0.778	0.416	0.740	0.439	0.774***	0.418	0.799***	0.401	
가구 속성	가구별이 유형: 맞벌이 더미	0.538	0.499	0.195	0.396	0.510***	0.500	0.710***	0.454
	거주 지역: 수도권 더미	0.348	0.476	0.312	0.464	0.327	0.469	0.399***	0.490
	비농가 유형: 비농가 더미	0.986	0.119	0.965	0.183	0.987***	0.113	0.991***	0.097
	주택 유형: 아파트 더미	0.580	0.494	0.341	0.474	0.536***	0.499	0.741***	0.438
주거 면적 (㎡)	76.798	32.029	61.561	25.419	72.625***	29.441	89.558***	34.149	

9) <표 6-6>은 통근수단과 1일 편도 통근시간 사이의 기술통계량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과 관련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는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한 다음 절에서 다룬다.

구분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N=1,640)		중간소득층 (N=8,232)		고소득층 (N=4,65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주거 소유 유형 : 자기 집 더미	0.607	0.488	0.478	0.500	0.572***	0.495	0.713***	0.452
전체 가구원 수 (명)	3.081	1.174	2.400	1.140	3.110***	1.207	3.269***	1.035
미취학 가구원 비율 (%)	6.579	14.536	3.808	11.511	7.712***	15.477	5.550***	13.533
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	3.370	9.698	1.983	7.971	3.935***	10.197	2.858***	9.261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0.658	5.449	1.924	9.193	0.539***	5.243	0.422***	3.693
상 남성 더미	0.630	0.483	0.533	0.499	0.655***	0.476	0.622***	0.485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더미	0.726	0.446	0.824	0.381	0.747***	0.435	0.655***	0.475
만 나이 (세)	46.329	10.900	53.480	14.482	45.042***	10.448	46.087***	9.104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더미	0.823	0.382	0.610	0.488	0.810***	0.392	0.921***	0.270
학력: 고졸 이하 더미	0.546	0.498	0.823	0.382	0.583***	0.493	0.383***	0.486
건강 상태(3점): 1:좋음 2:보통 3:나쁨	1.728	0.639	1.883	0.665	1.730***	0.627	1.668***	0.641
근로 형태 전일제 상용직 더미	0.555	0.497	0.299	0.458	0.567***	0.495	0.622***	0.485
지난주 근로시간 (시간)	48.288	14.736	43.820	18.614	49.154***	14.433	48.331***	13.378
개인 월평균 소득 (만 원)	250.70	139.81	107.93	49.17	221.63***	99.33	352.53***	153.86
산업: 제조업 더미	0.205	0.404	0.120	0.324	0.228***	0.420	0.196***	0.397
직업: 단순노무직 더미	0.146	0.353	0.413	0.492	0.142***	0.349	0.058***	0.234

- 주: 1)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상기한 표에 표기되어 있는 더미변수들보다 더 자세한 더미변수를 사용함(예를 들어 산업은 산업 대분류, 직업은 직업 대분류 자체를 더미변수로 사용).
- 2) *, **, ***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임: *는 10% 내 수준에서, **는 5% 내 수준에서, ***는 1% 내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 3)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4)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6-7〉은 실증 분석에서 통제되는 변수들의 가구소득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근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표 6-4〉에 나타난 가구 소득계층 간 1일 평균 통근시간의 격차가 거주지 속성, 가구 속성, 가구원의 일자리 속성 혹은 가구원의 인적 속성에서 연유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가구소득 자체가 통근시간의 격차를 야기하는지, 그렇다면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과 통근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까닭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량의 제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통근시간과 가구 소득계층 구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요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는 회귀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4절 분석 결과

1.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

〈표 6-8〉과 〈표 6-9〉는 1일 편도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식 6-1〉을 OLS(Ordinary Least Squares)에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표 6-8〉은 분석 샘플 전체를 사용한 결과로서 우리나라 통근인구의 통근시간 결정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편, 〈표 6-9〉는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가구, 고소득 가구 각각을 개별 샘플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로서 가구 소득계층별 통근시간 결정 요인의 상이함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다.

〈표 6-8〉의 첫 번째 열에 나타나 있는 모형1은 가구 소득계층을 구분

하는 더미와 요일 더미를 추가한 결과이고, 모형2는 모형1에 전체 가구원 수·미취학 아동 비율·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주택 유형·주택 면적·주택 소유 유형·가구별이 유형·(비)농가 유형·거주 지역 등 가구 속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결과이다. 모형3은 모형2에 성·가구주와의 관계·나이·배우자 유무·학력·건강 상태 등 인적 속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고, 모형4는 모형3에 임금·근로시간·근로 형태·산업·직업 등 일자리 속성까지 통제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모형5는 모형4에 통근 교통수단을 독립변수로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해당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회계적 비용과 통근 거리에 따른 시간적 비용)까지 상당 수준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6-9>는 상술한 모형4와 모형5의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6-8〉 가구 소득계층 간 1일 통근시간 격차: OLS 분석 결과(전체)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가구 소득계층 더미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711823 (0.920143) [0.439]	0.464766 (0.928831) [0.617]	-1.027890 (0.970393) [0.290]	-2.128877 (0.96616) [0.028]	-1.616958 (0.867365) [0.062]
	고소득	2.966171 (0.989763) [0.003]	1.686100 (1.065622) [0.114]	-0.666729 (1.12757) [0.554]	-2.548756 (1.223277) [0.037]	-1.405751 (1.089026) [0.197]
가구별이 유형 더미 (비교: 외별이, 무배우 가구주)	맞벌이 가구		-2.261153 (0.600798) [0.000]	-0.809565 (0.673497) [0.229]	0.159787 (0.691783) [0.817]	0.104096 (0.620009) [0.867]
주택 유형 더미 (비교: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단독주택		-0.513130 (0.90694) [0.572]	-0.660960 (0.902882) [0.464]	-0.412410 (0.882983) [0.64]	-0.172203 (0.77785) [0.825]
	아파트		2.399822 (0.843955) [0.004]	1.588859 (0.845535) [0.06]	1.608022 (0.829017) [0.052]	1.354365 (0.734698) [0.065]
주거 면적 (m ²)			-0.013421 (0.009888) [0.175]	-0.021342 (0.010178) [0.036]	-0.014210 (0.010246) [0.166]	-0.009913 (0.009381) [0.291]
주거 소유 형태 더미 (비교: 월세, 무상주택)	자기 집		0.578089 (0.78032) [0.459]	0.916864 (0.794617) [0.249]	0.954997 (0.787695) [0.225]	1.117325 (0.725904) [0.124]
	전세		1.161870 (0.912345) [0.203]	0.793903 (0.903243) [0.379]	0.757260 (0.889656) [0.395]	0.699263 (0.807881) [0.387]
전체 가구원 수 (명)			-0.135392 (0.287501) [0.638]	-0.018530 (0.308755) [0.952]	-0.041129 (0.303651) [0.892]	0.092798 (0.273106) [0.734]
미취학 아동 비율 (%)			0.016852 (0.019446) [0.386]	-0.033798 (0.021605) [0.118]	-0.028652 (0.021066) [0.174]	-0.031766 (0.018841) [0.092]
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 (%)			-0.008993 (0.026456) [0.734]	-0.045070 (0.026959) [0.095]	-0.047974 (0.026624) [0.072]	-0.017757 (0.023571) [0.451]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			-0.146186 (0.04855) [0.003]	-0.132280 (0.048785) [0.007]	-0.136122 (0.046526) [0.003]	-0.099118 (0.039991) [0.013]
남성 더미 (비교: 여성)				3.110728 (0.822655) [0.000]	0.865395 (0.874749) [0.323]	2.376755 (0.789637) [0.003]
가구주 더미 (비교: 가구주의 배우자)				1.964317 (0.915161) [0.032]	1.907406 (0.892696) [0.033]	1.846132 (0.81971) [0.024]
(만) 나이(세)				-0.046606 (0.033577) [0.165]	-0.010866 (0.03395) [0.749]	0.023698 (0.030656) [0.440]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배우자 있음(유배우) 더미 (비교: 미혼, 이혼, 사별)				0.177874 (1.087365) [0.870]	-0.477010 (1.075728) [0.657]	0.249840 (0.967521) [0.796]
학력 더미 (비교: 중졸 이하)	고졸			0.038923 (0.833726) [0.963]	0.581099 (0.823287) [0.480]	0.394075 (0.716591) [0.582]
	초대졸			1.236389 (1.038492) [0.234]	1.620370 (1.056528) [0.125]	1.604580 (0.930182) [0.085]
	대졸			4.732547 (1.051567) [0.000]	4.692419 (1.166824) [0.000]	4.043984 (1.032542) [0.000]
	대학원 이상 졸			4.765746 (1.618442) [0.003]	4.939926 (1.724697) [0.004]	4.822453 (1.531029) [0.002]
건강 상태(3점 척도): 1. 좋음, 2: 보통, 3: 나쁨				0.664235 (0.395439) [0.093]	0.705816 (0.38738) [0.068]	0.498754 (0.348647) [0.153]
근로 형태 더미 (비교: 시간제 근로 (상용·임시·일용)	상용 (전일)				5.894370 (1.156441) [0.000]	2.852575 (0.987886) [0.004]
	임시·일용 (전일)				5.580090 (1.196595) [0.000]	2.400723 (1.026792) [0.019]
	자영업자				0.091764 (1.24906) [0.941]	-0.468573 (1.066112) [0.660]
지난주 주업 근로시간 (시간)					-0.093061 (0.020353) [0.000]	-0.070411 (0.01788) [0.000]
개인 월평균 소득 (만 원)					0.007203 (0.002974) [0.015]	0.004254 (0.002677) [0.112]
통근 교통수단 더미 (비교: 걸기)	자전거					6.436476 (1.124622) [0.000]
	개인 교통					12.000218 (0.559262) [0.000]
	공공 교통					26.209215 (0.695123) [0.000]
	기타 교통					20.629067 (1.204427) [0.000]
	복수 교통수단					23.325580 (1.561115) [0.000]

200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통제변수					
통근 요일 더미: 월요일~일요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거주 지역 더미: 16개 광역시도	미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비)농가 가구 더미	미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더미, 직업 더미, 대분류 기준	미통제	미통제	미통제	통제	통제
Adjusted R2	0.004321	0.10268	0.12186	0.160896	0.300323
관측치 수	14,522	14,522	14,522	14,522	14,522

- 주: 1) 상기한 분석 결과는 편도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OLS 분석 결과임: ()는 해당 가구별로 조정된(clustered)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내고 []는 p-value를 의미함.
- 2) 상기한 표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는 통제변수의 내용 및 형태 측면에서 각각 상이: 모형1은 가구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더미와 요일 더미를 통제한 결과이고, 모형2는 모형1에 전체 가구원 수·미취학 아동 비율·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주택 형태·주택 면적·주택 소유 여부·맞벌이 여부·농가 여부·가구의 행정구역 등 가구 속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결과이며, 모형3은 모형2에 성별·가구주 여부·나이·배우자 유무·학력·건강 상태 인적 속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결과이고, 모형4는 모형3에 임금·근로시간·총사상 지위·전일제 여부·산업·직업 등 일자리 속성까지 통제한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모형5는 모형4에 통근수단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결과임.
- 3)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 4) 통근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음: (1) 걷기: 오직 걸어서 통근한 경우 (2) 자전거: 오직 자전거로 통근하거나 걷기와 자전거를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3) 개인 교통(승용차, 오토바이): 오직 개인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개인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4) 공공 교통(버스, 택시, 전철/지하철/기차, 배, 항공기): 오직 공공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공공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5) 기타 교통(그 외 교통수단 - 아마도 직장용 차량 등): 오직 기타 교통수단만을 이용하거나, 걷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자전거와 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하거나, 걷기·자전거·기타 교통수단을 병행한 경우 (6) 복수 교통수단: 걷기와 자전거를 제외하고 2종 이상의 통근수단을 병행하여 통근한 경우.
- 5) 상기한 결과는 최종 샘플을 대상(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통근 기록이 존재하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먼저 본 장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 소득계층 간에 통근시간이 상이한지 그 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표 6-8>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중간소득 가구원보다 약 1분, 고소득 가구원보다 약 2.7분 짧았던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1일 평균 편도 통근시간(<표 6-4> 참조)이 주택 유형·주택 면적·주택 소유 유형 등 다양한 가구 속성들이 통제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 속성, 임금·근로시간·근로 형태 등 일자리 속성, 통근수단 까지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5에서는 오히려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저소득 가구의 평균 편도 통근시간이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보다 약 1.4~1.6분 더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우리 주위에서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의 통근시간이 짧음’ 현실이 ‘단순히 가구 소득수준의 차이 때문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들의 결합에 의해 초래되는 현상임을 함의한다.

모형2에서 저소득 가구 계층과 상위소득 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 이유는 통근시간을 짧게 만드는 동시에 상위소득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표 6-7> 참조) 등의 가구 속성들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모형4에서 저소득 가구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편도 통근시간이 중간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에 비해 각각 2.1분, 2.5분 길게 나타난 이유 역시 통근시간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위소득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졸 이하 학력 등의 개인 속성들, 낮은 임금·시간제 근로 등 일자리 속성들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모형4와 유사하게 상위소득 계층에서 통근시간이 오히려 짧게 나타난 모형5의 추정치는 통근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을 주로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주거환경이 주택 유형·주택 면적·주택 소유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교외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형5는 주택 유형·주택 면적·주택 소유 유형 및 통근수단 변수를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주거환경의 질이 동일한 경우, 주거지를 선택할 때 재정적인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위소득 계층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는 직장에서 약 1.4~1.5분 더욱 가까운 곳에 주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통근비용을 줄이고자 직장 근처에 주거를 마련하려는 이러한 음의 소득탄력성 효과는 낮은 지가·넓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함에 따라 통근비용이 증가하는 양질의 주거환경 수요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 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표 6-9>의 통근수단 변수의 추정치가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양상, 특히 동일한 통근수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에 비해 중간소득 가구, 중간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의 통근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추론 가능하다. 통근수단이 통근 거리를 설명하는 (measured) 좋은 대리변수임을 감안할 때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는 가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통근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가구 소득이 증가할 때 양질의 주거환경 수요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이 통근 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을 압도하게 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즉 낮은 통근비용과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통근비용과 양질의 주거환경 간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주거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위소득 계층은 교외 지역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고려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경제적 제약 탓에 어쩔 수

없이 양질의 주거환경보다는 통근시간 감소를 더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표 6-9〉 편도 통근시간 결정 요인의 가구 소득계층별 비교: OLS 분석 결과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4			모형5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가구별이 유형 더미 (비교: 외벌이, 무배우 가구주)	맞벌이 가구	1.814014 (2.24837) [0.420]	-0.724487 (0.88257) [0.412]	0.671428 (1.256089) [0.593]	1.933041 (2.031188) [0.341]	-0.489764 (0.789962) [0.535]	0.299153 (1.13099) [0.791]
	주택 유형 더미 (비교: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단독주택	1.163704 (2.038549) [0.568]	-1.071877 (1.104261) [0.332]	0.192134 (2.025062) [0.924]	1.868621 (1.683977) [0.267]	-0.932019 (0.957899) [0.331]
아파트		3.874622 (2.204629) [0.079]	0.751917 (1.045547) [0.472]	2.463778 (1.703868) [0.148]	3.926394 (1.873927) [0.036]	0.538398 (0.923265) [0.560]	1.612716 (1.556682) [0.300]
주거 면적 (m ²)		0.019770 (0.036573) [0.589]	0.006714 (0.013578) [0.621]	-0.042661 (0.015702) [0.007]	0.035883 (0.031893) [0.261]	0.005511 (0.011613) [0.635]	-0.035295 (0.015357) [0.022]
주거 소유 형태 더미 (비교: 월세, 무상주택)	자기 집	-0.681665 (1.952006) [0.727]	0.011322 (0.949599) [0.990]	2.508753 (1.946454) [0.198]	-2.141657 (1.689673) [0.205]	0.267119 (0.858733) [0.756]	3.674586 (1.895167) [0.053]
	전세	-0.590501 (2.229525) [0.791]	0.894549 (1.087134) [0.411]	0.368733 (2.048309) [0.857]	-1.523743 (1.887456) [0.420]	0.690424 (0.962513) [0.473]	1.643433 (1.989827) [0.409]
전체 가구원 수 (명)		-0.138610 (0.860329) [0.872]	-0.043122 (0.395758) [0.913]	-0.656171 (0.575542) [0.254]	-0.274051 (0.674357) [0.685]	0.037854 (0.352502) [0.914]	-0.431900 (0.533638) [0.418]
미취학 아동 비율 (%)		-0.139301 (0.068134) [0.041]	-0.013736 (0.0245) [0.575]	-0.042490 (0.041912) [0.311]	-0.133681 (0.058883) [0.023]	-0.023351 (0.02233) [0.296]	-0.031565 (0.037212) [0.396]
10세 미만 취학 아동 비율 (%)		-0.070224 (0.084461) [0.406]	-0.041853 (0.032661) [0.200]	-0.048192 (0.050845) [0.343]	0.029472 (0.072072) [0.683]	-0.027419 (0.027525) [0.319]	-0.004459 (0.046831) [0.924]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		-0.121992 (0.082528) [0.140]	-0.022918 (0.057504) [0.690]	-0.470818 (0.10192) [0.000]	-0.089720 (0.06192) [0.148]	-0.004140 (0.054577) [0.940]	-0.392353 (0.105358) [0.000]
남성 더미 (비교: 여성)		1.457591 (2.091568) [0.486]	1.064951 (1.148739) [0.354]	0.320813 (1.757417) [0.855]	2.366240 (1.840578) [0.199]	2.635725 (1.027634) [0.010]	2.011203 (1.641349) [0.221]

204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4			모형5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가구주 더미 (비교: 가구주의 배우자)		4.306556 (2.473897) [0.082]	1.631123 (1.157499) [0.159]	1.335034 (1.709742) [0.435]	3.905065 (2.170865) [0.072]	1.556650 (1.069992) [0.146]	1.010362 (1.615621) [0.532]
(만) 나이 (세)		-0.043040 (0.075923) [0.571]	0.052680 (0.044314) [0.235]	-0.085948 (0.068886) [0.212]	0.004548 (0.066933) [0.946]	0.059423 (0.039016) [0.128]	0.002410 (0.065647) [0.971]
배우자 있음(유배우) 더미 (비교: 미혼, 이혼, 사별)		-3.691065 (2.460805) [0.134]	-0.002627 (1.434438) [0.999]	0.632783 (2.277984) [0.781]	-2.268243 (2.059005) [0.271]	0.639523 (1.285567) [0.619]	0.683462 (2.130375) [0.748]
학력 더미 (비교: 중졸 이하)	고졸	-0.243378 (1.91825) [0.899]	2.120532 (0.998166) [0.034]	-2.541390 (2.044055) [0.214]	-0.461101 (1.662907) [0.782]	1.612251 (0.859816) [0.061]	-1.956425 (1.751818) [0.264]
	초대졸	-2.924246 (3.232435) [0.366]	3.256558 (1.27734) [0.011]	-0.997251 (2.26898) [0.660]	-1.608663 (2.744646) [0.558]	2.872971 (1.095514) [0.009]	-0.523721 (2.015679) [0.795]
	대졸	8.007737 (4.624267) [0.084]	4.368135 (1.40232) [0.002]	3.716125 (2.398716) [0.121]	7.248775 (4.058449) [0.074]	3.899337 (1.205639) [0.001]	3.122029 (2.144949) [0.146]
	대학원 이상 졸	-2.974143 (8.841759) [0.737]	5.802052 (2.697535) [0.032]	4.268271 (2.817304) [0.130]	2.361761 (7.790239) [0.762]	5.625958 (2.320086) [0.015]	3.774451 (2.555678) [0.140]
건강 상태(3점 척도): 1. 좋음, 2: 보통, 3: 나쁨		1.120039 (1.027008) [0.276]	1.004966 (0.485434) [0.038]	0.008555 (0.699069) [0.990]	1.000359 (0.888653) [0.261]	0.593576 (0.428164) [0.166]	0.077738 (0.644408) [0.904]
근로 형태 더미 (비교: 시간제 근로 (상용·임시·일용))	상용 (전일)	6.283773 (2.901503) [0.031]	5.830588 (1.511613) [0.000]	5.804597 (2.526483) [0.022]	3.808947 (2.590324) [0.142]	2.700644 (1.236905) [0.029]	1.715137 (2.198472) [0.435]
	임시·일용 (전일)	6.219531 (2.554651) [0.015]	5.239344 (1.637963) [0.001]	5.122534 (2.654777) [0.054]	3.725004 (2.296202) [0.105]	2.386741 (1.339765) [0.075]	-0.344268 (2.320618) [0.882]
	자영업자	-0.418631 (3.312505) [0.899]	-0.308793 (1.628913) [0.850]	1.029073 (2.627631) [0.695]	2.034071 (2.93229) [0.488]	-0.768075 (1.346896) [0.569]	-1.447741 (2.279263) [0.525]
지난주 주업 근로시간 (시간)		-0.051969 (0.056434) [0.357]	-0.122784 (0.025554) [0.000]	-0.069331 (0.039203) [0.077]	-0.029606 (0.049284) [0.548]	-0.102188 (0.02263) [0.000]	-0.038841 (0.03496) [0.267]

종속변수: 1일 편도 통근시간(분)		모형4			모형5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개인 월평균 소득 (만 원)		0.013809 (0.02056) [0.502]	0.010315 (0.004622) [0.026]	0.006950 (0.004328) [0.108]	0.000575 (0.018062) [0.975]	0.010484 (0.004092) [0.010]	0.002012 (0.003929) [0.609]
통근 교통수단 더미 (비교: 걷기)	자전거				5.803867 (3.320444) [0.081]	5.802483 (1.398963) [0.000]	7.605594 (2.384381) [0.001]
	개인 교통				11.071279 (1.706258) [0.000]	11.410223 (0.72921) [0.000]	13.762983 (1.021526) [0.000]
	공공 교통				24.951983 (1.667886) [0.000]	26.064925 (0.919333) [0.000]	26.541159 (1.377607) [0.000]
	기타 교통				15.359348 (3.07995) [0.000]	19.922013 (1.531312) [0.000]	24.771266 (2.338165) [0.000]
	복수 교통수단				26.250952 (3.317479) [0.000]	20.276654 (2.026193) [0.000]	26.199007 (2.529437) [0.000]
통제변수							
통근 요일 더미: 월요일~일요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거주 지역 더미: 16개 광역시도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비)농가 가구 더미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더미, 직업 더미: 대분류 기준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Adjusted R2		0.217691	0.165769	0.183426	0.38492	0.3094	0.2965
관측치 수		1,640	8,232	4,650	1,640	8,232	4,650

주: 1) 상기한 분석 결과는 편도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OLS 분석 결과임: ()는 해당 가구별로 조정된(clustered)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내고 []는 p-value를 의미함.

2) 다만 <표 6-8>과는 달리 전체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가구, 고소득 가구를 각각 분리하여 개별 샘플로 간주하고 <식 6-1>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3) 상기한 표의 모형4와 모형5는 통제변수의 내용 및 형태 측면에서 <표 6-8>과 동일.

4) 그 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표 6-8>의 주2~주5 참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우리나라에 가구책임가설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양상 역시 가구 소득 계층별로 상이한 점 역시 관찰된다. <표 6-8>의 모형5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비율 변수 및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띠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전체 가구원 수에서 미취학 아동 수 혹은 돌봄 필요 가구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의 통근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 가구책임가설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요한 논거일 수 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혹은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증가에 따른 통근시간 감소 수준이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 소득계층별로 샘플을 분리하여 분석한 <표 6-9>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비율 변수 및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변수의 추정치는 가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음(-)의 부호를 띠고 있지만 모든 가구 소득계층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통근시간은 미취학 아동 및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증가에 따라 모두 감소하는 한편, 상위소득 가구 가구원의 통근시간은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증가에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하며, 중간소득 가구 가구원의 통근시간은 미취학 아동 및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증감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의 경우에만 긴 통근시간이라는 비효율을 감내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상격차가설 역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6-8>의 모형5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통근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긴 양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 조건을 고려한 통근시간 감내 수준은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이하다. <표 6-9>에 따르면 이들 근로 조건 변수의 추정치는 가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표 6-8>의 해당 변수 추정치와 동일한 부호를 띠고 있지만, 오로지 중간소득층 가구원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의 경우 근로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생활 영위를 위해 긴 통근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 반면 가구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가구의 경우 여유로운 가구의 경제력에 기초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통근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¹⁰⁾

2. 소득계층 간 통근수단의 상이성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통근수단 사용에서도 가구 소득계층 간 격차가 관찰되었다. 통근 교통수단을 종속변수로 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 결과인 <표 6-10>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가 개인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할 확률은 중간소득 가구에 비해 약 8.75%포인트,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는 약 10.5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할 확률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중간소득 가구에 비해 약 5.96%포인트, 고소득 가구에 비해 10.11%포인트 높았다. 저소득 가구 계층이 상위소득 계층에 비해 통근수단으로 개인 교통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공공 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분석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는 통근수단 선택 혹은 통근수단의 접근성에 가구 수준의 경제적 제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의한다.

10) 물론 저소득 가구 가구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이 충분한 편차(variation)를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 낮은 임금수준과 짧은 근로시간에 몰려 있는 양상, 고소득 가구 가구의 역시 대부분이 높은 임금수준과 긴 근로시간에 몰려 있는 양상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기 힘든 가구 소득계층별 데이터 특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6-10〉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 교통수단 사용 격차: 다항로짓분석 결과

종속변수: 통근 교통수단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걷기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094390 (0.010841) [0.000]	-0.089267 (0.012102) [0.000]	-0.048049 (0.012778) [0.000]	-0.019922 (0.013081) [0.128]
	고소득	-0.119433 (0.012128) [0.000]	-0.104481 (0.014656) [0.000]	-0.056946 (0.015813) [0.000]	-0.005986 (0.017211) [0.728]
자전거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009571 (0.004843) [0.048]	-0.010322 (0.004678) [0.027]	-0.004082 (0.004557) [0.370]	0.000468 (0.004184) [0.911]
	고소득	-0.014938 (0.005441) [0.006]	-0.017453 (0.005453) [0.001]	-0.007018 (0.005598) [0.210]	0.001947 (0.005361) [0.716]
개인 교통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212607 (0.02236) [0.000]	0.189378 (0.025225) [0.000]	0.124558 (0.027494) [0.000]	0.087531 (0.028771) [0.002]
	고소득	0.279162 (0.023628) [0.000]	0.234593 (0.02781) [0.000]	0.168362 (0.030625) [0.000]	0.105564 (0.035009) [0.003]
대중교통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112251 (0.017237) [0.000]	-0.099735 (0.018419) [0.000]	-0.076044 (0.020107) [0.000]	-0.059583 (0.021543) [0.006]
	고소득	-0.147720 (0.018658) [0.000]	-0.133965 (0.020827) [0.000]	-0.123714 (0.022767) [0.000]	-0.101072 (0.027016) [0.000]
기타 교통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004442 (0.007664) [0.562]	0.006109 (0.007597) [0.421]	0.005497 (0.007721) [0.477]	-0.002765 (0.006061) [0.648]
	고소득	-0.028487 (0.008532) [0.001]	-0.004090 (0.00909) [0.653]	0.002112 (0.009147) [0.817]	-0.008266 (0.008474) [0.329]
복수 교통수단 (비교: 저소득 가구)	중간소득	0.008046 (0.008264) [0.33]	0.003836 (0.009048) [0.672]	-0.001879 (0.009535) [0.844]	-0.005729 (0.009858) [0.561]
	고소득	0.031416 (0.008297) [0.000]	0.025396 (0.009559) [0.008]	0.017204 (0.010153) [0.09]	0.007813 (0.011555) [0.499]

종속변수: 통근 교통수단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통제변수: 통근 요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변수: 가구 속성 (가구별이 유형, 주택 유형, 주거 면적, 주거 소유 유형, (비)농가 유형,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미취학 가구원 비율, 10세 미만 취학 가구원 비율,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통제 안 함	통제	통제	통제
통제변수: 개인 속성 (성, 가구주와 관계 유형, 나이, 유배우 유형, 학력, 건강 상태)	통제 안 함	통제 안 함	통제	통제
통제변수: 일자리 속성 (근로 형태, 근로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 산업, 직종)	통제 안 함	통제 안 함	통제 안 함	통제
Pseudo R2	0.015	0.0952	0.1482	0.1863
N	14522	14522	14522	14522

주: 1) 상기한 분석 결과는 통근에 사용된 교통수단을 종속변수로 둔 다항로짓분석에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임: ()는 해당 가구별로 조정된(clustered)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내고 []는 p-value를 의미함.

2) 상기한 표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는 통제변수의 내용 및 형태 측면에서 <표 6-8>과 동일.

3) 그 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표 6-8>의 주2~주5 참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이러한 교통수단들과는 달리 걸어서 통근하는 확률 및 자전거로 통근하는 확률에 대한 저소득층과 상위소득 계층 간 격차는 다양한 일자리 특성이 통제되면서 완전하게 사라졌다. 모형1에서는 중간소득 가구에 비해 약 9.44%포인트,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는 약 11.94%포인트 낮았던 저소득 가구 가구원이 걸어서 통근하는 확률이 모형4에서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모형1에서 중간소득 가구에 비해 약 0.49%포인트, 고소득 가구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던 저소득 가구 가구원이 자전거를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확률은 모형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부호마저 반대로 바뀌었다. 이는 상위소득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가 낮은 임금수준, 시간제 근로, 임시·일용직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제공받는 근로자 개인은 긴 통근시간이라는 비효율을 감내할 유인이 없어 짧은 통근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제5절 정책적 함의

신체적·물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일컫던 전통적인 의미의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교통서비스의 제약으로 활동이 축소되고 심지어 이러한 활동의 축소로 삶의 질이 저하된 사람을 의미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통약자, 특히 상위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통근시간 수준 및 결정 요인을 엄밀하게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이동의 어려움을 시간 분석으로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통근시간을 기록한 모든 가구주 및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1일 평균 편도 통근시간은 34.5분으로서, 중간소득 가구의 가구원보다 약 1분, 고소득 가구의 가구원보다 약 2.7분 짧았다.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의 통근시간이 짧은 이러한 양상은 우리 주위에서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가구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로 조건 등 통근시간을 짧게 만드는 각종 요인들에 저소득 가구 계층이 더 크게 노출된 측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시간조사에서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되는

돌봄 필요 가구원의 비중이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은 신체적·물리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이 교통서비스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거 전통적인 개념의 교통정책이 ‘간접적으로나마’ 저소득 가구 계층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교통약자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돌봄 필요 가구원 비율에 의해 저소득 가구 가구원이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크게 제약을 받을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으로서의 교통약자를 ‘교통서비스 선택에 제약을 받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자’ 수준, 즉 광의적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통근수단 선택에서도 소득계층 간 상이함이 관찰되었다. 저소득층의 가구주 혹은 배우자일수록 걸어서 통근하는 비중, 자전거를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자가용·오토바이 등 개인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통근수단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종 통근수단 결정 요인을 통제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개인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할 확률은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8~10%포인트 낮은 반면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확률은 5~10%포인트 높았다. 이는 가구 수준의 경제적 제약이 통근수단 선택 혹은 통근수단의 접근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교통정책의 대상이 신체적 장애를 지닌 개인에서 사회적 차원의 교통약자로 확대되어 교통비의 절감, 다양한 공공 교통수단의 제공, 교통수단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조치,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통근수단까지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 가구원에 비해 중간소득

가구, 중간소득 가구 가구원에 비해 고소득 가구 가구원의 통근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 결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근수단을 통제한 결과이므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질의 주거환경 수요에 대한 양의 소득탄력성이 통근비용에 대한 음의 소득탄력성을 압도하는 까닭에 통근 거리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즉 낮은 통근비용과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통근비용과 양질의 주거환경 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주거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위 소득계층은 교외 지역의 양질의 주거환경 선택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저소득층은 경제적 제약 탓에 주거지 결정 시 양질의 주거환경보다는 통근시간 감소를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통정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교통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협의적 의미의 교통서비스 정책은 물론 현 정부의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결정 제약이 완화될 수 있게 하는 주거비 경감정책,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들을 실효성 있게 돌볼 수 있는 복지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 7 장

혼자 보내는 시간과 사회적 고립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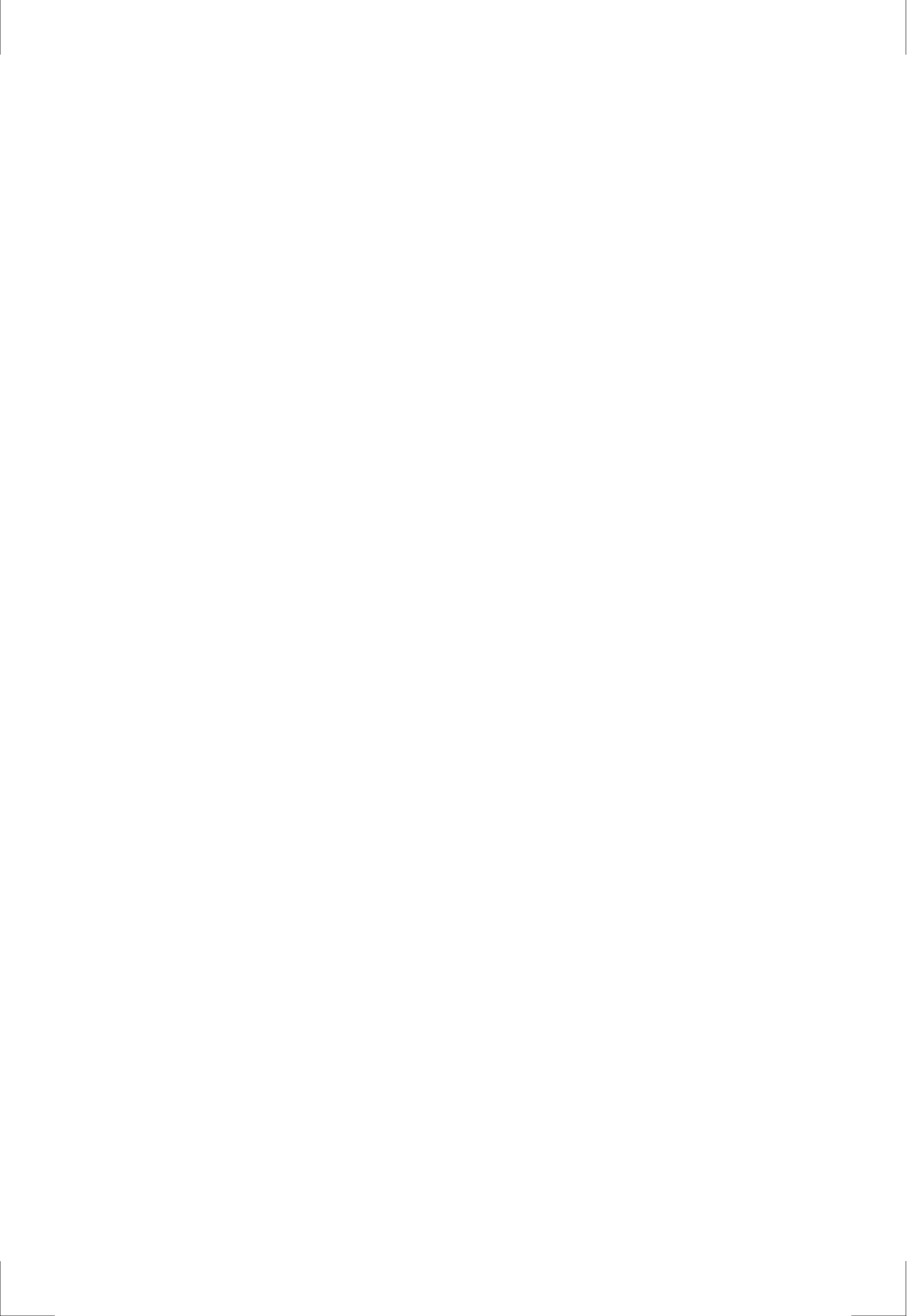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7

혼자 보내는 시간과 << 사회적 고립 위험

제1절 분석의 주제와 목적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작아서 사회적 자본 형성이나 정신적 건강에서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다. 우선 외로움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중요한 자원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브리검영 대학교 줄리앤 홀트 룬슈타트 박사 등은 혼자 살거나 혼자 살지 않더라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PLoS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홀트 룬트슈타트 박사는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보다 사교생활(social life)이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라고 설명하였다(Pinker, 2015).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주로 가구원이 의식적 수준에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이 없이 보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수준은 집안 체류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집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사회적 고립은 결혼 여부, 혼자 사는가 여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친구의 숫자, 가입한 동호회 숫자, 종교활동 여부 등으

로 지표화하는 개념이다. 앤드루 스텝토 교수의 영국노화장기연구¹¹⁾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집단은 연구 분석 기간 동안 21.9%가 사망한 반면 고립도가 낮거나 중간인 집단의 사망률은 12.3%에 불과하였다. 나이와 성, 재산과 학력, 결혼 상태 등을 통제하여도 사회적 고립의 사망률에 대한 기여는 유효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적 고립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자살, 건강, 사망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혼자 보내는 시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미리(2013)는 청소년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심리 상태에 준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2007)은 인터넷 중독 영향 요인 분석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따르면 노인 중 사회활동이 전혀 없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 노인의 비중이 25.9%인데, 11.1%는 완전 고립, 14.8%는 거의 고립 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고립은 취업, 단체 참여, 봉사활동, 가사 지원 여부, 대출 등 경제 지원을 해줄 지인 유무, 이야기 상대 유무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이 중 1가지만 해당하면 '거의 고립',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완전 고립'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 중에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찰되는 1인 가구는 인적 교류와 연결망이 취약하고 우울감, 외로움,

1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69&board_cd=INDX_001에서 2017. 9. 4. 인출.

고립감,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양식 특히 식생활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 이한나, 박단비(2012)는 장애인 가구의 고립감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인구집단은 고립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이다.

사회적 고립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희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위험이 더 큰지에 대한 계층별 비교 분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가 소수 발견될 뿐이다. 하지만 앞서 해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물리적 고립, 혼자 보내는 시간 그 자체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유시간 이전에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혼자 보내는 시간과 관련된 연구라 할 수 있는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한정된다.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맞벌이 가구의 부부 공유시간, 자녀와의 공유시간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이다(Kingston & Nock, 1987; Neilson & Stanfors, 2017).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 아동과 보내는 공유시간,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의 변화 등이 분석 대상이고 이 공유시간에 노동시간과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유형의 연구 골자이다.

Neilson과 Stanfors(2017)의 연구에서는 부부 또는 커플의 공유시간이 긴 것을 더 가치롭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맞벌이 부부 또는 커플의 공유시간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공유시간이 결혼생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물론 공유시간의 질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공유시간의 분석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 공유시간의 개념과 측정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의 일관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Neilson & Stanfors, 2017, p. 3). 심지어 개념의 조작화 등의 차이로 공유시간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상이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아동양육시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공유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부와 모의 차이를 살피면서 모의 홀로 양육시간 소요가 더 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로 성별 차이를 분석의 핵심으로 하면서 맞벌이 부부 중 모의 경우 덜 자고 덜 놀더라도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늘린다(Neilson & Stanfors, 2017, p. 3)고 보고하였다. 미국에서 학력에 따라 공유시간에 대한 가치 부여와 공유시간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공유시간의 구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 Davey와 Paolucci의 연구(1980)에 따르면 가족 공유활동은 레크리에이션, 놀이, 방문과 같은 사교활동이 약 61%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함께 식사하기가 약 15%로서 사교활동과 가족 식사가 전체 가족공유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외숙 등, 2010, p. 9에서 재인용). 한편 일부 연구는 가족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Bryant와 Zick(1996)은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통적인 자녀 돌보기 시간은 감소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증대한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활동이 성 역할 분리적인 성격이 있는 점을 밝힌 바 있다(김외숙 등, 2010, p. 10에서 재인용). 상기 연구는 공유시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공유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공유시간을 가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고립 위험을 밝히고 정책적 개입 지점을 밝히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가족공유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가구 유형이나 고립이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취약인구집단의 공유시간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도 공통적인 한계이다.

공유시간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한국에서 가족의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이승미의 연구에서부터로 추정된다. 해당 연구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시간일지와 질문지조사를 수행한 연구로, 취업 여부에 따라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손문금, 2011, p. 4에서 재인용). 동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유시간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공유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기타 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이러한 자료 부족도 관련 연구의 진행에 장애가 되었다. 한국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한 시간과 행동 내용에 대한 조사가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이러한 분석이 이전에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손문금, 2011, p. 4).

김외숙 등(2010)의 연구는 가족 공유 식사, 가족 공유 가사노동, 가족 공유 여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 시간 분석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개인 시간 분석과 달리 이러한 분석이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중요 방식임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유시간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로는 손문금(2011)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시장노동 외 무급노동과 여가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조건, 가족 생활 주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부의 공유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짧게 요약하면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이 홀벌이 부부의 그것보다 짧다는 것, 그리고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무급노동과 여가활동 공유시간이 적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여가활동 공유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11, p.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공유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대개 저소득층을 초점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앞서 저소득층의 면담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의 공유시간 부족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공유시간보다 더 위험하다고 언급되었던 객관적 고립, 즉 혼자 보내는 시간이 다른 소득계층 대비 더 길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 저소득 가정 모의 취업이 더 절실하고 반면 가사돌봄서비스 구매력은 낮아 이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소득층은 사회적 관계 맺음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다. 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금전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필요한 시간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고 또한 가구 형편으로 수치심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 맺기에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과 가구 밖과의 사회적 교류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아동, 노인, 1인 청년 가구와 같은 취약집단의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방법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방문자도 가구원 중 누구와의 공유도 없이 보낸 시간으로 정의, 측정되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란 주 행동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함께한 사람’¹²⁾은 공간을 같이하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 행동을 같이한 사람(배우자, 만 10세 미만 손자녀, 만 10세 이상 손자녀, 부모, 기타 아는 사람으로 구분)을 말하며, 응답자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응답자를 아는 경우에 한한다. 즉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면이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한 경우,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등은 혼자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친구와 전화 통화, 문자 대화, 친구와 수업 듣기, 보험 텔레마케터와의 통화, 아이 학원까지 데려다주기 등은 혼자 한 행동으로 구분된다. 아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 학원에서 친구 옆에 앉아 강의를 듣는 경우 이러한 시간은 혼자 보낸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도 그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면 이 시간도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의식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누군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인 반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조작적 정의라 하겠다.

방문자 분석은 주로 누가 방문하였는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한 부수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는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방문자

12) 돌보는 행동을 함께한 것이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함께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1시간 이상의 경우만 기록되고 방문자의 범주도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 다른 곳에 사는 자녀, 다른 곳에 사는 부모, 다른 곳에 사는 형제자매, 가사(요양)도우미, 기타(친구, 이웃, 학습지 교사 등)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 범주에서 가사도우미의 경우 무료 서비스로 지원되는 경우와 유료로 서비스를 구매를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끝으로 외출도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기제가 될 수 있어서 외출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면담 과정에서 언급된 종교활동에 소비한 시간도 저소득층과 기타 소득계층의 시간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사례 가구의 가구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으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우려되는 1인 가구의 청년과 노인, 그리고 3인 가구의 가구원 중 아동을 초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같이 혼자 보내는 영향이 더 부정적일 위험이 있는 인구집단의 혼자 보내는 시간도 분석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날이나 근무하는 날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고 쉬는 날에도 유사하다. 노인의 경우는 저소득 노인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장애인은 소득계층별 시간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았다. 아래의 분석은 가구 구성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서로 다른 조건 시간 사용의 결과값이어서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표 7-1〉 개인 특성별 혼자 보내는 시간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아 동	취업(학생)+근무(등교)***	1,216 (36)	1,261 (137)	1,292 (40)	1,259 (213)
	미취업(학생 아님 포함)이거나 근무(등교) 외***	1,190 (874)	1,190 (3,957)	1,201 (1,980)	1,193 (6,811)
	전체***	1,192 (910)	1,192 (4,094)	1,204 (2,020)	1,195 (7,024)
노 인	취업+근무***	1,156 (1,271)	1,175 (709)	1,187 (149)	1,165 (2,129)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1,153 (4,639)	1,133 (1,913)	1,134 (547)	1,146 (7,099)
	전체***	1,153 (5,910)	1,144 (2,622)	1,146 (696)	1,150 (9,228)
장 애	취업+근무***	1,163 (20)	1,302 (13)	1,095 (2)	1,206 (35)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1,153 (152)	1,187 (51)	1,217 (16)	1,168 (219)
	전체***	1,155 (172)	1,215 (64)	1,197 (18)	1,175 (254)

주: 1)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2) 아동-만 19세 미만(단, 조사 대상에 만 10세 미만은 제외됨).

3) 노인-만 65세 이상.

4) 장애-'돌봄 필요 사유'에서 '장애'로 응답한 경우.

5)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참고로 아동의 경우 한부모 2인 가구에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평균 1,220분으로 기타 가구의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길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 수가 작아서 소득계층별 비교는 어려웠다.

〈표 7-2〉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초·중학생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1,187(40)	1,184(218)	1,209(116)	1,192(374)

주: 1) 초·중학교 재학인 경우 연령이 만 10~13세, 중학교 재학인 경우 만 10~17세로 나타남.

2)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3인 가구로 한정하여 소득계층별 돌봄이 더 중요한 초·중학생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더 짧았다. 이 결과는 일반적 우려와 상반된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기록에서 학원 등에서와 같이 모르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한 사람의 인식 대상은 응답자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경우에 해당, 즉 모르는 사람과 함께한 행동은 '혼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돌보는 행동을 함께한 것이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함께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보다 기타 소득계층의 경우 아동이 학습활동 시간으로 인하여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아동의 학교 외 학습시간을 비교하면 고소득층일수록 길다.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소득계층별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비교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

〈표 7-3〉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학교 외 학습시간***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학교 외 학습시간 (학원 수강, 스스로 학습)	116 (40)	157 (218)	195 (116)	165 (374)

주: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7-4〉 부부 포함 3인 가구에서 초·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학교 외 학습시간 제외)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초·중학생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학교 외 학습시간 제외)	1,071 (40)	1,027 (218)	1,014 (116)	1,027 (374)

주: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가구 구성도 통제하여 비교하고자,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우려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년은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체로 길었으나 노인은 저소득층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짧았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취업하였으나 일하지 않은 날의 경우 저소득층이 중산층 노인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나 고소득층 노인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았다.

〈표 7-5〉 1인 가구 유형별 혼자 보내는 시간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청년 1인 가구	취업+근무***	1,261 (54)	1,264 (403)	1,252 (66)	1,262 (523)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1,260 (284)	1,216 (203)	1,130 (34)	1,238 (521)
	전체***	1,260 (338)	1,251 (606)	1,221 (100)	1,251 (1,044)
노인 1인 가구	취업+근무***	1,283 (294)	1,324 (129)	1,291 (11)	1,296 (434)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1,262 (1,658)	1,245 (203)	1,279 (35)	1,260 (1,896)
	전체***	1,265 (1,952)	1,276 (332)	1,282 (46)	1,267 (2,330)

주: 1) 청년 1인 가구-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

2) 노인 1인 가구-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3) 취업+근무-경활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4) ***: 소득계층별 평균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저소득 노인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았던 것은 방문자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 방문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각종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방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방문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 노인 가구 방문자 구성에서는 가사도우미와 자녀 방문이 많다. 아동 가구의 경우 중상층에서 방문자가 있

는 가구 비율이 높고 방문자 구성에서 보면 저소득층에서는 자녀, 상층에서는 부모의 비율이 높고 가사도우미의 경우 중상층에서만 방문자로 응답한 가구가 나타났다. 즉 높은 비용의 가사도우미의 도움은 중상층 가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 방문자가 있었던 비율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청년 1인 가구	취업+근무***	3.9(2)	7.7(30)	9.5(9)	7.6(41)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9.9(35)	7.9(19)	12.2(4)	9.3(58)
	전체***	9.1(37)	7.7(49)	10.1(13)	8.4(99)
노인 1인 가구***		24.8(491)	21.5(74)	12.9(8)	24.0(573)
부부+10세 이하 아동 가구(3인)***		4.9(10)	10.4(104)	13.9(42)	10.7(156)

- 주: 1) 청년 1인 가구-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
- 2) 노인 1인 가구-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 3)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 4) ***: 소득계층별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표 7-7〉 방문한 사람의 구성

(단위: %, 괄호 안은 표본 수)

	청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부부+아동 3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부부+아동 3인 가구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저소득층	기타 소득층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	2.4	1.2	1.7	1.0	2.8	0.0	1.8
다른 곳에 사는 자녀	0.0	32.6	3.5	33.4	27.6	37.0	1.9
다른 곳에 사는 부모	5.9	0.5	49.7	0.3	1.6	12.5	51.5
다른 곳에 사는 형제자매	0.9	2.7	6.5	2.4	4.1	4.3	6.6
가사(요양)도우미	1.7	8.8	4.5	9.6	4.3	0.0	4.7
기타(친구, 이웃, 학습지 교사 등)	89.1	54.2	34.1	53.3	59.8	46.3	33.5
전체	100.0 (99)	100.0 (573)	100.0 (156)	100.0 (491)	100.0 (82)	100.0 (10)	100.0 (146)

- 주: 1) 청년 1인 가구-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
- 2) 노인 1인 가구-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 3) 부부+아동 3인 가구-부부와 만 10세 이하 아동으로 구성된 3인 가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도 조직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저소득층에서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종교활동에 대한 의존이 비저소득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유는 종교활동의 경우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종교활동 외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적은 것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소득층과의 면담에서도 이 점은 언급된 바 있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요 시간도 더 길었다. 다만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중산층의 종교활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성인의 종교활동시간 비교

(단위: %,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취업+근무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전체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종교활동 유무	없음	92.8	95.9	96.4	85.9	87.4	87.8	87.9	92.1	92.9
	있음	7.3	4.1	3.6	14.1	12.6	12.2	12.1	7.9	7.1
	전체	100.0 (3,267)	100.0 (11,865)	100.0 (6,785)	100.0 (7,967)	100.0 (11,383)	100.0 (5,685)	100.0 (11,234)	100.0 (23,248)	100.0 (12,470)
종교활동 하는 경우 시간량	N	(247)	(509)	(260)	(1,190)	(1,472)	(745)	(1,437)	(1,981)	(1,005)
	평균	96	88	84	134	144	136	127	128	120
	최소값	10	10	10	10	10	10	10	10	10
	최대값	570	520	370	710	760	860	710	760	860

주: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혼자 보내는 시간, 그리고 고립에 영향을 주는 활동 중 하나는 집 밖에서 어느 정도 체류하는가이다. 집 밖 체류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 취업자는 저소득층에서 집 밖(근무 외) 체류시간이 더 길었다. 반면 비취업자의 경우는 이 시간이 저소득층에서 짧았다. 노인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¹³⁾

13) 일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를 제외하고 집 밖 체류시간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더 짧았다. 즉 저소득 노인의 고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르게 이해한다면 저소득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낮은 수준이다.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기타 소득계층의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 체류시간이 길다. 그리고 상층 아동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기타 장소에 있는 시간은 길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학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표 7-9〉 행위 장소별 체류시간

(단위: 분, 괄호 안은 표본 수)

		본인 집			직장, 학교			남의 집, 식당, 주점, 기타 장소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청년 1인 가구	취업+근무	705 (54)	683 (403)	683 (66)	407 (54)	520 (403)	516 (66)	196 (54)	125 (403)	123 (66)
	미취업이거나 근무 외	879 (284)	950 (203)	909 (34)	229 (284)	34 (203)	0 (34)	225 (284)	349 (203)	376 (34)
	전체	855 (338)	755 (606)	740 (100)	254 (338)	388 (606)	386 (100)	221 (338)	186 (606)	187 (100)
노인 1인 가구		1,123 (1,952)	1,014 (332)	950 (46)	26 (1,952)	117 (332)	84 (46)	228 (1,952)	237 (332)	316 (46)
부부 3인 가구의 초·중학교 재학 아동		921 (40)	870 (218)	886 (116)	324 (40)	294 (218)	266 (116)	119 (40)	194 (218)	203 (116)
부부+10세 이하 아동 가구(3인 가구)의 아동		883 (8)	921 (28)	837 (22)	286 (8)	249 (28)	262 (22)	192 (8)	176 (28)	245 (22)

주: 1) 청년 1인 가구-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

2) 취업+근무-경황 상태가 '일을 하였음'이면서 근무일(등교일) 여부가 '근무 또는 등교'인 경우.

3) 노인 1인 가구-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4) 부부+10세 이하 아동 3인 가구-만 10세 미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즉 만 10세인 아동의 평균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저소득 노인을 제외하고는 저소득 아동과 청년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 이들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높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방문하는 자녀와 도우미의 영향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짧아도 노인이 스스로 집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층

의 노인과 비교하여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계층, 특히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고립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5절 정책적 함의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외 학습시간이 짧아서 고소득층 아동과 비교하여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 시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인 청년과 노인 가구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청년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고 반면 저소득층 노인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청년의 경우 저소득층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면담에서도 취업 준비로 또는 유급노동시간으로 청년층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 특히 외식비 등 사회적 관계의 비용을 고려하면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 판단된다.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가사도우미 방문이 더 많았다. 반면 아동 가구의 경우 중상층 가구에서는 방문자도 많았고 가사도우미의 방문도 더 빈번하였다.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 아동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노인의 경우 생업을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집 밖 체류시간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더 짧았다. 즉 저소득 노인의 고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의 경우, 저

소득층의 아동은 기타 소득계층의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 체류시간이 길다. 그리고 상층 아동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기타 장소에 있는 시간은 길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요시간도 더 길었다.

저소득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에 한정하기보다는 바로 위 소득계층까지 포괄하여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의 경우 학교 밖의 활동 기회가 제한적인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방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사회 참여적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하여 발전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 기회가 보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저소득층 외 일반 소득계층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고립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노인의 고립 위험을 다소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빈곤층 외 기타 소득계층 노인들의 고립과 그 부정적 영향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경향을 넘어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제공방식을 보완하더라도 조금 더 확대하여 노인들의 집 밖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결국 의료비 등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밖으로 이동하여 제공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성이 낮은 노인이 있거나 또는 재가 외 서비스 제공이 예산 측면에서 쉽게 확대하기 어렵다면 전화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8 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해석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과제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해석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생활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구매가 어려운 집단이다. 각종 공적, 사적 지원으로 욕구 충족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는 기초욕구를 결국 개인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메꾸어낼 위험이 크다.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줄이고 시간으로 소득의 부족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의 삶을 이해하는데 생활시간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생활시간 분석은 기존 분석에서 놓친 욕구 미충족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시간 압박의 위험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 간병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동과 고립 위험을 통근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분석에 앞서 해외 주요국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을 위의 주제를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유급노동시간이 짧았다. 하지만 각국의 고용불안정성에 따라 저소득층과 기타 소득계층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상이하였다. 한편 돌봄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는 각국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적 국가의 경우 여성 대비 남성의 돌봄시간이 더 짧았다. 북유럽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등 각종 정책의 영향으로 성별 돌봄

시간 차이는 더 작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국가에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요는 각국의 저소득층 생활시간은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정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 보수주의적 문화, 사회서비스 발달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급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남성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노동시간이 길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짧은 대신, 상당한 시간을 가사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소득의 부족은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돌봄노동을 더 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주중에는 고소득층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이 길었다. 저소득층 부의 아동 돌봄이 고소득층과 비교하여 더 부족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계층별 총 노동시간을 볼 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총 노동시간의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부담은 주중보다 주말에 가중되고 있었는데 저소득층 여성은 다른 계층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커서 다른 계층의 총 노동시간을 따라잡거나 앞서게 만들고 있었다. 다른 특이 사항으로는 주말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직접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고소득층은 직접 돌봄노동 대신 간접 돌봄노동의 형태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간접 돌봄노동 가운데 교제와 여가는 부모의 시간과 금전적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간접 돌봄노동시간은 중간소득이나 고소득계층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생활 결핍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아동의 돌봄은 그 시간과 시간 내용의 전체를

고려할 때 부모의 걱정 돌봄, 양질의 돌봄에서 계층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소득과 학비 부담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아동의 문화적 기회의 차이도 계층의 대물림에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간호간병 부담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간호, 간병시간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간호, 돌봄시간 소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3.8%에 해당된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돌봄 필요 가구 중 25.5%나 되었다. 전 가구의 약 1% 정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인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 필요 가구원 외 성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도 가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돌봄 부담이 클 위험이 있다. 가구 규모가 작으면 가구의 총돌봄시간은 적었으며 심지어 돌봄 필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돌봄시간은 거의 0에 가까웠다. 이는 돌봄 여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가구의 돌봄 필요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한다. 치매 외 중풍과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돌봄시간 부담이 적지 않아 이 질환군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돌봄노동시간이 0시간인 가구가 더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외부 서비스 구매나 여타 가구원 등 지지망 내 지인들의 여력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노동시간이 0 이상인 가구의 경우 돌봄자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 돌봄자의 개인 유지, 수면 등의 시간이 짧고 일시간과 가정 관리의 시간은 길어서 해당 가구의 돌봄 부담이 매우 가중될 위험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돌봄자의 개인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돌봄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많

은 준고령자라는 것이다. 즉 돌봄노동의 부담이 매우 클 위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빈곤층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방문자가 더 많아서 오히려 가구 방문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수혜가 더 큰 것으로 짐작된다.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거를 찾아 원거리 통근을 할 위험이 있고 편리한 교통편 이용 가능성도 낮아서 활동이 위축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 가구의 통근시간 부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의 통근시간이 짧았다. 하지만 통근시간이 짧은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특성이 반영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금 먼 곳으로 통근한다 하여도 그리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니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 가구에는 아동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확률이 높아서 멀리 이동하는 유급노동을 찾기 어려운 점이 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저소득층은 짧은 통근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각종 요인들에 보다 크게 노출된 것이다. 한편 저소득계층은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자가용과 같은 개인 교통을 통근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이 점도 먼 유급노동 일자리나 교외의 먼 거주지 등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 위험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외 학습시간이 짧아서 고소득층 아동과 비교하여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학교 밖의 학습시간, 즉 학원 등에서의 시간을 제외하면 역시 저소득층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인 청년과 노인 가구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청년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고 반면 저소득층 노인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방문도 많았으나 가사도우미 방문이 타 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가구의 경우 중상층 가구에서는 방문자도 많았고 가사도우미의 방문도 더 빈번하였다.

노인의 경우 일 공간을 제외하고 집 밖 체류시간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더 짧았다. 즉 저소득 노인의 고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기타 소득계층의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 체류시간이 길다. 그리고 상층 아동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기타 장소에 있는 시간은 길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요 시간도 더 길었다.

저소득층은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시간 부담이 더 가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돌봄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돌봄시간 부담이 매우 컸고 주말 유급노동의 영향도 저소득층에서 더 컸다. 한편 간접 돌봄시간은 저소득층에서 짧아서 저소득층 아동은 문화적 경험 등 집 밖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소득층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더 많고 반면 가구 규모는 작아서 가구원의 간호·간병 부담도 크다. 서비스 구매력도 낮은 저소득층은 돌봄자의 개인유지시간이 짧아 수면 부족 등의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간병 부담은 해당 서비스가 시장 가격이 높아서 중간 소득 계층까지도 간호·간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저소득층은 다행스럽게 통근시간이 짧았다. 오히려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계층의 통근시간이 더 길었다.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거나 좋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가구의 통근시간이 더 긴 것이다. 저소득층은 가구 내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고 기대 임금도 낮아서 먼 거리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저소득계층은 대체로 혼자 보내는 시간도 길고 집 밖에서의 활동시간도 짧았다. 저소득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관계의

위축, 고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이유로 방문자가 많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은 집 밖의 활동시간이 짧았다. 중간소득계층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시간 압박, 생활상의 고립 등은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대체로 더 위험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 결과의 비추어 보면 중간소득계층까지도 돌봄의 부담과 고립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의 기획과 확충에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과제

본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주로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주말에 유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주말의 아동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타 소득계층보다 주말 유급노동이 길어서 이러한 일시간의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확충에서는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노동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 수준을 주말에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말, 야간근로를 최소화하는 노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돌봄에서 성별 시간 차이가 적지 않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시간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더 길었다. 성 인지적 각종 정책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지향이 필요하다. 남성이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각종 계기를 보강하고 정책적

으로 남성의 아동 돌봄을 더 장려하는 등의 기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터에서는 각 가구에서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과의 여가문화생활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아동의 경우 간접 돌봄시간의 상대적 부족함을 고려할 때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문화적 기회의 확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 정책이 시급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내 노인과 질환자에 대한 돌봄 여력은 악화되고 있다. 간병·간호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평균 가구 규모가 작고 서비스 구매력이 낮아 비근로라는 동일 조건에서는 저소득 돌봄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위험을 시사한다.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지 않으며 이 가구 구성원들이 대개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 돌봄 필요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은 빠른 시간에 확충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외 기타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유급노동시간의 영향으로 돌봄시간 압박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일부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늘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구매비용이 낮지도 않고 질 보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돌봄서비스 확충과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중풍과 장애의 경우 가구 내 돌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돌봄의 제공에서 포괄하는 욕구의 영역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당연 가구 내 돌봄자의 수가 작아지면서 돌봄자의 고립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점은 이미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가구 내 간병인의 경우 돌봄 필요자가 있어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원거리 전화 또는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요 통근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여전히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이동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은 가구의 여건으로 그리고 소득이 낮아서 원거리 이동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여도 통근시간이 짧은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근 부담의 감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주거비 경감정책,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들을 실효성 있게 돌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함께 요구된다. 한편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개인 교통수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이 요구된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 대상 활동 서비스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1인 가구 비율이 커지면서 사회 구성원의 고립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고 그 부정적 영향도 더 클 수 있다. 저소득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길었다. 아동의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저소득 아동에 한정하기보다는 바로 위 소득계층까지 포괄하여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의 경우 학교 밖의 활동 기회가 제한적인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방과 후 활동과 학교 밖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회 참여 경험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고립 위험을 다소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빈곤층 외 기타 소득계층 노인들의 고립과 그 부정적 영향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기보다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집 밖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노인의 고립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 소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중 저소득층의 구분을 여타의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설계하였다. 일상의 어려움이 일반적인 소득빈곤선 이하의 집단보다 좀 더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 사회서비스는 극빈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의 돌봄 서비스는 아직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구 내 가구원의 시간으로 막음하는 시간적 부담을 시장의 서비스로 완화시키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같이 일부 시간 분석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긍정적 영향으로 서비스 비수혜 집단, 비저소득층의 여건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이 현금 지원과 비교하여 갖는 상대적인 장점은 기초욕구에 대응하여 직접적인 욕구 충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 지원과 달리 해당 욕구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져 사회적 효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비스 지원은 이용에 대한 지원이므로 오용의 위험도 현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소비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정책의 설계에서는 그 대상 선정에서 다소 관대하게 접근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기타 소득계층에게는 일

정 수준의 실비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확대 제공은 돌봄을 받는 구성원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구원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과 노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질환 예방, 의료비 절약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돌봄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이 규모와 질의 측면에서 충분하게 공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정책의 발전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빠른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와 조응하는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 고은주, 김진옥. (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6(4), 35-62.
- 권기현, 전명진. (2014).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및 이동수단 차이 분석. 도시연구, 30(3), 109-129.
- 권순범, 진미정. (2016).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단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27-43.
- 김미영, 박미려. (2017).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 개인유지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45-55.
- 김소영, 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1-19.
- 김양지영. (2015). 돌봄의 세대 전가-전일제 취업 부부의 조(부)모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87-145.
- 김외숙, 이기영, 이연숙, 조희금, 한영선, 김하늬, 김주희, 윤용옥. (2010).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통계청.
- 김진옥.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32호, 149-177.
- 김진옥, 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노대명, 강신옥, 최현수, 류만희, 이병희, 이상은, 전지현. (2009).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2013).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 노혜진, 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마강래. (2011). 계층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지 향상방안. 국토, 354(4), 16-24.
- 박수미, 선보영, 김진옥.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예은, 윤미, 이예슬, 이효진, 정익중. (2016).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5-56.
-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 (2007).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5호, 754-761.
-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서미숙. (2016).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총, 18, 5-36.
- 손문금. (2011).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및 여가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16(1), 1-25.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 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 양준석, 이상현. (2014). 왜 여성의 통근시간은 짧은가?: 성별 통근시간 차이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1(1), 161-184.
- 염주희. (2012). 교통약자로서의 저소득 계층: 빈곤 연구의 정책적 함의. 빈곤포럼(6월 12일), 1-17.
- 염주희, 정홍원, 최준영, 손정렬, 권규상. (2012).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2.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미리. (2013). 청소년기 혼자 시간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활동 내용과 심리상태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15권 2호, 175-195.
-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박미진. (2017).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24(1), 117-151.
- 이신해. (2009). 교통약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0(1), 197-208.
- 이한나, 박단비. (201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박탈경험, 고립감 및 생활만족도 연구: 서울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 *재활복지*, 제16권 제1호, 1-23.
- 전명진, 안현주. (2016). 수도권 통근자의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의 상쇄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3), 25-40.
- 조영희. (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차승은, 은기수, 전지원, Fisher, K. (2015).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사용과 일-삶의 균형의 실태: 다국적시간연구(MTUS, Multinational Time Use Studies) 자료를 활용한 한국 기혼여성과 서구 7개국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 비교. *통계연구*, 제20권 제1호, 24-48.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14년 원자료*.
- 한국일보. (2017. 9. 1.). 환자보다 힘든 간병인 '사회적 고립' 더 괴로워. <http://m.koreatimes.com/article/20170830/1073538>에서 2017. 9. 22. 인출.
- 홍승아, 김정미. (2011).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실태조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69&board_cd=INDX_001에서 2017. 9. 4. 인출.

Allard, M. D., Bianchi, S., Stewart, J., & Wight, V. R. (2007). Comparing childcare measures in the ATUS and earlier time-diary studies. *Monthly Labor Review*, 130(5).

Alonso, W. (1964). *Location and Land Use: Toward a General Theory of Land R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ardasi, E., &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World Bank MPRA Paper No. 11082.

Benito, A., & Oswald, A. J. (2000). Commuting in Great Britain in the 1990s. *The Warwick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rwick.

Benson, A. (2014). Re-thinking the two-body problem: The segregation of women into geographically-dispersed occupations, 1980-2010. *Demography*, 51(5), 1619-1639.

Brown, C. (1980). Equalizing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1), 113-134.

Center for Time Use Research(CTUR).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2009-2015.

Cousins, C. R., & Tang, N. (2004). Working time and work and family conflict in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K.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3), 531-549.

Craig, L. (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 Economic Issues*, 28(1), 69-87.
- Craig, L., & Mullan, K. (2010). Parenthood, gender and work-family time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Italy, France,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344-1361.
- Eberts, R., & Stone, J. A. (1985). Wages, Fringe Benefits, and Working Conditions: An Analysis of Compensating Differentials. *Southern Economic Journal*, 52(1), 274-280.
- Ericksen, J. (1977). An analysis of the journey to work for women. *Social Problems*, 24(4), 428-435.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o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UK: Polity Press.
- Fagnani, J. (1983). Women's commuting patterns in the Paris region.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Sociale Geografie*, 74(1), 12-24.
- Folbre, N. (2008). conceptualizing care. In Bettio, F., & Verashchagina, A. (Eds), *Frontiers in the Economics of Gen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olbre, N. & Yoon, J. (2007). What is Child Care? Lessons from time-use surveys of major English-speaking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5(3), 223-248.
- Folbre, N., Yoon, J., Finnoff, K., & Fuligni, A. (2005). By What measure? family time devoted to children in the U.S. *Demography*, 42(2), 373-390.
- Gershuny, J. (1993). Post-industrial convergence in time allocation. *Futures*: June.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huny, J., & Sullivan, O. (2012). Time use, gender, and public policy regimes. *Social Politics*, 10(2), 205-228.
- Giuliano, G. (1998). Information technology, work patterns and intrametropolitan location: a case study. *Urban Studies*, 35(7), 1077-1095.
- Hirway, I. (2015). *Unpaid Work and the Economy: Linkages and Their Implications*.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Working Paper No. 838.
- Hochschild, A. R. (1997). *The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 Kes, A. & Swamina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 Saharan Africa. In Blackden, M. C. & Wodon, Q. (Eds.),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No. 73, pp.13-38.
- Kim, H. Y. (2008). Income and Commuting Tim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1(4), 661-667.
- Kingston, P. W., &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No. 3, 391-400.
- Kizilirmak, B., & Memis, E. (2009). *The Unequal Burden of Poverty on Time Use*.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and Ankara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72.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7(2), 127-191.
- Lee, B. S., & McDonald, J. F. (2003). Determinants of Commuting Time and Distance for Seoul Residents: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the Commuting of Women. *Urban Studies*, 40(7), 1283-1302.

- Madden, J. F. (1981). Why women work closer to home. *Urban studies*, 18, 181-194.
- Merz, J., & Rathjen, T. (2009). *Time and Income Poverty: An Interdependent Multidimensional Poverty Approach with German Time Use Diary Data*.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Discussion Paper No. 4337.
- Moen, P. (2010). From 'work-family' to the 'gendered life course' and 'fit': five challenges to the field, Community. *Work & Family*, 14(1), 81-96.
- Muth, R. F. (1969). *Cities And Housing: The Spatial Pattern Of Urban Residential Land 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ilson, J., & Stanfors, M. (2017). Time Alone or Together? Trends and Trade-offs Among Dual-Earner Couples, Sweden 1990-20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19.
- Pfau-Effinger, B. (2008).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Oorschot, W. V., Opielka, M., & Pfau-Effinger, B. (eds), *Cultural change and path departure: the example of family policies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pp. 185-204.
- Pinker, S. (2015, June). 수명 단축시키는 '외로움'..7년 내 사망 확률 30% 높다. <http://kr.wsj.com/posts/2015/06/29/%EC%88%98%EB%AA%85-%EB%8B%A8%EC%B6%95%EC%8B%9C%ED%82%A4%EB%8A%94-%EC%99%B8%EB%A1%9C%EC%9B%80-7%EB%85%84%EB%82%B4-%EC%82%AC%EB%A7%9D-%ED%99%95%EB%A5%A0-30-%EB%86%92%EB%8B%A4/29>에서 2017. 9. 22. 인출.
- Preston, V., Mclafferty, S., & Hamilton, E. (1993).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Black, White, and Hispanic women's commuting. *Urban Geography*, 14(3), 228-250.

- Reid, M. G. (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Robinson, J. (1996).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4), 213-229.
- Robinson, J. P., & Godbey, G.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State College,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Singell, L., & Lillydahl, J.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mute to work patterns of males and females in two-earner households. *Urban Studies*, 23(2), 119-129.
- Solow, R. M. (1973). On equilibrium model of urban location. In Parkin, M., & Nobay, A. R. (eds), *Essays in Modern Economics* (pp.2-16), London: Longman.
- Sullivan, O., & Gershuny, J. (2001). Cross-national changes in time use: Some sociological (hi)stories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 331-347.
- Szalai, A., & Converse, P. E. (1973).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Mouton and Converse: The Hague.
- Tkocz, Z., & Kristensen, G. (1994). Commuting distances and gender: A spatial urban model. *Geographical Analysis*, 26(1), 1-14.
- Tooth, L., Mckenna, K., Barnett, A., Prescott, C., & Murphy, S. (2005). Caregiver burden, time spent caring and health status in the first 12 months following stroke. *Brain Injury*, 19(12), 963-974.
- Turner, T., & Niemeier, D. (1997). Travel to work and household responsibility: new evidence. *Transportation*, 24(4), 397-419.
- Vickery, C. (1977). The time-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 Wheaton, W. C. (1977). A bid rent approach to housing demand. *Journal of Urban Economics*, 4(2), 200-217.
- White, M. J. (1986), Sex differences in urban commuting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76(2), 368-372.
- Wolf, S., Aber, J. L., & Morris, P. A. (2015). Patterns of Time Use Among Low-Income Urban Minority Adolescents and Associations with Academic Outcomes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4, 1208-1225.
- Yoon, J. (2005). *Measuring Unpaid Caring Work using the Korean Time Use Survey: with a focus on methodological issues*.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